한국 여성인권의 현주소와 남은 과제 - 인권지표를 중심으로-

김경휘(예수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I. 인권과 여성인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인권이란 모든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지니는 평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라는 개념이다.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를 긍정하는 개념, 즉 인권은 법적 관할 지역, 민족, 그리고 국적에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이자 기본권이다.

여성인권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1948년 UN 총회 결의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 기반 한 것으로 차별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과 남녀평등원칙을 근간하고 있다. 1948년에 의결된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인간의 근원적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가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출발한 인권은 여성차별철폐협약을 통해 보다 구속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정치적, 공적 활동, 국적이 취득 및 변경, 교육, 고용, 보건, 경제적·사회적 생활, 민사문제,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남녀평등, 여성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 따른 착취 금지, 농어촌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기본적으로 행해야 할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이 협약에서 여성차별을 철폐해야 하는 4가지 이유로 첫째, 여성차별은 권리평등및 인간존엄성 존중의 원칙에 위배되며, 둘째, 여성차별은 국가의 각종 활동에 대하여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며, 셋째, 여성차별은 가족과 사회의 번영을 저해하고, 넷째, 여성차별은 국가와 인류에 기여하는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방해한다고 들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대해 여성부는 2006년에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여성에 대한 직간접 차별금지가 헌법 및 적절한 입법 조치를 통해 구현되기를 요청하며 정치, 법, 사회 전반에 실질적인 평등 개념에 대한 인식제고를 노력하고, 가정폭력을 포함한 어떤 폭력도 용납하지 않고, 인신매매와 성매매착취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을 담고 있다.

이처럼 이제 여성에 대한 인권 문제는 단순한 사회의 하나의 담론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속에서 인지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삶의 요소가자리 잡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소 추상적 또는 몇 가지의 담론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인권에 대해 몇 가지 지표를 활용하여 여성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Ⅱ. 여성인권지표

1. 국제지표

여성인권지표는 크게 국제지표와 국내지표가 있다. 국제지표로는 UNDP의 남녀평 등지수가 있는데, 이는 UN 개발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1990년 유엔개발계획 (UNDP)이 남녀평등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여성개발지수(GDI)를 개발하는 한편, 여성이 정치, 경제활동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도를 점수로 환산한 여성권한 척도가 있다.

UNDP의 남녀평등지수에는 표에 나타난 것처럼 출생시 기대수명, 성인 문해률, 취학률, 추정소득격차로 지표화 되어 있다. 이 지표는 간단한 지표로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간편하게 국가가 인권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표 1> UNDP의 남녀평등지수

 영역	지표
	출생시 기대수명
남녀평등지수	성인 문해율
1988AT	취학률
	추정소득격차

UNDP의 여성권한척도는 표에 제시된 것처럼 의회 여성점유율,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전문 기술직 여성비율, 소득비율(여성소득/남성소득)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지표 역시 측정이 용이하지만 각 국가의 여성들의 권리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표 2> UNDP의 여성권한척도(GEM)

	지표
	의회 점유율
남녀평등지수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김녀성당시구	전문 기술직 여성비율
	소득비율(여성소득/남성소득)

세계경제포럼의 성별격차지수는 모두 14개 지표로 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취득정도, 보건과 생존, 정치세력화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지표는 UNDP 지표보다는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영성평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하겠다.

<표 3> 세계경제포럼의 성별격차지수

영역	지표
	경제활동참여율
	연간추정소득
경제참여와 기회	유사노동에 대한 임금의 성별 형평성
	법관고위행정직, 관리직 이상의 여성
	전문기술직 여성
	문해율
교육취득 정도	초등학교 취학률 성비
교육위국 정도	중등학교 취학률 성비
	고등학교 취학률 성비
보건과 생존	평균기대수명 성비
보신과 생근	출생성비
	지난 50년대 대통령 총리직 여성 근무연한
정치 세력화	관리자급 여성행정직 비율
	여성국회의원 비율

2. 국내지표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인권지표는 그리 많지 않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권지표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양성평등지표와 대전양성평등지표, 경상남도인권지표, 서울시 성인지지표가 있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양성평등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양성평등지표는 크게 9개 영역에 255지표로 되어 있다. 이중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지표로 58개를 제시하였다.

〈표 4〉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양성평등지표

영역	지표
	출생성비
인구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린다	성별 남아 선호도
	성별 영아 사망률
	성별 본인 명의 재산-주택
	성별 양성평등 가치관
기 <i>주</i>	성별 맞벌이별 가족보살피기 시간사용
가족	성별 맞벌이별 가정관리 시간사용
	성별 남자의 육아휴식제도 활용에 대한 태도
	성별 노후 준비 방법

	성별 연령별 평균 교육연수
	대학취업율
	평생학습 참여자 성별 비율
교육	대학교 전공계열별 여교수 비율
JE 4	고등학생의 성별 1인당 월평등 사교육비
	15세 남녀학생의 국어, 수학, 과학 과목의 소양의 차이
	전공분야별 대졸 취업률의 남녀차이
	성별고졸대비 임금격차
	성별 대졸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대졸자 실업률
거케칭도 미	행정관리 성별 비율
경제활동 및	남성임금대비 여성임금비
소득	성별 근로자의 일용직 비율
	성별 근로자의 시간제 비율
	가구주 성별 소득격차
	성별 국회의원/지방의원 당선자 비율
	성별 시도별 단체장/부단체장 비율
정치 및 사회참여	성별 부처/16개 시도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별 부처 장/차관 비율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기대수명
	개인의 건강상태 평가
건강	5대 암 수진율
	성별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성별 입원 및 외래 이용률
	생활여건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성별 차이
	성별 공적연금 수급자
사회복지	빈곤가구주 남녀 비율
서비스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성별 취업률
	장애인 성별 취업자 비율
	성별 인터넷 이용률
	성별 휴대폰 이용률
문화 및 여가	평균여가시간의 성별 차이
	성별 생활체육참여율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성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폭력과 범죄	연도별 강간범죄 발생건수
	직장내 성희롱 성별 신고건수
	직장내 성희롱 성별 경험건수
	성별 연령별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경험률

본 연구에서는 위에 제시된 국제 인권지표 및 국내인권 지표를 모두 고려한 상태에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인권 및 전북지역의 인권실태를 살펴볼수 있는 몇 가지 지표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지표의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 분석에 사용된 지표

 영역	지표					
	출생성비					
인구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성별 영아 사망률					
	성별 맞벌이별 가족보살피기 시간사용					
가족	성별 맞벌이별 가정관리 시간사용					
기 ⁻ 기	취업형태별 가사분담 시간					
	성별 남자의 육아휴식제도 활용에 대한 태도					
	성별 연령별 평균 교육연수					
교육	대학 취업율					
	평생학습 참여자 성별 비율					
	성별 대졸자의 경제활동참가율					
거 게 하 드 - 미	성별 대졸자 실업률					
경제활동 및 소득	행정관리 성별 비율					
<u> </u>	남성임금대비 여성임금비					
	가구주 성별 소득격차					
	성별 국회의원/지방의원 당선자 비율					
정치 및 사회참여	여성 공무원 비율					
경시 옷 사회집의	5급이상 여성관리 비율					
	국공립대학교 교수 비율					
 건강	기대수명					
신경 	개인의 건강상태 평가					
문화 및 여가	성별 인터넷 이용률					
· 보기 굿 역기 	평균여가시간의 성별 차이					
폭력과 범죄	연도별 강간범죄 발생건수					
국무사 팀의	성별 연령별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경험률					
	1					

Ⅲ. 우리나라의 인권 현황

1. 인구

1) 출생성비

지역별 출생성비 비율을 분석하기 위해 여아 100명 대비 남아의 출생비율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2000년 여아 100명 대비 남아의 출생비율은 약 110명으로 남아의 출생비율이 약 8명 더 높게 나타났으나 2009년에는 약 106명으로 나타나 2000년보다 약간 낮아졌다. 이는 국민 가운데 자녀의 성별에 대해 과거보다는 비교적 여성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아에 비해 남아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의 경우에도 2000년 약 108명에서 2009년 약 106명으로 남아의 출생비율은 감소하고 여아의 출생비율이 높아졌으나 전국 평균 증가율에 비하면 전북의 경우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연도별 출생성비

(단위: %)

시도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국	110.2	109.1	110.0	108.7	108.2	107.8	107.5	106.2	106.4	106.4
서울특별시	108.9	107.6	108.7	106.5	106.5	106.6	106.7	106.1	106.4	105.3
부산광역시	112.8	110.5	108.1	109.7	106.1	107.3	106.0	106.1	104.1	106.5
대구광역시	113.4	111.1	115.0	112.5	110.3	110.7	109.4	105.8	108.8	109.9
인천광역시	108.7	108.5	107.2	106.3	106.9	106.4	106.6	106.2	105.6	107.3
광주광역시	110.0	108.8	110.2	112.1	107.8	110.0	109.8	108.0	103.8	105.9
대전광역시	107.2	108.5	112.9	107.8	109.2	107.4	110.1	104.2	106.8	107.1
울산광역시	112.6	115.9	113.2	115.6	113.7	113.1	111.8	106.8	109.4	108.4
경기도	109.4	107.9	108.8	107.6	106.8	106.7	107.0	105.2	105.8	105.5
강원도	110.7	111.5	107.5	107.6	109.8	107.7	108.8	108.4	104.2	106.4
충청북도	112.5	109.9	109.3	109.0	109.5	107.8	104.5	106.5	108.4	107.3
충청남도	109.9	107.0	111.3	108.4	107.9	106.1	107.4	107.0	105.5	105.4
전라북도	108.1	106.6	110.6	106.3	106.2	111.5	106.0	106.9	108.0	106.2
전라남도	109.3	108.6	108.6	109.9	110.7	105.2	105.4	107.6	106.4	104.8
경상북도	113.6	111.9	114.5	111.0	112.7	110.6	110.6	106.8	108.3	109.8
	112.7	111.9	113.2	113.7	113.1	110.0	108.8	107.2	107.4	107.6
제주도	105.6	111.2	118.4	110.6	112.1	113.1	110.1	105.7	106.5	108.3

2) 출생자녀 순위별 성비

여성인권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 중 많이 활용되는 것은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출생성비 분석이다. 2000년에 첫째자녀에서 남아의 출생율은 약 106명, 둘째아이 107명, 셋째아이 이상은 약 144명이었던 것이 2009년 첫째아이 약 105명, 둘째아이 105명, 셋째아이 이상 114명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2000년에 비해 2009년에는 모든 자녀 순위에서 남성아이의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셋째아이에서 남아의 비율이 다른 순위의 비율보다 가장 높게 나타냈던 것이 2009년에는 약 114명으로 매우 급격하게 남아의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북의 경우 2000년에는 첫째이아 약 105명, 둘째아 약 105명, 셋째아이 이상 약 128명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첫째아이 약 105명, 둘째아이 108명, 셋째아이 이상은 약 105명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전국자료에 비해 둘째아이에서 남아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셋째이아에서도 남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출생자녀 순위별 성비

(단위: %)

시도별		2000		2009			
시도달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이상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이상	
전국	106.3	107.4	144.2	105.1	105.8	114.3	
서울특별시	107.3	106.4	137.9	105.7	103.3	110.3	
부산광역시	106.6	110.0	176.6	104.5	104.9	130.9	
대구광역시	104.6	111.4	192.1	106.9	108.0	144.6	
인천광역시	105.8	106.6	136.5	105.8	108.0	109.2	
광주광역시	107.2	104.0	141.0	104.6	106.7	106.4	
대전광역시	100.9	106.7	141.7	104.4	106.2	124.1	
울산광역시	102.8	111.2	179.9	106.3	107.1	134.9	
 경기도	106.9	106.8	136.9	104.4	105.5	109.6	
강원도	104.2	110.7	140.2	105.7	105.3	111.7	
충청북도	110.8	107.5	137.6	103.9	109.6	113.0	
충청남도	106.7	103.9	146.7	102.8	106.3	113.6	
전라북도	105.2	104.5	127.9	104.9	107.5	104.9	
전라남도	103.7	106.6	129.4	101.0	105.4	113.9	
	108.7	109.9	156.6	108.7	108.0	120.3	
경상남도	105.7	109.9	162.6	106.8	105.4	120.7	
제주도	98.0	103.9	130.4	100.7	114.1	117.4	

3) 영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을 연차별로 분석한 결과, 출생자녀 중 신생아 사망률은 1993년 6.6%에서 4.1%, 3.8%, 3.3%로 점차적으로 신생아 사망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보면, 남아는 7%, 4.4%, 4.1%, 3.5%로 낮아졌고, 여아는 6.1%, 3.8%, 3.4%, 3.1%로 나타나 남아에 비해 여성 신생아 사망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추이는 신생아 후기 사망률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아 사망률 역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아 사망률에서는 남아의 사망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영아 사망률

(단위: %)

	1993			1996		1999			2002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신생아 사망률	6.6	7	6.1	4.1	4.4	3.8	3.8	4.1	3.4	3.3	3.5	3.1
신생아후기 사망률	3.3	3.6	3.1	3.6	3.7	3.6	2.4	2.4	2.4	2	2.2	1.9
영아 사망률	9.9	10. 5	9.2	7.7	8	7.4	6.2	6.5	5.8	5.3	5.7	5

자료: 통계청

위에서 분석한 영유아 사망률 추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 1999년 5.6%를 시작해서 4.9%, 3.9%, 3.8%, 2.9%, 3.1%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북의 경우는,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1999년 6.3%를 시작으로 6.5%, 5.6%, 5.2%, 5.5%, 그리고 2008년에 5.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5~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국 통계와 비교했을 때, 영유아 사망률 추이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감소율 역시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지역별 영유아 사망률 추이

(단위: %)

지역별	1999	2002	2005	2006	2007	2008
서울	5.6	4.9	3.9	3.8	2.9	3.1
부산	7.2	6.0	4.6	4.6	5.3	5.1
대구	7.6	5.5	5.8	4.9	5.9	5.6
인천	4.4	4.8	5.0	4.5	3.6	3.4
광주	5.9	5.8	5.6	2.7	4.1	4.0
대전	7.6	6.0	4.0	3.9	4.2	2.7
울산	5.7	6.1	5.1	4.6	4.3	2.6

경기	5.4	4.9	4.4	3.6	3.1	3.4
강원	7.8	5.5	4.1	4.9	4.3	2.9
충북	6.0	5.7	5.2	4.1	3.5	3.0
충남	5.9	5.7	5.0	3.4	3.8	3.7
전북	6.4	6.5	5.6	5.2	5.5	5.2
전남	7.3	7.1	5.0	4.5	2.8	3.4
경북	6.0	5.7	6.9	5.6	3.4	3.9
경남	7.8	4.9	5.3	4.7	3.0	2.7
제주	7.6	4.3	5.6	5.3	4.7	3.0
전체	6.2	5.3	4.7	4.1	3.6	3.5

자료: 통계청

2. 가족

1)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사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01년 25명을 시작으로 2005년 10,700명으로 5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감소되었지만 2010년까지 전체 사용자는 41,73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구분해 보면, 여성은 2001년 23명 이었던 것이 2010년 40,914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남성의 경우 2001년 2명에서 2010년 819명으로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여성근로자가 남성근로자보다 육아휴직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전체 여성근로자 중 육아휴직 대상자 중 육아휴직 신청자가 몇 명이 되는가를 함께 고려 할 경우 그 수치가 높아졌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표 10〉 육아휴직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산전후 ŀ자 수	2	22,711	32,133	38,541	41,104	48,972	58,368	68,526	70,560	75,742
와	계	25	3,763	6,816	9,304	10,700	13,670	21,185	29,145	35,400	41,733
· 휴	여성	23	3,685	6,712	9,123	10,492	13,440	20,875	28,790	34,898	40,914
직 자	남성	2	78	104	181	208	230	310	355	502	819

자료: 통계청

2) 가사분담

성별에 따라 가사분담율을 분석한 결과, 2008년에 부인이 주도한다는 응답이

75%, 공평하게 분담 22.8%, 남편이 주도한다는 응답이 1.4%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여성의 가사분담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인이 주도한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부인 혼자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응답이 10.4%, 부인이 주도하지만 남편도 함께 분담한다는 응답이 65.4%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부인주도와 남편의 분담비율이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가사분담에 대해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자응답자 중 부인이 응답한다는 비율이 74.1%인데 비해 여성응답자 중 여성이 주도한다는 54.3%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에 대해 남자는 23.4%, 여성은 44.5%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가사분담에 대해 남성은 여성이 주도한다고 느끼는데 비해 여성은 남녀가 공평하게 가사분담을 하고 있다고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가사분담

(단위: %)

	계	부인이 주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공평 하게 분담	남편이 주도	남편이 주로 하지만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 로 책임
2008	100.0	75.8	10.4	65.4	22.8	1.4	1.1	0.2
2010								
남자	100.0	74.1	11.1	63.1	23.4	2.5	2.0	0.4
여자	100.0	54.3	6.6	47.6	44.5	1.2	1.1	0.2

자료: 통계청

취업형태별 가사분담시간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여성 중 비취업자는 3시간 57분, 2:44분, 3:38분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 취업자의 경우 1시간 26분, 1시간 22분 1시간 24분으로 변화되었다. 반면 남성은 취업여부에 무관하게 가사시간이 1시간이 체 안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비취업자의 경우 평균 30-50분사이 이고, 취업자의 경우는 약 30분 내외임을 알 수 있다. 같은 비취업자 또는 취업자임에도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더 많은 가사분담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취업형태별 가사분담시간

(단위: 시, 분)

	19	99	20	04	20	09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전체	3:57	1:26	2:44	1:22	3:38	1:24
여성	5:14	2:50	4:53	2:36	4:41	2:34
남성	0:54	0:27	0:55	0:31	1:04	0:36

자료: 통계청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전라북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부인이 주도한다는 비율이 전국 2위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비율은 14위를 나타나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는 여성이 가사를 전담하고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여성의 역할이 가정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 공평하기 분담하는 비율에 있어서 전북의 수치가 매우 낮음으로써 가사분담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크고 그로 인해 여성의 인권 측면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3> 지역별 가사분담시간

(단위:%)

	계	부인이 주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 공평하게 - 분담	남편이 주도	남편이주로 하지만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 로 책임
서울	100.0	69.2	10.5	58.7	28.8	2.0	1.6	0.3
부산	100.0	73.4	7.8	65.6	23.7	2.9	2.5	0.4
대구	100.0	68.4	11.1	57.3	29.8	1.8	1.7	0.1
인천	100.0	66.9	8.0	58.9	30.2	3.0	2.5	0.5
광주	100.0	69.9	9.4	60.5	27.9	2.2	1.5	0.7
대전	100.0	68.9	8.7	60.3	29.4	1.7	1.3	0.3
울산	100.0	80.9	20.0	60.8	17.2	1.9	1.5	0.4
경기	100.0	68.7	8.2	60.5	29.0	2.3	1.9	0.4
강원	100.0	66.2	7.9	58.3	30.9	2.9	2.3	0.5
충북	100.0	67.0	8.8	58.1	30.3	2.8	2.2	0.6
충남	100.0	66.1	14.0	52.2	32.2	1.7	1.0	0.7
전북	100.0	74.1	7.3	66.8	24.2	1.7	1.7	_
전남	100.0	70.7	12.6	58.1	27.0	2.3	1.8	0.4
경북	100.0	71.2	10.8	60.4	26.0	2.8	2.4	0.4
경남	100.0	74.5	16.2	58.2	24.4	1.1	1.0	0.1
제주	100.0	67.8	7.0	60.8	29.6	2.6	1.8	0.7

3. 교육

1) 취업자의 교육수준

지난 19년 동안 취업자의 교육수준을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다. 남성의 경우 초졸이하가 1991년 36.2%에서 2000년 24.8%, 2009년에는 16.4%로 감소했고, 중졸은 같은 년도 20.0%, 16.3%, 11.2%로 감소하였다. 고졸은 34.3%, 39.7%, 38.95로고졸취업자 비율은 다른 교육수준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이상은 1991년 9.6%였던 것이 2000년 19.2%, 2009년에는 33.5%로 매우 큰 변화가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취업자의 경우, 초졸이하는 1991년 18.1%, 2000년 11.4%, 2009년 8.1%로 약 10% 감소했고, 중졸은 18.5%에서 12.9%, 9.0%로 감소하여 약 9.5% 감소했다. 고졸은 44.6%, 47.2%, 41.4%로 감소하여 약 2.2% 감소하였다. 대졸이상은 1991년 18.8%, 2000년 28.5%, 2009년 41.5%로 나타나 약 22.7% 증가하였다.

<표 14> 취업자 교육수준

(단위: %)

		남.	성			여	성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	초졸	중졸	고졸	대졸
	포글이이	6 교		이상	이하	0		이상
1991	36.2	20.0	34.3	9.6	18.1	18.5	44.6	18.8
1992	34.6	19.0	35.7	10.7	16.8	17.4	45.1	20.7
1993	32.2	18.2	37.9	11.6	15.8	16.1	45.8	22.2
1994	30.8	18.2	38.7	12.3	15.3	15.8	46.4	22.5
1995	29.6	17.7	39.2	13.5	14.3	15.3	47.1	23.2
1996	28.2	17.5	39.8	14.6	13.7	15.2	47.1	24.0
1997	27.7	17.9	39.2	15.2	13.4	15.7	46.7	24.3
1998	26.3	16.5	39.7	17.5	12.2	13.0	46.7	28.1
1999	25.7	16.5	39.5	18.3	12.0	13.0	46.9	28.2
2000	24.8	16.3	39.7	19.2	11.4	12.9	47.2	28.5
2001	23.7	15.5	40.4	20.4	11.0	12.3	47.2	29.4
2002	22.4	15.1	40.8	21.7	10.7	12.2	47.0	30.2
2003	20.6	13.6	41.0	24.8	10.1	11.0	44.8	34.1
2004	19.5	13.3	41.1	26.1	9.5	10.9	44.7	34.9
2005	19.0	12.9	40.6	27.6	9.2	10.5	44.5	35.8
2006	18.3	12.3	39.9	29.4	8.9	10.5	43.9	36.8
2007	17.7	11.6	40.0	30.7	8.7	10.1	43.0	38.2
2008	16.9	11.5	39.3	32.3	8.5	9.3	42.1	40.1
2009	16.4	11.2	38.9	33.5	8.1	9.0	41.4	41.5

4. 경제활동 및 소득

1)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을 성별간에 비교분석한 결과, 남성은 2000년 74.4%연 경제활동율이 2004년에 75.0%로 증가하다가 2010년 약간 감소하여 73.0%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2000년 48.8% 였던 것이 2005년 처음으로 50%대에 진입했다가 2010년 49.4%로 나타나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큰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성별에 따라비교해보면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성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61.2	61.4	62.0	61.5	62.1	62.0	61.9	61.8	61.5	60.8	61.0
남자	74.4	74.3	75.0	74.7	75.0	74.6	74.1	74.0	73.5	73.1	73.0
여자	48.8	49.3	49.8	49.0	49.9	50.1	50.3	50.2	50.0	49.2	49.4

자료: 통계청

2) 실업율

경제활동가능 인구 중 실업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2000년 5.0%였던 것이 2005년 4.0%, 2010년 4.0%로 나타나 남성의 실업률은 점차적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성의 실업률은 2000년 3.6%, 2005년 3.4%, 2010년 3.3%로 나타나 큰 변화가 없이 약간 낮아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의 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여성 중 상당수가 비경제활동인구인 전업주부 등으로 분류되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표 16〉 실업률

성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4.4	4.0	3.3	3.6	3.7	3.7	3.5	3.2	3.2	3.6	3.7
남자	5.0	4.5	3.7	3.8	3.9	4.0	3.8	3.7	3.6	4.1	4.0
여자	3.6	3.3	2.8	3.3	3.4	3.4	2.9	2.6	2.6	3.0	3.3

3) 고용률

성별에 따라 고용률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남성은 2000년 70.7%에서 2005년 71.6%, 2010년 70.1%로 전체적으로 70%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2000년 47.0%였던 것이 2005년 48.4%, 2010년 47.8%로 여성의 고용율 역시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고율률은 남성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7〉 고용률

(단위: %)

성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58.5	59.0	60.0	59.3	59.8	59.7
남자	70.7	71.0	72.2	71.9	72.0	71.6
여자	47.0	47.7	48.4	47.4	48.3	48.4
성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59.7	59.8	59.5	58.6	58.7	
남자	71.3	71.3	70.9	70.1	70.1	
여자	48.8	48.9	48.7	47.7	47.8	

4) 월 근로시간 및 임금1)

근무시간 및 임금을 성별에 따라 비교분석 하였다. 먼저 총근로시간에 대해 비교 분석해 보면, 남성은 2006년 198시간에서 2009년 193시간으로 약 6시간이 감소 했고, 여성은 2006년 185시간, 2009년 183시간으로 약 2시간 정도 근로시간이 감

¹⁾ 통계청 연간소득(2004)

	전가구	남자	여자
조사가구수 (가구)	3,187	1,112	2,075
가구분포 (만분비)	10,000	3,534	6,466
취업인원수 (명)	0.70	0.89	0.60
가구주연령 (세)	43.71	35.76	48.06
주택소유가구비율 (%)	28.2	15.1	35.3
주거전용면적 (평)	9.2	7.1	10.3
소비지출 (천원)	610.9	668.9	579.3
저축보유액 (천원)	8,955.5	9,326.2	8,752.8
부채잔액 (천원)	1,597.0	1,730.2	1,524.2
부채보유가구비율 (%)	37.8	37.9	37.8
연간소득 (천원)	11,416.2	14,416.4	9,776.3
근로소득 (천원)	7,324.0	11,604.4	4,984.3
사업소득 (천원)	1,732.8	2,109.5	1,526.9
부업소득 (천원)	51.5	38.7	58.6
재산소득 (천원)	796.8	221.2	1,111.4
이전소득 (천원)	1,511.1	442.6	2,095.2

소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근로시간 감소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월급여액을 보면, 남성은 2006년 2,030천원에서 2009년 2.284천원으로 약 254천원이 증가했고, 여성은 2006년 1,248천원에서 2009년 1,422천원으로 174천원으로 증가하였다. 여성은 월급여액에서 절대금액 및 급여상승액에서도 남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정액급여액에서도 월급여액과 마찬가지로 남성은 2006년 1,886천원에서 2009년 2,114천원으로, 여성은 2006년 1,189천원에서 2009년 1,363천원으로 증가했지만, 그 절대금액 및 증가율은 남성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8> 월 근로시간 및 임금

(단위: 천원)

		남	성		여성				
	2006	2007	2008	2009	2006	2007	2008	2009	
총근로시간	198.0	192.3	188.2	192.6	185.3	182.9	178.3	182.9	
월급여액	2,030	2,144	2,265	2,284	1,248	1,349	1,413	1,422	
정액급여	1,886	1,997	2,114	2,141	1,189	1,290	1,354	1,363	
연간특별급여	5,050	5,105	5,212	4,889	1,984	2,094	2,036	1,992	
시간당정액급여	10,819	11,831	12,677	12,216	6,959	7,673	8,208	7,891	

자료: 통계청

5) 사업체 성별 대표자 현황

사업체의 성별 대표자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남성이 63%, 여성이 37%로 나타나고 이러한 비율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 대표자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북의 경우, 전국 평균과는 달리 2007년 남성이 62%, 여성이 38%였던 것이 2009년 남성 61%, 여성 39%로 여성의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9> 사업체 성별 대표자 현황

(단위: %)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전국	남자	63	63	63	강원	남자	58	58	58
	여자	37	37	37		여자	42	42	42
서울	남자	68	68	68	충북	남자	62	62	62
	여자	32	32	32		여자	38	38	38
부산	남자	61	60	60	충남	남자	63	63	62
	여자	39	40	40		여자	37	37	38
대구	남자	64	64	63	전북	남자	62	62	61
	여자	36	36	37		여자	38	38	39
인천	남자	64	64	64	전남	남자	60	60	60
	여자	36	36	36		여자	40	40	40

광주	남자	61	61	61	경북	남자	60	60	60
	여자	39	39	39		여자	40	40	40
대전	남자	62	62	62	경남	남자	59	59	59
	여자	38	38	38		여자	41	41	41
울산	남자	56	56	56	제주	남자	58	58	57
	여자	44	44	44		여자	42	42	43
경기	남자	65	65	64					
	여자	35	35	36					

자료: 통계청

5. 정치 및 사회참여

1) 국회 및 의회 여성의원 비율

전체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여성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였다. 먼저 국회의원수를 분석한 결과 여성국회 의원 비율은 1963년 1.1%를 시작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 13.7%까지 증가했다. 지방의회의 경우 1991년 0.9%를시작으로 2010년 20.3%로 급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성의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대와 함께 제도적·정치적으로 여성의원의확대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증가에도불구하고 여전히 전체적으로 여성의원의 비율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겠다.

〈표 20〉 국회 및 의회 여성의원 비율

(단위: %)

	총구히 의	[워수1)		총지반의히 의	원수2)
	8 1-1 -			8.18-1-1	
	여성국회			여성지방	
	의원수			의원의원수	
Total		비 율(%)	Total		비 율(%)
175	2	1.1	-	_	_
175	3	1.7	-	_	-
204	5	2.5	_	_	_
146	12	8.2	-	_	_
154	1	0.6	_	_	_
276	8	2.9	_	_	_
276	8	2.9	_	_	_
299	6	2.0	_	_	_
_	_	_	5 169	48	0.9
299	3	1.0	_	_	_
	175 175 204 146 154 276 276 299	여성국회 의원수 175 2 175 3 204 5 146 12 154 1 276 8 276 8 276 8 299 6	지otal 의원수 비 율(%) 175 2 1.1 175 3 1.7 204 5 2.5 146 12 8.2 154 1 0.6 276 8 2.9 276 8 2.9 299 6 2.0	지 여성국회 의원수 비 율(%) Total 175 2 1.1 - 175 3 1.7 - 204 5 2.5 - 146 12 8.2 - 154 1 0.6 - 276 8 2.9 - 276 8 2.9 - 276 8 2.9 - 276 8 2.9 - 276 8 2.9 - 276 8 2.9 - 276 8 2.9 - 276 8 2.9 - 276 7 5 169	여성국회 의원수 비 율(%) Total 175 2 1.1 - - 175 3 1.7 - - 204 5 2.5 - - 146 12 8.2 - - 154 1 0.6 - - 276 8 2.9 - - 276 8 2.9 - - 299 6 2.0 - - - - 5 169 48

1995	_	-	-	5511	127	2.3
1996	299	9	3.0	_	_	_
1998	_	_	_	4 179	97	2.3
2000	273	16	5.9	_	_	-
2002	_	_	_	4 167	140	3.4
2004	299	39	13.0	_	_	-
2006	_	_	_	3 621	525	14.5
2008	299	41	13.7	_	_	-
2010	_	_	_	3649	739	20.3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국회의원선거총람」각년도 2)「전국동시지방선 거총람」각년도

2) 여성공무원

2001년부터 2008년 여성공무원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01년 여성공무원은 32.8%를 시작으로 2005년 38.1%, 2008년 40.8%로 크게 증가하여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여성공무원 추이

(단위: 명,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체현원	859,265	869,030	891,949	915,689	915,221	940,397	963,132	968,836
	여 성	282,008	286,074	302,830	324,576	348,710	365,178	385,759	395,464
		(+14,361)	(+4,046)	(+16,756)	(+21,746)	(+24,134)	(+16,468)	(+20,581)	(+9,705)
	점유율	32.8%	32.9%	34.0%	35.4%	38.1%	38.8%	40.1%	40.8%

자료: 박천오·최무현. "참여정부의 사회형평적 인재등용정책: 성고요인과 정책적 함의", 2010.

3)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5급이상 여성 관리자 채용실적으로 살펴보니, 2001년 4.8%, 2004년 7.4%, 2007년 6.2%로 나타나 점차적으로 5급이상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5급 이상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사실이라고 하겠다.

⟨표 22⟩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추이

(단위: 명,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여성관리자	741명	861명	1,007명	1,171명	1,353명	1,563명	402명
목표 비율	4.8%	5.5%	6.5%	7.5%	8.7%	10.0%	6.2%
여성관리자	741명	872명	1,046명	1,203명	1.576명	340명	454명
임용 실적	4.8%	5.5%	6.4%	7.4%	8.4%	5.4%	6.2%

자료: 박천오·최무현. "참여정부의 사회형평적 인재등용정책: 성고요인과 정책적 함의", 2010.

4) 성별 국·공립대학교 교수

국공립대학교의 교수의 성비를 분석한 결과, 2009년 현재 남성교수는 전체 88.4%를 차지하는 1,218명이고, 여성교수는 11.6%인 141명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남성교수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3> 성별 국·공립대학교 교수

(단위: 빈도, %)

	빈도	퍼센트
 남성	1,218명	88.4%
여성	141명	11.6%

자료: 교육정보서비스

6. 건강

1) 기대수명

성별에 따라 기대수명을 분석한 결과, 2009년 현재 남자의 평균수명은 76.99년, 여자는 83.77년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기대수명은 남자보다 6.78년이 더 길었으며, 최근 10년간 남녀의 기대수명 차이는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현재 건강수명은 '02년 67.8세에서 '07년 71세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07년 건강수명 중 남자는 68세, 여자는 74세로 여자가 약 6년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07년 건강수명과 '07년 현재 우리나라 출생 시 기대여명을 비교하면 약 10년 차이가 나타났으나, 이 차이는 꾸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표 24〉 기대수명

(단위: 세)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76.53	77.02	77.44	78.04	78.63	79.18	79.56	80.08	80.55
 남자	72.82	73.4	73.86	74.51	75.14	75.74	76.13	76.54	76.99
여자	80.04	80.45	80.81	81.35	81.89	82.36	82.73	83.29	83.77
건강수명	67.4	67.8	_	_	_	_	71	_	_

자료: 통계청「생명표」, WHO「WorldHealthReport」,

WHO 「WorldHealthStatistics2009」

2) 주관적 건강상태

노인의 건강상태를 성별에 따라 비교 분석한 결과, 2006년에 남성의 경우, 건강하다는 응답이 41.4%, 건강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24.8%였던 것이 2010년에는 건강하다는 응답이 54.1%, 건강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20.8%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의경우, 건강하다는 응답이 33.6%, 건강하지 않다는 응답이 34.9%였던 것이 2010년건강하다는 응답이 44.3%, 건강하지 않다는 응답이 32.4%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성별에 따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상태에서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5〉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2006			2010					
	매우 건강한		건강하	매우건	매우	건강		건강하	매우건		
	건강	전 편	보통	지못한	강하지	건강	한편	보통	지못한	강하지	
	건강	펀		편	못함	건강			편	못함	
소계	2.8	34.8	32.7	24.4	5.3	4.3	44.3	24.0	22.2	5.2	
남자	2.8	38.6	33.	19.8	5.0	5.9	48.2	25.0	16.6	4.2	
여자	2.9	30.7	31.5	29.3	5.6	3.0	41.3	23.3	26.5	5.9	

자료: 통계청

7. 문화 및 여가

1) 인터넷 이용시간

성별에 따라 일주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을 비교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남성은 2001년 11.3시간에서 2002년 13.5시간으로 증가하였고, 여성은 2001년 8.7시간에서 10.5시간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이용시간에서 있어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은 10.2시간에 서 11.3%로 증가했고, 여성은 7.7시간에서 9.2시간으로 증가하여 여성이 좀 더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인터넷 이용시간

(단위: 시간)

		2001	2002
전국	남자	11.3	13.5
	여자	8.7	10.5
서울	남자	12.9	15.4
	여자	10.1	12.2
부산	남자	10.4	13.0
	여자	8.7	10.6
대구	남자	9.5	11.7
	여자	7.4	9.3
인천	남자	11.6	13.7
	여자	9.2	10.9
 광주	남자	11.6	12.3
	여자	8.5	10.2
 대전	남자	11.5	13.9
	여자	9.1	10.6
울산	남자	10.5	11.9
	여자	7.9	8.8
 경기	남자	11.6	13.9
	여자	8.8	10.2
 강원	남자	9.0	11.5
	여자	7.0	9.4
 충북	남자	11.3	12.2
	여자	7.7	9.4
 충남	남자	9.6	13.3
	여자	7.3	10.0
전북	남자	10.2	11.3
	여자	7.7	9.2
 전남	남자	9.8	11.0
_ _	여자	8.3	8.2
 경북	남자	10.5	13.8
0 1	여자	7.9	10.5
 경남	남자	10.4	12.4
0 1	여자	8.1	9.5
 제주	남자	9.1	9.8
4 1	여자	7.7	8.0
사근・토게처	21.4	, . ,	0.0

8. 폭력과 범죄

1) 범죄 피해

성별에 따라 범죄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남자는 절도비율이 60%, 사기 28.4%로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강도 13.5%, 폭력·상해 11.7%로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남성은 절도 및 사기에 대해 비율이 높다면, 상대적으로 육체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남성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있는 여성은 강도 및 폭행·상해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7> 범죄 피해

(단위: %)

	주요범죄 피해건수	절 도	사 기	강 도	폭행·상해
<2001>	100.0	52.5	31.5	6.8	9.3
<2005>	100.0	54.6	29.9	8.0	7.4
<2008>					
전국	100.0	59.4	25.9	6.7	7.9
남자	100.0	60.0	28.4	4.8	6.8
여자	100.0	57.4	17.3	13.5	11.7

자료: 통계청

2) 성피해에 대한 두려움

성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성별에 따라 비교분석한 결과, 여성은 2001년 64.4%, 2005년 67.8%, 2008년 49.1%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는 48.2%, 47.4%, 30.5%로 변화 하였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최근 들어 성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이전보다 감소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고 하겠지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성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 역시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표 28> 성피해에 대한 두려움

(단위: %)

	2001	2005	2008
전체	56.6	57.9	40.0
여성	64.4	67.8	49.1
 남성	48.2	47.4	30.5

3) 성피해 유형

범죄 피해 유형 중 강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과거자료이지만 제한적으로 살펴본 결과, 1989년에서 1992년 사이에 강간으로 사망 당한 사람은 1명, 여성은 17명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상해의 경우 남성피해자는 1989년 20명에서 1992년 22명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404명에서 474명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여성의 피해율이 남성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두 성별 간에비교할 수 있는 최근자료가 부재하여 분석내용을 제한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표 29> 성피해 유형

(단위: 명)

			1989.04	1990.04	1991.04	1992.04
		소계	437	586	514	512
	총계	남자	30	35	37	34
		여자	407	551	477	478
	사망	소계	3	5	6	5
강간		남자	_	_	1	1
		여자	3	5	5	4
		소계	434	581	508	507
	상해	남자	30	35	36	33
		여자	404	546	472	474

자료: 통계청

4) 흉악범 피해자

중악범 피해자에 대해 성별 비교 분석한 결과, 1995년을 시작점으로 여성은 2,377명이었던 것이 2004년 13,810명, 2008년 17,47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남성 역시 1995년 5,570명에서 2004년 3,877명, 2008년 4,712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흉악범 피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1995년 29.9%였던 것이 2008년 현재 78.8%로 매우 급속도로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0> 흉악범 피해자

(단위: 명, %)

성별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1995	7,947	2,377	5,570	29.9
2000	8,765	6,245	2,520	71.2
2001	9,074	6,479	2,595	71.4
2002	10,696	8,082	2,614	75.6
2003	13,157	9,856	3,301	74.9
2004	17,687	13,810	3,877	78.1
2005	18,583	14,847	3,736	79.9
2006	19,776	15,938	3,838	80,6
2007	20,361	16,006	4,355	78.6
2008	22,191	17,479	4,712	78.8

자료: 통계청

5) 성폭력

2007년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를 살펴보면, 여성 피해자는 2,537명으로 19세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전체 97명으로 13-19세사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의 피해는 여성 피해자가 남성 피해자보다 월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 성폭력 피해 연령

(단위: 명)

	계	7세 미만	7- 12세	13- 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미 파악
여성	2,534	57	258	644	617	284	252	107	19	296
남성	97	0	5	97	4	4	3	0	1	1

자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7.

Ⅳ. 맺으며

본 연구는 현재 여성 인권의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사회의 여성인권의 현주소를 재인식함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 사회가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취해야 할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여성인권지표를 검토하고, 그 중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지표를 사용하여 기초적인 실태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대부분의 지표는 통계청 자료와 일부 지자체에서 수행된 인권관련 연구를 참조하였다.

인권이라는 것이 보는 사람의 관점과 정의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이에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인권의 개념 및 규정들을 고려하고 현실가능한 지표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출한 인권지표는 대부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지표 255개 중 8개의 항목에 25개의 항목을 추출하여 기초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25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지표의 최초자료에 비해 여성의 인권수준이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여성 인권수준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감소하거나 증가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의 인권의 차이가 여전히 유사한 수준으로 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길제는 10년 짧게는 1-2년 기간 가료를 성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그러나 주지하시다시피, 남성과 여성의 인권수준은 10년 전부터 절대적인 인권의 양이 출발시점부터 그 갭이 매우 크고, 이러한 커다란 차이는 지난 10년간 부분적으로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출생성비, 출생자녀 순위별성비, 영아사망률, 육아휴직, 가사분담 등의 지표에서 여성의 절대적인 인권 박탈수준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적으로 감소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적으로 여성의 인권수준이 남성의 인권수준만큼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여전히 변화의 부족한 지표도 많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여성의 정치 및 사회활동, 경제활동, 범죄피해 지표들은 다른 인구 및 가족지표와 달리 여전히 여성인권수준이 남성과 비교했을 때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국회 및 의회 여성의원의 비율을 보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수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특히 국회의원 비율에서 여성의비율은 13.7%이고, 이중 당지지율 또는 투표율을 통해 뽑히는 전국구의원의 비율을 제외한다면 여성의 직접선출비율은 매우 낮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이 주요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의 경제활동율, 임금, 근로시간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에 비해 시간당정액급여수준에서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시간의 근무를 하고도 여성이 급여에서 차별을 당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률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월급여액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차이는 크게 감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율이 매우 높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여성인권에 대한 문제를 언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즉,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언급하곤 한다. 본 연구에서도 여성에 대한 범죄를 남성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성피해에 대한두려움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성피해에 대한두려움은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 역시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 중 강간에 대한범죄 역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인권이 점차적으로 악화되는 지점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본 연구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여성인권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례 언급되어 왔다. 지난 2010년에도 한국의 여성인권 실태 관련 연구가 진행된 바도 있다.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듯이, 여성의 인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표면적으로 나아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분명 더 악화되는 영역도 존재한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여성인권이 앞으로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정책적·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여성인권이 더 향상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여성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차별 요소 완화 및 제거작업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또는 그 이상으로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여성의 인권문제는 하나의 정책이나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알수 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부분적이지만 우리 사회에 여성인권 향상에 대한 움직임이 미미하지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 변화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한 시점에서우리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치밀한 접근을 해야 한다.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은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제도와 정책을 결정짓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는 여전히 낮은 상태라는 점이다.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여성의 사회참여, 특히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지금보다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구조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는 것은 상위단위에서의 여성인권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기서 주지해야 할 사실은 여성인권을 찾기 위해 남성과 사회에 부걸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 스

스로가 여성의 인권을 찾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현재의 우리 사회 구조에서 여성이 사회정치적인 지위에진입하기 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는 것을 쉽게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여성이 자신의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여성 자신은 자신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이 각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분명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여성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는결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인권지위가 낮아지는 영역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 많다.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 경제, 그리고 범죄 영역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인권수준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현 구조에서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인권회복 현상, 즉 출산, 교육, 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여성인권의 향상은 여성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 구조에서는 여전히 매우 열악하다. 따라서 여성인권 향상은 매우 멀고도 긴 여정이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두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한 전략적 접근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이 여성의 인권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결정과정에 보다 많은 진입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다양한 인권지표를 활용하여 여성의 인권문제를 살펴보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다양한 인권지표를 활용하여 여성의 인권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시간적 한계 및 자료의 한계로 인해 여성인권 문제를 보다 정확히 살펴보지는 못했다. 여성인권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여성의 인권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와 통계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되어야만 여성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권경득·라영재·김형성. "국가인권정책과 지방행정의 연계방안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2009.

경상남도. "여성인권지수 개발사업", 2010.

박천호·최무현. "참여정부의 사회형평적 인재등용정책: 성공요인과 정책적 함의",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 9권 제 2호. pp. 31-57.

부산광역시. "제 3차 부산여성발전 종합계획", 2010.

신혜수. "유엔개혁과 여성인권", 이슈브리프 06-4,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부. "제 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정(판)". 2008.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권역별 간담회 보고자료집", 2006.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 "지역 여성 인권사례 교육 및 사례발표", 2002.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 "가정폭력 상담현황". 2007.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 "성폭력 상담현황". 2007.

통계청. http://www.kostat.go.kr/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소통의 권리:

청각장애 대학생의 삶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이혜숙(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청각 장애인²⁾은 하나의 언어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청인³⁾ 중심의 사회에서 두개이상의 언어를 구사⁴⁾해야만 살아 갈수 있는 사람들이다. 농인들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음성 언어를 사용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인의 의사소통을 강요받고 있는 불합리한 삶을 살고 있다. 의사소통과 언어사용에 단적으로 나타나는 불평등의 패턴은 거의 모든 일상생활 영역으로 확대 되고 있어 심각한 불리(handicap)로 작용한다. 청각 장애 대학생의 현실 역시 같은 맥락에 존재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언어습득 이전의 생의 초기부터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경험이 거의 없다. 이들이 학교생활은 농인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거나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학교생활의 부적응이나 더 나은 교육역건을 선택하기 위해 농인 학교와 일반 학교를 옮겨 다니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선택은 특수학교가 설치되어있는 고등학교 과정까지만 가능하다. 농인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갈로데 대학 같은 대학과정이 전혀 운영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농인 대학생은 일반 학생들과 함께 통합 교육 과정을 밟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 대학의 가치관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곳이다. 학문과 이념에 있어서 대학은 때로 사회보다 진보적인 경우도 많다. 그러나 장애와 비장애인에 대한 제도와 의식은 보편적으로 사회적 수준에 비해 보다 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곳이다. 엘리트를 지향하는 대학의 문화는 청인 중심의 문화와 규칙이 지배적인 곳

¹⁾ 청각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는 청각장애인, 농아인, 농인 등이 있다. 청각장애인이란 호칭에 대해 청력의 손실은 있으나 손 말(수화)을 사용할 수 있음을 살기하며 이 호칭을 반기지 않는다. 농아인 이란 호칭역시 벙어리를 가리키는 "아 "의 단어가 차별과 무시함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보아 불쾌감을 갖는 농인이 많다. 농인들 사이에서 농인이란 호칭을 가장 선호 한다. 그러나 법적 용어는 여전히 청각장애인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농인과 청각장애인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³⁾ 농인에 대칭되는 용어로 일반인, 건청인, 청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가치중립적이고 농인 사회에서 즐겨 사용하는 '청인'으로 표현하여 사용하였다.

⁴⁾ 농인들의 대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손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수화와 지화의 사용(수화)이다. 두 번째는 흔히 구화라고 통용되는 독화와 독순이다.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화가 되고 듣는 사람입장에 서는 독화가 된다. 세 번째는 필담이다. 상대방과 글을 써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청인과 농인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다. 이런 특성은 이중문화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더욱이 대학은 보다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풍토를 중요시 한다. 또한 과목 선택과 동아리 활동 등 대학 생활 전반이 개별화 되어 있다. 대학의 보수적 경향과 자율과 개별화의 가치를 지 향하는 대학 생활의 특성은 청각장애인과 같이 특수한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학교생활을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청각장애 대학생들은 생의 초기과정부터 자신이 속한 집단과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소수자의 삶을 살아 온 이들이다.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관계의 단절과 사회 부적응, 다양한 심리 정서적 좌절과 부적응이 대학 생활에서도 반복되어 경험 될 것이다. 실제로 청각장애 학생들이 이전에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대학에서 더욱 심각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어이 같은 가능성이 현실화 되고 있음을 확인 해주고 있다(Brueggemann, 1999:33-47; Fisher, 2000:23-31). 물론 이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극복해야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학교생활에 국한되어 한정적으로 나타나기보다 소통과 관계된 대부분의 일상에 광범위 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대학기의 과도기적 불안정성과 개인적인 소통의 장애가 중첩되어 심리적 스트레스와학교 적응의 곤란이란 이중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김경진, 2004: ; 이준우, 2003:43). 특히 이들은 언어 습득 이전에 청력을 상실한 전 농인으로서 대학생이 되기까지 자신들의 언어인 수화와 전혀 다른 문법 구조와 단어 표현으로 구성 된 문장을 해석하며, 교사의 입 모양을 해독 하며 학습 해 왔다. 즉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보이는 이미지로 바꿔가며 힘든 과정을 지나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삶과 학교생활 경험을 일반적으로 일반화 하거나 과학적 기준으로 객관화하여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고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농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농인들의 부적응 행동과 능력 부족, 폐쇄적인 대인관계, 자기중심적 경향, 과도한 의존성과 충동, 부적절한 현실감과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다루고 있는 것도 이들의 독특한 경험과 소통의 부재를 간과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실증적 연구에 치우친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연구결과에서 농인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사실이라 해도 측정 도구가 청인을 기준으로 개발되었고 평가가 기준 역시 같은 맥락에 있음을 고려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농인들은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연속적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의사소통이 안 되는 좌절로 인해 부정적 행동이 실제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음미 해볼필요가 있다(이광열, 2006; 김종현, 1994).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청각장에 대학생들의 삶을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언어로 이해 하고자 한다. 청각장에 대학생들의 경험은 대학생으로서, 그리고 농인으로서 독특한 경험이 고유한 무늬와 빛깔로 채색되어 있다. 이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언어로 해석하는 것이다. 질적 연구 중에서도 현상학적 연구는 전체적이며 심층적인 연구를 지향하면서 연구 대상인 인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본질적

인 시도와 노력을 지향 한다.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청각장애 대학생의 경험의 본질과 현상을 이해 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고 의미 있는 접근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질적 연구가 양적이고 객관적 연구를 통해 잘 드러나지 않는 억압 구조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중요시 하는 연구에 보다 적합한 연구란점에서 그러하다. 음성언어 사회에서 비 음성 언어 사용자로 대학까지 교육과정을이수 하였고 현재 일반인과 함께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의 삶과 그 과정의 경험을 '외부자의 관점(etic)'을 해체하고 '내부자의 관점(emic)'으로 드러내어 현상의이해를 보다 더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 농인의 삶의 경험을 인과적으로설명하거나 전제를 가정하지 않고 직접 기술하고 연구함으로서 그들의 경험의 한층을 열어 보이고, 그곳에 존재하는 의식적 경험, 그 속에 나타나는 본질적 구조를발견 하는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2. 연구목적

이상의 논의에 따라 구성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청각 장애 대학생들이 삶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본질적 경험은 무엇인가?
- 2) 청각장애 대학생의 대학생활의 경험은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선행 연구 검토

청각장애 학생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해 보면 주로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부적응, 언어 사용과 관련한 자아개념, 정서적 특성과 양육환경, 수화습득과사용, 진로 지도, 통합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특수교육학과 재활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들을 범주화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언어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언어 사용의 권리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언어의 권리를 고찰한 것(아베아스시, 2004:63-78)과 언어 환경이 자아개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 (정운기, 2008:43-62)가 있으며, 청각장애에 의한 언어 장애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농인들은 청인 중심의 사회에서 언어적으로 불평등 한 지위에 속해 있음을 주목한다. 청인중심의 사회는 농인의 언어인 수화 사용을 무시 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갖고 있어 농인의 언어적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언어 사용이 개인의 자아정체성과 대인관계 등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결과들을 제시하여 농인의 자아정체성과 대인관계 제한점 등을 다루고 있다.

두 번째 범주는 청각장애 학생의 의사소통과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이정민, 2006; 이광열, 2006; 송혜경, 2006; 우장석, 1997; 이상욱, 1995). 이들 연구에서

는 청각장애 학생들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청인학생과 반대로 자아 동조성이 취약해 지고, 상대적으로 부적응적 행동이 많이 나타나며, 언어 발달과 문해 능력이 지체되 고 있는 점들을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범주에서는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 현황과 실태, 그리고 통합교육에 관한 연구이다 (권순우, 2004; 최성규, 1994; 임동규, 1995; 고은, 2004). 이 연구들은 청각장애 학생들의 교육 기회의 제한, 통합 교육의 문제점, 그리고 교사들의 농인에 대한 낮은 인식의 정도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지적하고 있다.

네 번째, 수화 사용과 관련된 연구다(김병하, 2001; 안성수, 2003; 배둘련, 2002). 이 연구들은 수화 습득과정과 수화에 대한 태도 비교, 학교와 교사의 수화사용 실태들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결과 중에는 수화의 습득 시기가 빠르고, 수화로 교육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농인 학생에 비해 교육 성취에서우월하다는 결론이 제시 되었다. 그 이유는 적절한 수화가 구화에 비해 좀 더 풍부하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 학교에서 수화 중심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도 보고 되고 있다.

다섯 번째, 청각 장애 대학생에 관한 연구이다 (김경진, 2004; 권순우, 2005; 유선옥, 2006). 이 연구들은 청각장애 대학생이 부족한 의사소통과 언어 구사력, 낮은 문장 이해 수준으로 대학생활에서도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일반 학생과 마찬가지로 여가와 가족과의 시간이 부족하고, 문해 능력이 낮고 소통이 단절되어 상대적으로 질문을 더 적게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청각장애에 대한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 외국의 선행 연구들은 농인과 실청자의 의사소통 체계 분석 (Sonyan and Naish, 1998), 청각장애 학생과 지지자의 상호 작용의 질적 분석, 청각장애 학생의 질적 연구 (Salles, Lima-Sqlles, Bert, 2005), 농인 자녀를 둔 청인 부모의 부적응 (Young, 1999), 성인 농인의 경험에 관한 연구(Miguelo, Nick, Coady, 2001) 등이 있다.

2. 농인의 삶

농인의 삶은 농인의 자아정체성, 의사소통, 가족 관계, 통합 교육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농인의 정체성

농인의 정체성은 농정체성라고 압축하여 표현하곤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의미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농인을 소수 집단으로 이해하고 이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포함하고 있는 농인 집단이 갖는 일체감이며, 농인이 농인 문화와 공동체에 대하여 동일시하는 방식'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배성규, 2006:2) 농인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시도 되었고 그 강조점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Holcomb,1986; Weinberg, Sterritt,1986; Grickman,1993;Fischer,1997) 그

중에서 Grickman은 농정체성을 4개 범주 즉, 청인 중심 정체성, 주변 정체성, 몰입 정체성, 이중 문화 정체성으로 구분하여 설명 한다(Grickman,1993 : 331). 청인 중심의 정체성은 청인과 농인의 차이를 병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정체성으로 청인 사회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농인 사회를 비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문화적 태도를 갖는 정체성이다. 주변 정체성은 농인의 경우 자신이 농인사회와 청인 사회 중 어느 곳에 소속감을 가져야 하는 알지 못하고 혼란을 나타내는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몰입 정체성은 청인 정체성과 반대로 농인의 문화와 수화에 대해 자부심과 정당함을 강조하여 농인에 대해서는 지지적인 성향을 나타내지만 청인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정체성이다. 이중 문화 정체성은 가장 통합된 정체성이다. 이 정체성은 청인 문화와 농인 문화 모두를 존중하는 태도를 나타내며, 동시에 두 문화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인과 청인의 문화가 서로 어울리는 것과 각각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체성이다. 일반적으로 이중문화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유연하며 심리적으로도 보다 건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인의 자아정체감은 속해 있는 환경의 농정체성 발달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 다. 농인 개인이 이중문화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보다 탄력적이고 건강할 가능성 이 높다. 그런데 농아동의 경우 부모와 가정의 정체성에 따라 자아 정체감을 다르 게 형성 한다. 예를 들면 농아동의 부모가 청인 일 경우에도 그 부모가 이중문화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면 부모는 수화 사용에 허용적 태도를 보이고 수화로 대화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농 아동은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높은 정서적 지지를 받아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능력과 자아존중감이 발달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해당 하는 청인 부모와 농인 아동으로 구성 된 혼합 가정에서 는 청인 중심의 정체성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Grickman, 1993 : 331). 농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서적 어려움과 미성숙, 부적절한 행동들이 생의 초기과정에서 가족간의 충분한 상호작용과 애착의 부족, 열악했던 정서적 의 사소통의 결여와 깊은 연관이 있다(최성규, 2004: 288). 즉 가정에서 이중문화가 결여되어 있을 경우 부모와 빈약한 의사소통 기술, 부적절한 엄마와의 유대 관계, 역할 모델의 부재, 사회적 고립, 가족 및 일반 사회로부터의 거절 등으로 인해 부정 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기 쉽다 (Mulcahy, 1998). 농인의 자아존중감은 가정에 서 의사소통의 방식, 대학교 이전의 학교 교육의 형태, 청력 손실의 정도, 농정체성 등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구화를 사용하는 가정환경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 고 보고 되었다 (Jambor and Elliott, 2005 재인용).

2) 농인의 의사소통과 수화

인간은 의사소통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공통된 의미를 형성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생활을 영위한다. 인간이 초기에 의사소통을 습득하는 과정은 주로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시작한다. 그러나 인지기

능이 발달하면서 사회가 공유해서 사용하는 상징체계인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 언어를 습득하게 되면 언어를 사용하며 그 언어를 중심으로 관계 망을 형성하고 사회체계에 통합되는 과정을 밟는다. 그러나 농인들은 핵심적인 상호작용의 상징인 음성 언어를 사용할 수 없다. 농인들은 수화 등의 다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지만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소통이 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은 농인의 삶의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사소통의 장애는 가족간의 친밀감의 형성, 대처기술 발달에 지지적인 자극을 제공하기 어렵다. 특히 농인 자녀가 청인 부모 밑에서 성장 할경우 수용감을 느낄 수 있는 절절한 언어 환경이 제공되지 못해 가정에서 조차 스스로를 '낯선 사람'으로 느끼며 성장하고 수화 습득 시기도 상대적으로 매우 늦다. 그 결과 낮은 의사소통 양식을 갖게 되어 소외감과 자폐적 성향을 지닐 개연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농인들이 수화를 습득하는 시기는 부모가 농인인 경우에는 태어나면 서부터 수화를 접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개 5-7세 경에 수화를 접하는 경우가 많고, 본격적인 수화 학습은 주로 4-8세에 이루어진다. 이처럼 수화 습득이의사소통 능력 강화 외에 대인관계 능력과 긍정적 정서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미치지만 대개의 청인 부모들은 수화 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가 농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청인 부모는 수화를 배우지 않아 부모 중 단지 9.09%만이 수화를 습득 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Spencer and Gutfreund, 1990: 39-40). 또한 청인 부모 중 10-12%만이 수화로 자녀와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Marschak, 1993:25). 우리나라에서 농인 자녀의 60% 이상이 부모의 대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고, 청인 부모의 63.8%가자녀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호소하고 있다(문봉오, 2000: 2).

3) 농인과 가족 관계

농인 가족의 부모 자녀 관계는 농인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단일 형태의 가정과 건청 부모와 농인 자녀로 구성된 혼합 가정에 따라 다르다. 농인 부모들이 농인 자녀를 두는 경우에 부모들은 큰 혼란을 겪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농인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인지력과 언어기술을 지닌 사회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환경을 제공 하는 편이다. 그러므로 그 농인 자녀들은 청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 느낌이나 열등한 생각을 갖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Orbu, 1996; 이미혜, 2002 :재인용) 그러나 청인 부모가 농인 자녀를 두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며 외상이다. 청인 부모들은 충격, 거부, 슬픔, 부인, 죄책감, 수용 과정을 통해 적응해 가지만 청각 장애를 치료될 것으로 믿는 태도를 취한다. 자신의 믿음에 기초하여 농인 자녀를 청인의 언어를 사용하며 청인 문화에서 살아가기를 희망하여음성 언어를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농인 언어인 수화를 기피하는 양육 방법을 취한다. 청인 부모들이 농인 자녀의 수화 사용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수화 사용 능력이 없을수록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언어적 상호 작용을 더 많이 강요하는 경

향을 보인다. 이럴 경우 농인 자녀와 청인 부모는 불확실한 애착과 좋지 못한 상호 작용을 형성하기 쉽고, 자녀에 대한 지지와 칭찬이 부족하며 의사소통이 제한적인 어려움 등을 겪는다. 이 경우 농인들은 가족간에 의사소통 방법이 형성되지 않아 정서적으로 불안한 측면을 보인다. 다행히 형제가 많은 경우에는 형제 끼리 의사소통이 부모와 의사소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활한 편이어서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4) 농인과 학교생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청인 부모 밑의 농인 자녀는 고등학교까지도 상당 부분 통합 교육을 받고 있으며, 대학생 경우는 모두 다 통합교육을 받는다. 농인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고 오랜 시기에 걸쳐 있는 학교생활의 통합 경험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평등한 통합으로 인해 오히려 고통과 외상을 겪고 있었다. 권순우(2006)는 청각장에 학생들이 보여주는 정서적 문제들은 주로 학급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지적한다. 이는 지원과 배려 없는 통합의 문제 즉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협동체계나 연계성이 갖추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임을 강조 하고 있다. 임동규(1995) 역시 통합 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통합이 단지 일반 아동의 교육 환경에 청각장에 학생을 단순히 통합시키는 물리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한다. 물리적 통합을 넘어선 기능적 통합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통합교육을 받는 청각장에 학생들이 고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준비와 배려 없는 무리한 통합교육이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으나 현재 수준의 물리적 통합이 결코 청각장에 아동의 효율적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는 참여자들은 청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농인들로 연구 당시 한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1.2전공하고 있는 7명의 대학생이었다. 이들이 실청을 한 시기는 모두다 영.유아기에 해당 한다. 실청의 원인에 대해 참여자들은 대부분 어릴 때 앓은 열병의 후유증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병원의 소견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전해들은 정보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참여자의 선정은 참여자들과 연구자의 우호적인 만남을 통해 시작되었다. 참여자들은 농인으로서 대학생이 된 자신들의 독특한 삶의 경험을 연구자와 공유 하며 신뢰를 구축하였다. 또한 의사소통의 한계 때문에 농인의 삶이 제대로 드러나거나 이해되지 않아 왜곡되며, 농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 현실에

대해서도 공감하였다. 이러한 공감과 신뢰를 통해 자신들의 경험의 본질을 그대로 이해하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동의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목적과 비밀보장, 그리고 자발성을 유지하는 일들에 대해 설명하였고 원하는 경우에는 중도에 그만둘 수 있음을 안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7명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면접 시 연구자와 참여자의 의사소통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의 전담 통역사인 전문 통역사의 참여를 허용하고 동시통역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 개인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	학년	성별	실청시기와 원인	농인가족 (유.무)	교육과정 경험	수화 습득 시기
참여자 1	4	여	3세, 중이염	무	초.중.고 농인학교	농인학교입학
참여자 2	4	남	1살, 열병	무	.초.중 통합학교	7세유치원
참여자 3	4	남	잘 모름	무	초.중.고 농인학교	농인학교입학
참여자 4	3	여	1세, 열병.	무	초.중.고 통합학교	대학,인공와우수술
참여자 5	2	여	3세, 열병	무	초.중.고 농인학교	6세 유치원
참여자 6	2	여	1세, 열병	무	초.중 통합학교	고등학교
참여자 7	1	남	3세, 열병	동생농인	초등. 통합학교	중학교

<표1> 참여자의 배경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에 대학생의 삶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청각장에 대학생들의 성장과정과, 대인관계, 학교생활의 복잡한 형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 본질적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를 선택 하였다. 연구 방법과 목적에 맞게 참여자인 청각 장에 대학생들의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여 존재하는 현상을 인식하고자 하였다.

면접은 연구자와 참여자 그리고 통역사로 이루어진 집단을 통해 포커스 집단 면접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포커스 집단의 형식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은 청인 인 연구자와 농인 인 참여자의 의사소통의 방법의 차이로 인해 개별적인 심층 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본질적 이해라는 연구 방법에 기초하여 집단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그 자료들을 본질 그대로의 현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방법상의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3. 연구 절차 및 분석

본 연구는 4개월 동안 12회기의 집단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다. 1회기에 소요된 시간은 약 2시간 30분 정도였다. 면접의 진행방법은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경험에 대해 반 구조화된 질문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방형의 질문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제안에 따라 특정 주제들을 첨가시키며 자료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참여자들은 대학생이 되기까지 자신들의 삶에서 경험한 내용들을 의사소통, 삶의 태도, 대인관계, 학교생활, 의식의 변화 등으로 나누어 토로 하였다. 면접 과정은 전문 수화 통역사의 도움으로 동시통역으로 진행 되었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는 최대한 의사소통의 역동성이 유지되도록 배려하면서 나타나고 표현되고 있는 현상들을 자세히 관찰 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녹음에 의해수집한 자료 전사되었으며, 현장 노트와 함께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과정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 속성보다는 전체 참여자의 공통적특성을 도출해 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과정에서는 먼저 녹음된 자료를 전사하여 반복하여 읽고,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중지와 괄호 치기를 하였다. 그리고 현상학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들을 문구나 문장을 표시하며 부호를 입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으며, 그 진술을 주제와 기본구조로 나누어 범주화 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주제와 기본 구조들에서 나타나는 본질적 의미를 현상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 하였다. 또한 연구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의미의 비교와 맥락의 비교를 하였으며, 관련 전문가와 논의하였다. 그리고 엄격성을 위해 매 회기에서 지난 회기의 내용들을 참여자들이 회고하여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최종 분석된 자료 역시 검증의 기회를 가졌다.

IV. 연구 결과

1. 의미 있는 진술과 주제의 유목화

7명의 연구 참여자에게서 나타난 의미 있는 진술 중에서 중복된 내용을 제외하고 재 조직화 과정을 통해 확보한 의미 있는 진술은 238개였다. 이는 다시 15개의 주제와 7개의 기본구조 유목화 (categorize) 되었다.

1) 의사소통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체험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현상은 소통 할 수 없는 답답함 이었다. 수화를 제 1 언어로 사용하지만 수화만으로는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었다. 사람들 속에 같이 있지만 영문을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한 채로 어둠을 더듬적거리는 것 같은 답답함과 절망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 좌절과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입 모양을 보면서 소통해 보려하고, 눈치껏 이해하려 애를 쓰며 답답함을 뚫어보려 하지만 한계를 느끼고 좌절한다. 이러한 체험은 자기 부정과 소외로 이어지고 있었다. 결국 소통할 수 없는 커다란 장벽에 가로 막혀 있는 것이다.

<표2> 의사소통의 경험

의미 있는 진술	주제	대 주제
의사소통이 너무 안 되니까 답답하고 절망스러워. 한국말도 외국어랑 똑같아. 수화로는 알지만 글로 읽는 단어는 모르고. 무슨 말인지 몰라. 알 수 없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답답. 이해 못하니까 재미없어. 신경질 나. 나 혼자 만 대화 안 통해. 청인과 얘기할 때 항상 무슨 말인지 몰라.	소통이 안 되니 답답 하여 낙담	소통의 한계와
그냥 조금. 정말 조금 통해요. 조금 대화되고. 말로하면 눈치로알고. 글로 써서 대화하는 정도. 깊은 대화는 못 나눠. 간단한 대화만 가능. 할말은 많지만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 많아. 마음속 깊은 대화는 불가능. 깊이 대화할 수 없어서 서운. 마음이 통하지않으니까 낙심 많이 하고. 부정적이 돼.	눈치껏 노력해도 통하 지 않는 대화	· 강벽

2) 자아 정체성

언어를 습득하기 이전에 이미 듣는 능력을 상실한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다른 가족이나 친척과 달리 듣지 못하는 사실이 이해할 수 없다. 들을 수 없는 낯선 존재인 자신이 수용되지 않아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고, 낳아준 부모와 창조자인 절대자를 원망하며 무력감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고 있었다. 고립과 소외된 존재로 위축된 농인들은 정체감의 혼란을 겪으며 방황한다. 그 가운데 부모나 형제처럼 중요한 타인에 의해서 자신들이 부정되고 거부당하는 사실과고통을 목격하고 겪으면서 깊은 상처를 받는다. 동시에 자신을 낳은 것으로 인해어머니가 비난을 받고 형제들이 수치와 고통을 겪고 있음을 체험하면서 농인의 정체감은 상실되어 침몰 해 버리고 자존감은 체념 속에 묻어 버린다.

<표3> 자아정체성

의미 있는 진술	주제	대주제
나는 왜 농민으로 태어났을까. 죽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고. 어둡고 암울하고. 하나님은 왜 나를 농인으로 만들었나. 늘 불안하고 우울. 막 울면서 자살하고 싶다고. 마음 열지 못하고. 왕따로 남아. 심한 고통 가운데. 혼자 방황. 낙심의 늪. 어쩔 수없다고 포기. 스스로 신세 한탄. 너무나 두려워. 힘이 별로 없어. 항상 부정적인 생각하며 살아옴. 안 들린다는 사실이 너무불만스럽고 화가 남.	한탄과 절망에 갇힌 채 방황	존재의 부정
친척들이 엄마에게 왜 농인을 낳았느냐고. 엄마가 늘 울었던 모습. 나에게 집안망신 시킨다고. 친척들이 모이면 창피하다고. 나만 빼놓고 가고. 손님 오면 창피하니까 숨겨. 희망 없는 아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차라리 내다 버려. 무슨 죄 때문에 농인을 낳았느냐고. 동생이 나 때문에 친구들과 싸워. 누나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동생이 우리 오빠 아니야!	출생과 존재 자 체가 거부되는 아픔	

3) 삶의 태도

참여자들의 삶의 태도는 현실의 모순을 받아들이려 노력하다가 그 것 역시 불가능함을 경험하여 철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맹인에게는 보라고 하지 않고, 지체 장애인에게 달리기를 요구하지 않지만 소리를 들을 수도 발음 할 수도 없는 농인에게 말할 것을 요구 하는 모순 된 현실을 도무지 받아들여 이해 할 수 없다. 그러나 소

리 언어 인 말을 연습하고 또 연습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불가능을 연습하는 자신들과 다르게 부모나 가족들은 수화를 배워 자신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으려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농인의 핵심 언어인 수화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무시하여사용을 제지하기 까지 한다. 이런 현실에서 다시 한 번 관계의 단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 이 경험들은 외부와 접촉하고 함께 하는데 필요한 통로를 찾아내지 못한 채 스스로 물러서 있게 한다. 어울릴 수 없고, 마음이 열어지지 않고, 거부감이 있어서 언제나 제외되는 경험을 통해 자신들은 왕따임을 깨닫는다. 결국 농인들은 모순 된 현실에서 고립되는 체험을 통해 극단의 소극적인 태도로 물러나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된다.

〈표4〉 삶의 태도

의미 있는 진술	주제	대주제
말을 왜 하라고 하는지. 엄마는 수화 배우고 쓰는 것 싫어해. 글로 쓰면 말로하래요. 택시 안에서 수화하니까 엄마가 하지말고 말로 하라고. 안 들리니까 말할 수 없는데도 수화하지 말고 말로 하라고. 말 연습 발음연습 하고 또 하고. 말 연습은 너무 힘들어. 유익하지도 않아. 말 연습 단어연습 하고 또 하고. 발음 못한다고 볼 꼬집히고. 매일 매일 문장훈련. 단어 보여주면서 해보라고. 말을 해야 희망이 있다고. 언니랑 수화하니까엄마가 못하게 해. 수화는 창피하니까 말로해라. 수화는 싫으니까 말을 해라. 수화 쓴다고 하면 짜증 많이 내. 엄마 아빠는 말로만 하니까 우리는 눈치로 알고. 부모님이나 형제들은 우리가하는 수화를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에 무력감과 절망 느껴.	말과 문장을 배 우고 연습해야 하는 농인	모순 된 현실 의 한계 앞에 물러섬
청인들과 대화가 안 되니까 농인끼리 만 어울리고. 안 들리니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자신과 다르니까 거부하게되고. 그래서 왕따가 돼. 뭔가 차이가 있긴 한데. 거부감이 생기는 듯. 어울리기 힘들어. 친구가 없어. 한번도 생일 초대 받은 적 없어. 다시는 친구 사귀지 않기로 다짐. 거부감 있으니까마음열지 못하고. 혼자 알아서 해요.	마음을 열고 어 울릴 수 없어 물 러나 있음	

4) 인간관계

농인들의 대인관계는 소통 단절이란 근본 원인에 가로막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관계를 맺지 못할 뿐 아니라 수많은 편견과 오해 속에서 차별적인 수모와 학대, 누명을 쓰는 학대적인 인간관계 경험을 하고 있다. 소통과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가운데 농인은 욕설과 구타, 부당한 요구, 덮어씌우기 등의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었다. 이런 경험은 농인들에게 분노와 복수심을 갖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과 대처 할 수 있는 대등한 힘을 갖지 못하여 끌어 오르는 분노와 복수심을 어쩔 수 없이 억누르고 있다. 이 과정을통해서 농인들은 "한"을 내면화 시키고 있었다. 농인인 자신에 대해 한스러움이 내면화되고 밖으로 표출되는 인간관계에서는 편향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농인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호감과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청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분노와불신 등의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표5> 인간관계의 경험

의미 있는 진술	주제	대주제
혼자만 농인이다 보니 상처 많이 받고 힘들고. 항상 욕먹고. 그래서 속상하고. 언제나 참아야만 함. 왜 못 듣느냐며 때리고. 이유없이 때리고. 머리채 잡고. 맞은 회수가 천 번 이상 될 것. 늘 심부름 시키고. 수화 한다고 손가락 비틀고. 이유 없이 피하고. 너무많이 맞고 아파서 데굴데굴 구르고. 도망 갈 곳도 없어. 밀쳐 넘어져 병원에 감. 학교 다닐 때 맞았던 꿈. 지금도 꿈에 맞아. 꿈을 꾸면 항상 악몽과 불안.	참을 수밖에 없었 던 욕설과 매 맞 는 수모	
돈 훔쳐 갔다고 누명쓰고. 부모님조차 그 말 믿고 때리고. 교실에서 남자친구랑 이상한 짓 했다고 선생님이 집에 전화.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내 뺨 때려. 영문도 모른 채 죽어버릴까. 죽고 싶은 생각 많이 하며 고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억울한데 설명할 수가 없으니 그냥 당해. 여자애들이 변태라고 소문내고. 이상하게 쳐다보고 피해. 여자애 성폭력 했다고 억울한 누명 씀. 경찰서까지 가고. 부모님까지 빌고. 정말 아닌데.	억울한 누명	학대와 누명의 상처가 한이 됨
복수해야겠다. 때리는 친구 뼈를 부러뜨려야겠다. 정말로 부러뜨리려 맘먹고. 언젠가 복수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하지만 늘 참아야했다. 그냥 용서하기로 맘먹고. 힘들어도 참고 인내. 화가 너무 났지만 참았어요. 너무나 화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고.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용서하기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이 많아요.	솟아오르는 분노 와 복수심을 억누 르고 한을 갖게 됨	
청인들은 농인 무시. 농인은 할 수 없다. 농인은 희망 없다. 대화가 안 통하는 것뿐인데 고집이 세다고. 농인은 고집이 세고 말이안 통한다. 농인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선생님. 농인에게 책읽기를 시키는 선생님. 못한다고 해도 무식하다 비웃고. 청인들에게 하도 많이 상처를 받아서. 청인에게 냉랭하게 대함. 농인은 다 좋고 청인은 무조건 싫어	청인에 대한 편견 과 반감	

5) 학교생활

농인 대학생에게 학교는 매우 중요한 경험의 장이다. 낯선 상황에서 적응의 곤란을 겪은 장소이며,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함께 할 수도 없는 이질적인 존재로서 그래도 살아남아야 했던 곳이기도 하다. 동시에 동질적인 공동 의식으로 편안함과 연대감을 경험한 곳이며 대등한 힘을 드러내 보인 곳이기도 하다.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삶의 경험 중 가장 많은 부분이 학교생활과 관련되어 있다. 정체성의 혼란과 관계의 단절이 학교생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확연하게 드러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학교에서 힘든 경험과 상처를 통해 성장과 변화의 탄력성이 실험되고 발휘되기도 한다.

농인 대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학교생활을 일반 학교에서 했는지, 또는 농인 학교에서 했는지, 아니면 양쪽을 모두 경험 했는지에 따라 그 경험에 차이가 있다. 일반 학교에서 교육 받은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그들의 경험을 낯선 곳에서 이질적인 존재로 혼자서 가쳐 있는 생활로 느끼고 있었다. 청인 학우들과 함께 있으나 결코 그들 속으로 들어가 함께 할 수 없었고 허락 되지 않았기에 미운 오리새끼의 쓸쓸함을 사무치게 체험한 곳이다. 언제나 방관자이거나 배제 되어 있으면서 폭력과 두려움으로 혼자서 불안하게 견딘 곳으로 경험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농인학교에서는 동질감을 바탕으로 대등한 관계를 맺는 경험을 한다. 선후배 간의 싸움

이 있다고 해도 그냥 당하고 참는 존재가 아니라 같이 싸우고 화해하면서 동료 의식과 대등한 관계를 체험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은 새롭게 낯선 장소로 압도한 곳이다. 대학에서 농인들은 온통 이질적인 문화와 환경에 혼자 뛰어든 듯한 경험을 한다. 어려운 학습의 내용과 수준, 문화의 차이로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 스스로 자퇴 해버리고 싶을 만큼 갈등과 좌절, 혼란이 극도에 이르지만 견디고 있는 곳이다. 스스로의성장과 힘, 그리고 도전이 다가오기도 하고 졸업한 선배의 모델을 보면서 견디는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표6> 학교생활

의미 있는 진술	주제	대주제
모두다 청인인데 혼자만 농인이다 보니 상처받기 쉽고. 욕고 많이 먹고 힘들었어요. 친구가 한명도 없었어요. 체육 시간에는 앉아서 구경만 하고. 농구할 때 였는데 청인 친구들이 그냥 나를 막 때렸어요. 밀치고. 나도 같이 하고 싶었는데. 집단에 안 넣어줘. 내가 들어가면 손해. 혼자 앉아 있어. 한번도 친구들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적 없어. 무서웠어요. 언제나 혼자.	이질적 존재. "미운오리새 끼"의 생활	
농인학교 청인학교와는 다른 곳. 청인학교 다니며 욕을 많이 얻어 먹었다는 공통점. 선배들이 많이 때림. 동생을 때려서 동생대신 맞기도 하고. 청인학교에서는 심하게 맞아도 싸우지도 못하고 참기만 했지만 농인학교에서는 같이 싸웠다. 막 싸우다 친해지고 그러다 친구가 되었다. 늘 같이 있어. 추억이 참 많아.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청소하고. 착하고좋은 선배도 만나고	갈등과 다툼 조차 동질감 으로 반길 수 있었던 특수 학교	이질감과 동질감, 그리고 혼란속에
대학교는 고등학교 시절과 많이 달랐다.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라는 느낌. 실수가 참 많았다. 강의실을 찾는 것 수강신청 하는 것. 수업 듣는 것. 미칠 것 같이 힘듦. 청인 세상에 농인이 뛰어든 것 같은 곳. 말 안통할 때 너무 많고. 몰라도 물어볼 수 없다. 생활습관이나 문화 참 많이 다른 것 알게 되었다. 기숙사에서 소리가 안 들리니까 문소리 크게 내고. 의자소리도 그렇고.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혼자서 고생스럽게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자퇴하고 싶은 생각이 수없이. 해도 해도 힘들어. 죽고 싶은 만큼 힘들기도. 졸업한 선배들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	청인 세상에 농인혼자 뛰 어든 것 같은 대학생활	성장

6)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청각 장애 대학생에게 자신감과 희망의 밑거름이 되고 있었다. 이들이 경험하는 지지의 일차적 근원지는 부모와 형제다. 지지와 격려를 보내며 믿음을 주는 부모의 지지를 통해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겨나는 것을 체험한다. 또한 형제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있었다. 형제를 통해 함께하는 든든한힘을 느끼고, 자신을 필요한 존재로 느끼며 스스로 힘을 얻고 있었다. 가족 이외에가장 많이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는 농인 선.후배를 통한 지지와 유대감이었다. 서로간에 긍정적인 모델이 되고 있었으며 수화를 가르치고 배우며 학교생활에서도 서로의 상담자와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농인들끼리 서로를 위해 돕고싶다는 마음, 봉사하고 싶은 이타적 욕구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나누고 있었다.

<표7> 사회적 지지

의미 있는 진술	주제	대주제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고. 할 수 있다고 하시고. 엄마에게 힘을 많이 얻었다. 네 맘 다 안다. 너에게 좋은 일 있을 거야. 너는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주세요. 부모님 덕분에 웃을 수 있었고. 할 수 있다고 런 마음이 생겨난 듯. 너는 큰 그릇이 될 거야. 동생이 문자로 누나힘내. 누나 없으면 못살 것 같다. 언니가 괜찮다고 안아주고 다독다독 해주고. 너는 장애인이지만 손으로 얘기할 수 있다. 건강하잖아. 아빠도 안경 쓴 장애인.	자신감과 희망 의 밑거름을 준 가족	밑거름이 된 가족의 지지와 농
학교에선 선배누나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되었다. 수화도 많이 알려주고. 같이 해보자는 말도 많이 해주고. 추억이많다. 잊지 않고 남을 기억들. 고민 있을 때 나에게 오라고 하고. 나도 많이 돕고 싶어요. 같이 외국에 가고. 실습도 함께. 언니 발표하는 것 멋짐. 나에게 얘기하라고. 집까지 데려다 주고. 함께 밥 먹고, 웃고. 짐도 다 날라주고.	서로의 등을 기 대여 힘이 되는 농인 선.후배	인간의 유 대

7) 의식의 변화

청각장애 대학생들은 서서히 작은 부분에서 의식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의지와 희망이 생겨나는 것을 체험하고 있었다. 이들의 자아 탄력성이 시련을 통해서도 발휘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죽고 싶도록 힘들었을 때 주저앉지 않고 외국 여행을 선택하여 도전과 용기를 체험한다. 그 곳에서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한 농인의 당당함을 경험하며 의식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기회를 갖는다. 그리고 무시라고 여겨지던 청인들의 태도를 도전 하게 만든 동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새롭게 시작할 수있고 다른 삶을 살아 보겠다는 의식 변화를 체험하는 순간 자기 안에 숨어 있던 힘과 자신감도 발견한다. 그리고 외부로 향했던 분노와 한을 자신 성장 동기로 방향을 바꾸고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확신을 갖는다. 이런 변화는 도전하고 성장하는 리더로서,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선배가 되는 꿈으로 체화한다. 생각을 바꾸니 희망이 생기고, 희망을 갖게 되면서 행동이 변화되는 체험을하고 있다.

<표8> 의식의 변화

의미 있는 진술	주제	대주제
상처받았고 한이 많지만 조금씩 풀린 듯. 얘기 하면서 많이 풀림. 많이 힘들어 하다가 외국여행을 혼자 떠나. 농인 여자가 수화를 막 하면서 활 발하게 감. 뻥 튀겨지는 마음. 나도 한번 해볼까? 청인하고 똑같이 한번 해볼까? 욕을 먹다보니 도전하고 싶어지기도. 용기 가져봄. 솟아오르는 힘 느낌. 다시 해보자. 자신감이 확신이 되면서 조금씩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 새로운 인생이 남아있다. 후회 없이.	우물 밖으로 나와 나를(농 인) 다시 봄.	깨우침과
과거는 잊어버려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 내가 바뀌어야 다른 사람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됨. 서툴지만 열심히. 실수해도 반복하면서 노력. 패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승리. 꼭 승리. 농인을 위해 일하고 싶어. 상담 배워서 위로하며. 후배들을 위해 돕고 싶어요. 뜨거운열정과 용기로. 더 긍정적인 사람. 더 열심히. 해서 취업. 농인의 자부심과 멋진 모습 보일 터.	변화를 다짐 하니 성장의 희망이 생김.	희망

2. 경험의 기본구조와 의미

위에서 제시한 의미 있는 진술을 통해 청각장애 대학생의 삶의 대 주제인 7개의 기본 구조를 발견하였다. 기본구조를 나누어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통의 한계와 장벽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삶에서 의사소통은 본질적인 장벽이었다. 상호교환 되지 않는 상징체계인 수화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수화만으로는 소통의 대상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수화는 가까운 가족과 학교에서 조차 충분하고 정당하게 사용할 수 없다. 게다가 수화의 습득시기가 늦고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 수화사용 능력 역시 미흡하기만 하여 농인간에도 대화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결국 청각 장애 대학생들은 삶이 곳곳에서의사소통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었고 이것은 그들의 삶을 가로 막는 장벽이었다.

이러한 기본구조의 발견을 통해 농인의 이중문화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수화교육이 조기 교육으로 도입 되어야 하고 사회적 서비스로서 수화의 보급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특히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통해 수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부모와 가족들이 수화사용을 통해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원조 할필요가 있음도 확인 하였다. 특히 농인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조차 수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해결 되도록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도 인식하였다.

2) 존재의 부정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경험하는 본질적 현상은 자신들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이었다. 개별적인 인격체로서 소중한 가치는 부모와 소통이 되지 않아 지지받을 방법이 없었다. 그 대신 들리지 않는 낯선 존재로서 불안은 자기 정체성을 혼란에 빠뜨린다. 그 가운데 자신의 존재로 인해 어머니가 고통을 겪고 있고, 그 이면에는 자신을 부정하는 가족과 친지의 태도가 들어 있음을 목격하고 깊은 상처와 좌절을 겪고 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농인들은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과 위축된 존재 이미지를 내면화하고 있었으며 대학생이 된 현 시점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청각 장애 대학생에게 긍정적 자아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제공 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동시에 자조 그룹과 동료 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수화사용이 가능한 전문가의 양성도 필요한 부분으로 확인 되었다.

3) 모순 된 현실의 한계 앞에 물러섬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삶의 태도의 본질적 구조는 모순 된 현실의 딜레 마를 극복하거나 뛰어넘지 못해 물러서는 것이었다. 소리를 인식할 수 없는 특성과 음성을 사용하지 않는 개별성이 인정되지 않는 현실을 모순과 딜레마로 경험하고 있었다. 소리 대신 몸짓을 사용하고 언어 대신 수화를 사용하는 권리, 언어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수화 대신 말을 사용하기를 강요받아 실제로 말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지만 결국 안 되는 현실에서 딜레마에 부딪친 것이다. 무력감과 절망 가운데 자신을 닫으며 물러서는 삶의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이들의 물러섬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차별과 배제로 인해 쫒겨 난 물러섬이다. 장애 차별과 편견, 청인 중심의 문화와 우월감으로 자신들의 영토를 빼앗긴 것이다.

4) 학대와 누명의 상처가 한이 됨

청각장에 대학생들은 대인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부당한 대우와 학대, 억울한 누명을 견디는 상처와 한을 경험하고 있었다. 청각장에 대학생들은 그들의 삶 전반에서 이런 관계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내적 트라우마를 안고 있음도 확인 되었다. 그들의 삶 곳곳에서 심각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폭력적인 차별과 편견을 소리 없이 타고난 태생적 침묵으로 견디고 있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해 억눌러 참을 수밖에 없는 경험에 대해 "한"이 많다고 표현 했다. 스무 살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삶을 한이라고 불러야 할 만큼 그들이 경험한 상처의 뿌리는 깊고도 깊은 것이었다.

<표9> 청각장애 대학생의 의사소통, 자아정체성, 삶의 태도, 인간관계의 기본 구조

구분	주제	기본구조	명확한 의미
의사 소통 눈치껏 노력	소통이 안 되니 답답하여 낙담		농인들이 겪는 세상은 소통이 안 되는 답답한 장벽들로 가로막혀 있는 곳이다. 들을 수도 알 수도 없는 막막한
	눈치껏 노력해도 통하지 않는 대화	소통의 한계 와 장벽	대화를 눈치로 알아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좌절과 불안 그리고 분노를 경험한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존 재가 수용되지 못한다고 느끼고 부정적인 자기정체성과 인식이 내면화되는 경험을 한다.
자아	한탄과 절망에 갇힌 채 방황	다. 존재의 부정 존지 : 좌절과 방 한 1 황 주는 다.	생의 초기 과정에서 농인들은 자기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자신이 농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의구심과 자신의존재 자체가 부모나 형제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는 사실은 그 총계기 휴가의 사업되고 있다.
정 체 성	출생과 존재자체가 거부 되는 아픔		큰 충격과 혼란을 야기한다. 더욱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타인인 부모. 형제. 조부모. 친척들이 자신들에게 보여주는 부정적 태도는 견디기 어려운 좌절과 방황을 안겨준다. 소통의 단절을 존재의 부정을 경험하게 하고 위축과고립으로 이어진다.
삶의	말과 문장을 배 우고 연습해야 하는 농인	모순 된 현 실의 한계	농인들은 청각을 상실한 채로 음성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농인들이 자신들의 언어인 수화를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을 경험하고 있다. 수화사용을 수치스럽게 여겨 제지당하기도 하고 아무리
태도 마음을 열고 어울리지 못해 물러나 있음	앞에 물러섬	연습해도 가능하지 않은 음성을 사용하는 말 연습을 유어기 때부터 대학생이 될 때까지 강요당하는 경험을 하기도한다. 대부분의 농인들은 말 연습과 문장연습을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 간 관계	참을 수밖에 없었던 욕설과 매 맞는 수모	학대와 누명 의상처가 한 이 됨	농인들이 경험한 인간관계는 상처와 분노. 한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가정과 학교처럼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곳에서부터 이미 억울함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피해자로서 경험이 주된 것이었다. 이렇게 왜곡되고 갈등적인 인간관계의 본질은 의사소통의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역울한 누명 솟아오르는 분노 와 복수심을 억 누르고 한을 갖 게 됨 청인에 대한 편 견과 반감	다. 청인중심의 음성언어 사회에서 언어를 사용하는데 결정적 한계가 있는 농인들은 자신들을 이해하고 보호할 수있는 소통의 채널이 작동되지 않는 현실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일방적으로 겪게 되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분노와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고 이것은 농인에게 깊은 상처와 한을 남기고 있다.

5) 이질감과 동질감, 그리고 혼란 속에 성장

청각장애 대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통해 이질감과 동질감을 경험하고 혼란된 소용돌이 속에서 성장해가고 있었다. 혼자만 농인이었던 일반학교에서는 어떻게 해도섞일 수 없는 존재, 외톨이, 미운 오리새끼로 살아 낸 경험을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항변이나 저항은 생각조차 못한 채, 소통이 안돼 이해가 안 되는 세상에서 메아리 없는 단절과 어두움을 체험하고 있다. 그러나 농인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편안함과 대등한 느낌의 안도감으로 둥지를 경험하고 있었다. 농인학교의 조건이 상대적으로 우월해서라기보다 같은 처지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평가 하였다. 농인학교에서도 수화를 사용하지 않는 교사로부터 수학을 배워야 했던 말도 안 되는 현실은 농인 학교에서 조차 수화로 대화할 수 있는 교사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실소를 터트렸다.

대학생활은 문화와 체계의 혼란, 학습 방법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확인 한 사실은 통합 교육에 대한 준비와 배려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선행될 조건임을 제삼 강조하는 것이다. 동시에 교사와 동료학생의 농인에 대한 인식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통합은 오히려 농인 학생들을 보호 장치 없이 위험 상황에 방치하는 것과 같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의식의 향상과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표10> 청각장애 대학생의 학교생활의 기본구조

구분	주제	기본구조	명확한 의미
학교 생활	이질적 존재 "미운오리새끼" 의 생활 갈등과 다툼조 차 동질감으로 반길 수 있던 특수학교 청인 세상에 농인이 혼자 뛰어든 것 같은 대학생활	이질감과 동질감, 그리고 혼란속에 성장	농인들의 학교생활은 일반학교에서 통합된 과정을 이수하거나 농인들의 학교에서 특수교육과정을 밟는다. 경우에 따라서 농 인학교만 다닌 참여자도 있고 일반학교에만 다닌 경우도 있으 며, 양쪽을 모두 경험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대학생활은 모두 통합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농인들은 농인들의 특수학교 경험을 동질적으로 받아들이며 보다 긍정적인 경험으로 받아 들이는 반면 일반학교 생활은 소외와 따돌림. 부당한 대우 등 의 부정적인 사건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대학생활 역시 혼란과 당황스러움을 경험하며 혼자 알아서 모 든 것을 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곳으로 이해하고 있다.

6) 밑거름이 된 가족의 지지와 농인간의 유대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는 매우 취약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밑거름이 되는 지지는 부모와 형제 가족으로부터 제공되고 있었으며, 농인간의 유대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고 있었다. 비공식적 사회적지지 외에도 공식적이며 전문적인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고 강화 할 수 있는 접근과 서비스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7) 깨우칚과 희망

청각장에 대학생들의 성장의 발판에는 의식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고립과 은 둔, 물러나 있는 삶의 태도에서 같은 농인의 처지이지만 당당하게 도전하며 힘차게 걷고 있는 다른 농인을 보고 "나도 해볼까?" 라는 의식과 태도의 변화를 통해 바늘 구멍 같은 가능성을 체험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변화가 희망의 시작임을 깨닫고 스스로 성장 의지를 강화 해 간다. 의식이 변하고 태도를 바꾸자 목표와 희망이 생기는 것을 발견 하였다. 농인에 대한 통합적인 사회복지 접근이 삶의 모든 단계에서 제공되어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런 사실에 입각하여 최적의 전문적 서비스를 논의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한다.

〈표11〉 청각장애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의식 변화의 기본구조

구분	주제	기본구조	명확한 의미	
사 회 적 지지	자신감과 희망의 밑거름을 준 가 족	밑거름이 된 가족의 지지와	농인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는 가족과 농인 상호간의 지지가 중심이었다. 가족은 생의 초기과정에 고통과 갈등을 안겨주기도 하고 소통의 불충분함으로 오해가 생기기도 하지만 가족은 농인에게 있어서 지지의 근원으로 인식되고 있	
	서로의 등을 기 대여 힘이 되는 농인 선후배	시시되 농인 간의 유대		
의 식 의 변화	우물 밖으로 나 와 나를(농인) 다시 봄	깨우침과 희망		농인은 자신과 같은 농인이나 다르게 살고 있는 농인을 통해 인식이 변화되는 기회를 만난다. 그리고 청인들을 통해 겪었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도전의식도 도전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농인의 의식이 변화 되는
	변화와 성장을 다짐하니 희망이 생김.		것을 볼 수 있으며 새로운 자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스스로 변화되는 것,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 타인을 위해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내적변화는 삶의 희망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3. 통합적 진술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삶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본질적 주제는 소통의 한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좌절과 혼란, 그리고 고립과 단절이었다. 이들은 영유아기에 질병과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청각을 상실 한다. 따라서 생의 초기과정부터 시작하는 상호 작용이 제한되기 시작한다.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농인의 특성상 언어를 통한 상 호작용이 불가능하지만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언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을 하 고 청인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농인이지만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해야 한 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괴리는 청각장애 대학생들에게 생의 초기과 정에서부터 자신들의 듣지 못함에 대한 혼란과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한다. 답답 함을 해소 할 수 없는 무력감은 가족과 형제 친척과 주의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존재가 은폐되고 거부되며, 부정되는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목격하고 극도의 절망 가운데 고립된 방황 속에 자신을 은둔시킨다. 그러나 삶의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학교생활에서 이들은 예상치 못한 인간관계의 갈등과 상처를 경험한다. 수모와학대, 그리고 누명을 쓰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복수심을 느끼지만 이 역시 무력하게 눌러버려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으로 체화하고 있다. 막다른 절망과 무기력함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의 남은 탄력성을 활용하여 탈출을 시도 한다. 이러한 시도의 근원에는 부모와 가족의 지지가 있다. 그리고 농인 선후배간의 유대를 경험하면서 이들을 통해 모델링을 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의식의 변화를 수반하고 생활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다짐하는 의지를 담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각장에 대학생들의 삶의 경험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적 접근을 시도하여 7명의 청각장에 대학생 참여자로부터 15가지 주제와 7개의 기본 구조를 발견 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각장에 대학생의 삶의 경험에 대한 통합적 진술을 구성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새롭고 의미 있는 사회복지 접근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 하였다.

첫째, 가족복지 차원에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기획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청인 부모와 농인 자녀 사이에 깊이 있는 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연구에서 확인 하였다. 부모 자녀와 같이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조차 하고 싶은 얘기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은 농인은 물론 가족 구성원에게도 해결 되어야 할 욕구이다. 수화 교육과 통역과 같은 언어적 서비스와 가족 관계에 대한 개입, 부모 교육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체계를 확보해야 하겠다. 특히 장애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과 태도의 개선을 위해 부모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었다. 청인 부모의 수화에 대한 이해와 태도 개선을 위해 개입이 필요함도 확인 하였다. 아동기 언어발달이 아동의 지적 영역 발달과 정서 함양, 자기 정체감 형성에 결정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 할 때 부모의 수화 습득과 사용, 그리고 태도는 농인의 자아 정체성과 삼의 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청인 부모들이 수화에 대해 높은 인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임을 확인 한 것이다.

둘째, 교육복지 및 학교 사회사업 차원에서 현재 농인에게 제공되는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통합 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농인학교에서 조차 교사들의 수화 사용 능력은 낮은 수준으로 교사의 입 모양을 보고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농인의 교육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결국 의무교육과정에서 조차 교육의 기본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함을

확인 하여 강조 한다. 교육 현장인 학교 수업에서 조차 수업에 필요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농인의 지적 능력 발달과 기본 학습 능력 발달, 성취를 가로 막는 결정적인 저해 요인이다. 교육대학과 사범 대학의 교과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 져야하고, 특수교육 교과 과정과 특수 교사의 자격 내용이 보완되어야 하겠다. 동시에 교사 연수 과정에도 통합교육과 소수자를 배려하는 인권교육 내용과, 이중 문화적 관점에서 통합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기능적인 통합 교육의 토대를 강화해야 하겠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농인들 역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대학의 제도와 문화는 자율성과 개별성이 존중되는 청인 중심의 문화가 견고하여 청각장에 대학생들의 혼란과 방황은 반복되고 있었다. 더욱이 졸업 후 진로와 결혼에 대한 두려움은 미래의 삶을 불안하게 하여 현실의 고민이 가중되고 있음도 관찰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근거하여 대학에서 통합교육의 모델을 제안 할 수 있어야 하겠다. 특히 사회복지 학에서는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구체적인 실행 모델을 제안 하는 선구적 역할을 담당 하는 것에 대한 함의를 마련해야 한다. 교과 과정 안에 수화 교육을 전공 선택 과목에 포함하거나, 일반 학생과 농인의 지지체계 마련, 선후배 간의 멘토링 등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 할 필요가 있겠다. 무엇보다도 수화를 공통의 언어로 받아들여 영어로말하는 수업처럼 수화로 말하는 수업 방안 등에 대해 연구 되어야 하겠다. 좀 더구체적으로 체계화된 실용 연구는 후속 연구에서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은, 2004. "청각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연구"「동서정 신과학」 7(1) 한국동서정신과학회: 167-178
- 권순우, 2004, "청각장애 대학생의 경험에 기초한 독해력 및 문장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전략 탐색"「언어치료연구」 14(1), 한국언어치료학회: 1-21
- 김경진, 2004. "청각장애 대학생의 문해 실태연구"「언어치료연구」 13(4) . 한국 언어치료학회: 23-39
- 김병하, 2001. "청각장애 학생의 수화습득에 대한 질적 연구" 「언어 치료연구」 10(2) 한국언어치료학회: 1-16
- 김승국 외 4인 공저, 1998. 『청각장애 아동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배둘련, 2001. "청각장애 학생과 교사 및 부모의 수화에 대한 태도 연구" 「특수아 동교육연구」 4(1). 한국특수아동학회: 141-161
- 송혜경, 2006 "청각장애 학생의 의사소통양식 유형에따른 격조사 사용비교" 「특수 교육 재활과학연구」45(4). 대구대학교: 325-350
- 아베야스시, 2004. "농민의 언어적 권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 「언어 치료연구」

- 13(1) 한국언어치료학회: 63-78
- 우장석, 1997, "우리나라 청각장애 학교에서 의사소통 방법 분석"「교육총론」 9(1). 전주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113-135
- 이광열, 2006 "청각장애 학생의 인지 과정을 설명하는 변인연구"「특수교육 재활과 학연구」45 (3). 대구대학교:129-150
- 이정민, 2002 "청각장애 학생과 건청학생의 행동특성비교" 「특수아동교육연구」 4(2). 한국특수아동학회: 155-177
- 임동규, 1995, "청각장애 통합교육의 실태와문제점" 「특수교육연구」 23(1). 국립 특수교육원: 123-142
- 최성규 편, 1997. 『청각장애아의 심리』,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최상배· 안성우 공저, 2003. 『한국 수어의 이론』, 서울: 서현사.
- 한옥희, 1992, "청각장애에 의한 언어장애" 「새국어생활」 2(3).국립국어연구원 :143-156
- Brueggemann B. J. 1999. "Lend Me Your Ear: Rhetorical of Deafness" Wash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34-37
- Fisher, L. C. 2000 "Cultural Identity Developement and Self Concept of Adult who are Deaf : A Comparative Analysis, Arizona State University Press: 34-37
- Goffman, E. 1963.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i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29-41.
- Kyle, J. G. 1990. "Research with Deaf People : issues and Conflicts", Disability, Handicap & Society 5(1): 65-75
- Leigh, I. W. 1998. "Deaf/Hearing Cultural IdentityParadigms: Modification of the Deaf Idenbity
- Marschark, M. 1993,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Deaf Children』 (청음회 관 역), 한국 청각 장애인 복지회.
- Migualo, A., Nick F. Coady, 2001. "The Experience of Deafened Adults" Health & Socialwork 26(4): 269-276
- Salles, P, Heloisa L. A., Bert. 2005. "The Use of Qualitative Reasoning Models of Intreactions between Populations to support Causal Reasoning of Deaf Student", Artifical Intelligence in Education, 579–586
- Sharon M. R. 1993. "Abuse and Deaf Children: Some Factors to Consider" Child Abuse Review. 2: 166-173
- Sonya, N. and Clark. 1998. "Deaf Patients and General Practioners: A qualitive study of communication" Deaf Worlds, Issue. 1(14): 24-32

- ----,2004."Qualitative Reasoning in Education of Deaf Student: Scientific Education and Acquisition of Portuguese as a Second Language" 867-869
- Young, A. M. 1999. "Hearing Parent's Adjustment to a deaf child the impact of a Cultural Linguistic Model of deafness"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13(2): 156–176

- 51 -
- 51 –

서비스 기관간의 효과적인 연계방안 (여성긴급전화1366상담을 통해서 본 여성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이정순(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 상담실장)

I. 시작하는 말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여성 인권 침해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은 가족해체의 주범임과 동시에, 비행청소년을 양산하고, 강력 범죄를 유발하며, 개인의 삶을 어렵게 하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기도 한다.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난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된 이후 가정폭력이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향상시키는 데에 높은 성과를 이루었다.

가정폭력특례법의 법적 근거는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피해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상담소의 공공기관 개입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것에 환영할 만했으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된 후부터는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와 행위자 치료 및 법률 지원 등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가 본격화 되었으며 다양한 사회적 연계망이 구축되기에 이르렀으며 법제정 이전에 비해 가정폭력 발생률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연구 보고한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높은 가정폭력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가정폭력에 특히 취약한 집단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양적 성장 및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홍보부족, 지역적 편중 등의 문제로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체계의 통합 대응의 부재로 행위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변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여 가정폭력의 재발이 빈번한 실정이다. 가정폭력은 가족 내 폭력이라는 특성상 도움요청이 쉽지 않은 사회문제이고 그 대응에 있어서도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다.

폭력피해여성 지원서비스는 그동안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 전문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원스톱지원센터, 사법체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통하여 양적으로 성장하고 발전되어 왔으나, 여성폭력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적인 의식변화와 함께 지역사회의 역할, 폭력에 대한 예방활동 등 광범위한 사회적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폭력피해여성이 위기상황으로부터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벗어나서 자립자활을 도모하기까지는 서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전라북도내에 설치된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 상담 사례를 통해 폭력피해여성의 인권을 위한 최적의 지원서비스 개편 방안과 서비스 기관간의 효과적 연계방안 필요하다.

Ⅱ.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의 운영체계와 주요 업무

1.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의 운영체계

「여성긴급전화1366센터」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6에 근거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없는 특수전화『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자 하는 목적을 두고 One-Stop 서비스 제공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고 여성폭력 관련상담소, 보호시설 및 112, 119 등 관련기관 연계서비스제공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삼성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피해여성 112, 119, 경찰 일시보호시설 • 긴급이송 및 * 긴급보호 = 폭력해위 저지와 수사 법률 기관 병원 비률적 보호 및 응급치료 및 독력행위자 법적증거 확보 보호처분 상담소 ■가정폭력, 성폭력 전문상담

<그림 1>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체계

2.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의 주요 업무

전화권역(시·군)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여성, 등 폭력이나 위기상황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여성 및 동반자에 대하여 1차 긴급상담, 서비스연 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와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1) 전문상담소(상담원)에 연계가 곤란한 야간·휴일 등 특정 시간대의 1차 긴급 상담 후 익일 오전 전문상담소로 연계조치 한다.
- 2)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은 『이주여성긴급전화1577-1366』을 적극 활용한다.
- 3) 상담의뢰인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적절한 위기개입이나 긴급한 구조를 위해 112, 119등 연계시스템 구축 및 관련 상담·의료·법률규조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한다.
- 4)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현장출동을 통한 긴급피난 현장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
- 5)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일시보호를 위해 긴급피난처를 운영 중이며 1-3일까지 보호한다.

Ⅲ.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의 상담 현황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에서 실시한 2010년도 상담 실적은 <표 1>과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표 1〉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의 상담 실적1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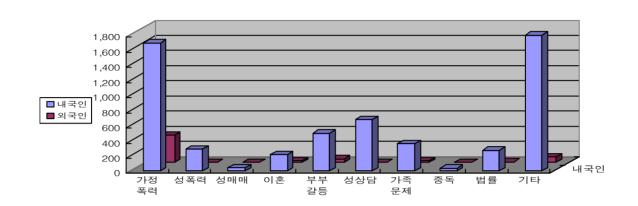
구	총계	가정	성폭	성매	이혼	부부	성상	가족	중독	법률	기타
분		폭력	력	미		갈등	담	문제			
내	5,881	1,691	286	45	216	498	681	360	38	274	1,792
국	(100)	(28.8)	(4.9)	(0.8)	(3.7)	(8.5)	(11.6)	(6.12)	(0.6)	(4.7)	(30.5)
인	(91.5)	(82.2)	(98.3)	(97.8)	(90.8)	(91.0)	(100)	(94.0)	(100)	(97.2)	(95.9)
외	548	364	5	1	22	49	0	23	0	8	76
국	(100)	(66.4)	(0.9)	(0.2)	(4.0)	(8.9)	(0.0)	(4.2)	(0.0)	(1.5)	(13.9)
인	(8.5)	(17.8)	(1.7)	(2.2)	(9.2)	(9.0)	(0.0)	(6.0)	(0.0)	(2.8)	(4.1)
전	6,429	2,055(291	46	238	547	681	383	38	282	1,868
-11	(100)	32.0)	(4.5)	(0.7)	(3.7)	(8.5)	(10.6)	(6.0)	(0.6)	(4.4)	(29.0)
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출처: 2010년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 상담통계 내부자료

〈표 1〉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의 총 상담건수는 6,429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체상담 건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상담은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에 대해자세히 설명하면 내·외국인의 전체 상담 건수의 32%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내국인에 대한 가정폭력은 내국인 전체 상담 건수의 28.8%를 차지하고, 외국인에 대한 가정폭력은 외국인의 전체 상담 건수의 66.4%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외국인의 경우 가정폭력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상담사례이며, 내국인의 경우에도 기타(30.5%)를 제외하면 전체 상담 건수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요한 상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누어 보면 외국인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17.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의 상담 실적2



전체 6.429건 내국인 5.881건, 외국인 548건

자료 출처: 2010년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 상담통계 내부자료 기초

<그림 2>는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에서 실시한 2010년도의 상담 실적을 그래프로 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가정폭력 피해유형 현황

유형	건수	퍼센트
신체적 학대	1,399	68.1
정서적 학대	570	27.7
경제적 학대	57	2.8
성적 학대	9	0.4
기타	20	1.0
계	2,055	100.0

자료출처: 2010년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 상담통계 내부자료

< 표 2>에서 가정폭력의 피해유형을 보면 신체적학대가 1,399건(68.1%)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적 학대 570건(27.7%), 경제적 학대 57건(2.8%), 기타 20건(1.0%), 성적 학대 9건(0.4%)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3>에서 <표 7>까지의 자료는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도에 실시한 가족폭력실태조사」프로젝트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이 자료를 인용한 것은 본인이

근무하는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에는 이와 같은 자료가 생산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 3〉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에게 나타난 신체적 증상

단위: %(명)

구분	코 피	고막이 터지거나 이가 부러짐	눈의 상처, 멍	가벼운 상처, 멍드는 정도의 타박상	팔, 다리가 부러지는 골절상	기 타	계
신체적 폭력 피해자	8.5	3.2	16.5	62.6	2.6	6.6	100.0(266)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피해자 중 신체적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사례만 분석함

-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 3) 중복응답 결과임
- 4)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자료 출처: 여성가족부(2010). 「가정폭력실태조사」, p.131

〈표 3〉에서 신체적 폭력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가벼운 상처나 멍드는 정도의 타박상이 62.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눈의 상처, 눈 주위의 멍 16.5%, 코 피 8.5%, 고막파열이나 이가 부러짐 3.2%, 팔, 다리가 부러지는 골절상 2.6%의 순 으로 나타났다.

단위: %(명)

구분	없음	있음	계
전체	69.9	30.1	100.0(168)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피해자 중 신체적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사례만 분석함

-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자료 출처: 여성가족부(2010). 「가정폭력실태조사」, P.132

<표 4>에서 신체적 폭력을 당한 아내들의 신체적 증상에 대한 의료처치 경험은 30.1%로 매우 낮았다. 부부폭력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여성 3명 중 1명만이 피해에 대해 의료처치를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5〉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공포감 경험

단위: %(명)

구분	없음	있음	계
전체	30.4	69.6	100.0(383)

주: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피해자만 대상으로 분석함

-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자료 출처: 여성가족부(2010). 「가정폭력실태조사」, p.132

<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할 때 69.6%는 공포 감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30.4%는 공포감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아내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 6>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에게 나타난 정신적 증상

단위: %(명)

구분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매사에 불안, 우울	폭력으로 죽을 것 같은 생각	폭력행위 자에 대한 적대감이 나 분노	계속 그 생각이 난다	축고 싶다는 생각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	기타	계
전체	27.7	12.4	4.9	24.3	13.6	10.8	4.9	1.4	100.0 (529)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피해자 중 신체적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사례만 분석함

-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 3) 중복응답 결과임
- 4)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자료 출처: 여성가족부(2010). 「가정폭력실태조사」, p.133

〈표 6〉에서와 같이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아내들 가운데 정신적 피해가 수반된 경우는 절반을 상회하였다. 정신적 증상으로는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27.7%, 폭력 행위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감정 24.3%, 계속적으로 폭력 당시의 경험이 떠오르는 경험 13.6%, 매사에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 12.4%, 죽고 싶다는 생각 10.8%, 폭력으로 죽을 것 같다는 생각 4.9%, 사람만나는 것을 기피 4.9%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명)

구분	없음	있음	계
전체	90.6	9.4	100.0(231)

주 : 1)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피해자 중 신체적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사례만 분석함

-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 3)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자료 출처: 여성가족부(2010). 「가정폭력실태조사」, p.133

< 표 7>에 의하면 신체적 폭력을 당한 아내들의 정신적 증상에 대한 의료처치 경험은 9.4%로 극히 낮았다. 즉, 부부폭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아내 10명 중 1명만이 정신적 증상에 대해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가정폭력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들에게 초기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예후가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초기 개입은 매우 중요하다. 내담자의 피해 상태에 따라 관련 기관에 연계하는 초기 개입은 신속하게 이루어 져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원활한 연계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처럼 기관과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소개하고 폭력피해여성에 효과적인 연계 방법을 제안하여 여성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자하다.

Ⅳ. 폭력피해여성에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

아래의 사례는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 상담 사례 중 여성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것으로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 사례를 몇 개 예시한 것이다. 그러나 상담에서 나온 사례를 비밀보장원칙에 의거하여 신상정보 및 상담내용을 약간 각색하여 사례를 작성하였다.

1. 사례1 (피해자중심의 원스톱 기관연계 사례)

남편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다. 그런데 그 땅을 땅주인이 팔아버려 더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화가 나서 술을 마셨다. 마신 술이 성에 차지않았는지 술을 사 가지고 집에 들어와 계속 마셨다. 그러다 TV를 보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걸었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대답을 하지 못했더니 'TV에 빠져있다'고 하며 리모컨을 던지고 상을 던져서 이마에 맞았다. 난 피

가 나는 줄도 모르고 반찬 국물이 묻은 줄 알고 엎어진 상을 치우는데 아빠의 큰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아이가 내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방으로 들어가 여성긴급전화1366으로 전화를 한 것 같다. 아이들과 함께 살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이 절대 협의이혼은 해주지 않을 것이다. 친정가족들도 너무 괴롭혀서 친정에 들어가 살 수도 없으므로 남편이방 얻을 돈만 주면 이혼하고 살고 싶다.

* 기관의 사례개입과 경과사항

피해자 위기상황 초기상담(주소 등 연락처 확인) - 경찰출동요청(주소안내 및 피해자 긴급구조요청) - 긴급보호(심리적 안정 및 생필품 지급) - 응급치료(정형외과 응급치료와 물리치료) - 기관동행연계(재판이혼을 위한 정보제공) - 피해자보호시설연계로 인한 (장기적 보호요청).

2. 사례2 (기관연계 사례)

* 월 *일 새벽 2시 경 우리 기관에 **지구대로부터 전화가 왔다. 전화 내용 인즉 가정폭력신고가 들어와 **지구대 경찰이 피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 를 긴급 구조하여 현재 **지구대에서 보호 중인 상황이었다. **지구대 경찰 의 말에 의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무서워하여 집으로 들어 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군지역에는 보호시설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지구대에서는 피 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를 긴급보호시설까지 동행해야 하나 지구대 내 인원 이 부족하여 현 근무인원으로는 관내구역을 벗어날 수 없어 긴급피난처까지 동행이 어렵다고 우리 기관에 전화를 하였다. **지구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피해자 상담과 보호가 가능한지를 우리 기관에게 알려 달라고 요청한 사례이 다.

* 기관의 사례개입과 경과사항

행정구역상 상담소가 존재하는 지역이지만 시간상 실제 연계가 어려운 지역이므로 지구대에서 일반병원 입원실에 일시보호를 요청한 후 다음 날 지역상담실의 도움으로 현장상담원이 출동하여 교차지점에서 만나 피해자를 연계 받아 긴급피난처에 입소시켰다.

3. 사례3 (정신 질환자와 청소년동반자에 대한 연계 사례)

결혼 초부터 남편의 폭력이 심해 자살까지 생각한 후 심한 우울증상이 나타났으나 병원진단은 받지 않았다. 이혼도 생각했으나 폭력 아빠 밑에서 자녀들이 자라는 것이 두려워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매를 맞으면서도 그대로 살아왔다. 자녀들이 사춘기인 중·고생이 되자 아빠의 폭력으로부터 어떤 대응도 하지 않는 엄마의 무력감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함께 도망 나갈 것을 강력하게 고집하여 고등학생인 아들과 중학생인 딸이 함께 집을 나왔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으니 우리 3명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내가 없으면 '엄마를 찾아내라'며 아이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하기에 아이들과 함께 행동해야 하며 내가 지금껏 남편의 폭력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은 오직 아이들 때문이다. 라고 하며 상담을 요청한 사례이다.

* 기관의 사례개입과 경과사항

고등학생인 아들이 지방학교의 특성 상 비밀 전학이 어려워 타 지역에서 운영 중인 10세 이상 남자동반자 보호가 가능한 시설입소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아들은 엄마와 동생만이라도 보호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집으로 귀가했다. 그러나 다음날피해자인 엄마는 가해자인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받을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면서 피해자인 엄마가 대신 맞아야 한다며 자진 퇴소함으로써 종결된 사례이다.

4. 사례4 (사법체계의 초기개입 사례)

아빠는 내가 어릴 때부터 기분이 나쁘면 엄마를 때리곤 하였다. 밤 11시인 지금도 아빠는 엄마를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사정없이 발로 차더니 아빠의 허리벨트를 풀어 온몸을 때리고 있다. 아빠에게 매를 맞는 엄마를 제지하려고하자 아빠는 나까지 발로 찼다. 엄마는 나에게 도망가라고 손짓을 하여 도망 나와 동네에서 전화를 하는 것이다. 내가 도망 나오려는데 아빠가또 다시 경찰에 신고하면 나도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예전에도 경찰에 몇 번 신고했지만 경찰아저씨는 아빠의 말만 듣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돌아갔다. 현장출동 시 '경찰아저씨는 아빠의 말을 절대로 듣지 말고 엄마를 구해 달라'며 긴급구조 및 보호를 요청한 사례이다.

* 기관의 사례개입과 경과사항

수차례의 가정폭력 신고를 했으나 경찰의 방문 후 폭력상황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변하는 가해자의 말을 믿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긴

급구조요청 상담을 받은 1366상담원이 112를 통해 어떤 경우일지라도 피해여성을 구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112출동요청을 받은 지구대에서 구조하여 거주지 보호시설로 자녀와 함께 동반 입소 조치하였다.

V. 피해자지원서비스 기관간의 효과적 연계방안

여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도내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피해자 지원서비스 기관과 더불어 여성폭력 전반에 관한 현재 상황에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실천할 때 여성폭력 근절과 예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성인권보호에 보다 높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에서도 1차 상담개입을 통해 미흡했던 부분들이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연계 기능 개선방향

1) 원스톱 기관연계를 위한 개선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에서는 1차 초기상담 및 위기상황에 처한 피해자와 관련하여 현장방문상담, 경찰출동요청을 판단해야 한다. 전문상담소 및 보호시설연계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위치와 관련하여 해당 시·군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확보 후 관련기관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나 상담소 및 시설의 지역편중과 전문상담원 인력부족으로 기관연계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연계 가능한 기관의 확충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2) 긴급피난처 기능 강화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에서는 긴급피난처를 제공하고 있으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피해발생 초기단계에 긴급구조활동을 위해 현장출동상담제도가 실시되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는 되었으나 원거리에 위치한 피해자의 경우 여성상담원 2인 1조로 현장 출동하여 상담 및 긴급구조하기에는 또 다른 위험 부담이 따르고 있으므로 원거리 및 야간시의 경우 사법체계나 사회복지기관 등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긴급구조 및보호가 요구된다.

3) 정신질환자, 청소년동반자 등에 대한 연계활성화

여성폭력 피해 후유증으로 중증 우울증 환자나 정신질환을 겪는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확충이나 기존 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원만한 연계가 이루어져야한다.

10세 이상의 남아를 동반한 피해여성은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기에 기존 보호

시설에 10세 이상의 남아를 동반한 피해여성이 입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4) 사법체계의 초기개입 중요성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이후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경찰의 초기 대응 미흡이 피해를 키운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경찰이 위험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실무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

참고문헌

여성가족부(2010).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정춘숙(2008). "여성인권과 가정폭력방지법시행10년"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0년 의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 자료> 전라북도, 아동·여성보호전라북도연대. 이문자 외(2008). 「여성주의적 가정폭력 쉼터운영의 실제」 서울: 한울아카데미. 김은경 외(2009). "가정폭력 -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서울: 한울아카데미. 변화순(2009). "폭력피해여성 지원서비스의 효과적 통합·연계 방안 연구", 여성부.

- 63 -	
--------	--

전북지역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실태 및 정책제언

송경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센터장)

1. 들어가며

2010년 7월초부터 2011년 3월까지 포항의 유흥업소 여성 7명이 연속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살의 원인은 갈수록 늘어나는 선불금빚과 사채빚, 업주로부터 받는 모욕과 폭력, 성매매강요 등이었다. 성산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여성들에 대한 일상화된 착취현실이 극명하게 증명된 것이다. 죽음으로밖에 말할 수 없었던 여성들의 인권현실 앞에서 사건관련 대책위5)는 포항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권력관계와는 무관한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문제이며, 폭력피해자인 여성은 '맞을 짓을 했다'거나 '성폭력 당할 짓을 한'즉 그 폭력을 유발시킨 원인 제공자로 간주되어 왔다. 성매매 문제에 관한 인식 역시 남성들의 참을 수 없는 성적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악'으로 사적인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들이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성판매를 선택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성차별적인 통념에 지배당해왔다.이 뿌리깊은 통념은 '윤락행위등방지법'을 통해 여성을 '윤락행위자'로 처벌하고,동시에 '윤락녀'라는 사회적 낙인을 부여하는 현실로 그 위력을 발휘해왔다.

실상 성매매 문제는 매우 정치적이고 복잡한 구조와 맥락 안에 존재한다. 성적이중규범에 의한 가부장적 권력, 즉 성구매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 받은 남성과성판매 당하는 위치에 놓인 여성간의 권력문제이며 동시에 사회적으로 자원이 취약한 여성들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소유·통제하고 폭력적 방식으로 인신매매하며 이윤을 착취하는 성산업 자본의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실을 묵인 또는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관리해온 국가권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2000년 9월, 2002년 1월 연이어 발생한 군산시 대명동과 개복동의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는 성매매 업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적이고 착취적인현실과 성매매구조의 복잡한 정치성을 확연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일제시대에형성되어 화재당시까지 성매매 집결지로 존재해온 대명동과 개복동의 업소들이 당시 현행법상으로도 불법인 영업을 상가 도로변 한복판에서 버젓이 지속할 수 있게해 준 국가와 지자체의 묵인 방조, 경찰과 업주의 유착비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수단으로 성매매 집결지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지역사회 담론은 성노예와 같

^{5) &#}x27;포항 유흥업소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3월 30일 64개의 여성/시민 단체가 참가하여 발 족하였으며 사건 관련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며 '공동행동'과 '긴급토론회'등을 열었고 유흥업소 여성들을 위한 핫라인 전화를 개설하여 지원하는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현실을 다 함께 묵인하고 방조해 온 것이다.

쇠창살과 잠금장치를 통해 여성들이 24시간 감시감금 상황에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유가족들이 현장에서 확보해온 희생자의 장부와 일기장의 내용을 통해 여성들이 업소를 전전하면서 늘어난 선불금 빚에 직업소개소에 의해 인신매매되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그렇게 벌어들인 수입은 대부분 숙식비와 각종벌금, 고리의 선불금 빚 이자 등으로 업주에게 다시 빼앗기고,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홀복, 청소비, 세탁비, 미장원비 등의 지출로 인해 일을 할수록 오히려 빚이 쌓이는 악순환적 구조 안에 묶여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 업주가 정기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상납금을 바쳐왔고 경찰 간부들에게는 성상납까지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성인권운동 단체들이 참가한 대책위의 활동에 의해 밝혀진 국가와 지자체의 묵인 방조, 관리 감독 소홀, 업주와 경찰 간의 유착비리와 여성들에게 강요된 참혹한 성노예적 현실은 언론을 통해 성매매 구조 안에 갇힌 여성들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하였다.

이를 계기로 성매매알선업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알선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보호하고 '구조부터 자활까지'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성매매방지법6)이 2004년 3월 제정되어 같은해 9월부터 집행되었다. 성매매방지법 7년을 경과하면서 성과와 한계는 분명하다. 즉 법이 할 수 있는것과 할 수 없는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법률,의료,주거,자활지원의 확대7)는 여성들의 성매매하지 않을 권리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성매매 아닌 삶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꿈꿀 수 있는 비빌언덕이 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업소 안에 있는 여성들에게도 성매매방지법은 업주에 대하여 협상력을 높여주고 있다. 이것이성매매방지법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 집행력의 약화와 성매매에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남성 중심적 성문화의 변화는 여전한 과제로 존재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2001년 9월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⁸⁾를 개소하여 2002년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업소 실태를 파악하고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같은해 6월부터 전주시 서노송동에 위치한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선미촌 근처에 현장상담소를 개소하여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현장방문상담과 긴급구조 및 법적지원을 진행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지역사회내 반성매매 활동과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법적지원 및 통합적인 자활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업소현장을 찾아가는 현장방문상담을 통하여 변화되고 있는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⁶⁾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처벌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안'(보호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법'은 성매매여성들의 '구조부터 자활까지의 탈성매매 자활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7) 2010}년 현재, 상담소 29개소, 쉼터(청소년,일반) 43개소, 그룹홈 10개소, 자활지원센터 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8) 2001}년 9월 대명동화재참사 1주기때에 사)전북여성단체연합 부설로 개소하였고 2005년 사)전북여성인권지원 센터로 독립하였다. 부설기관으로 현장상담센터,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등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2002년 전북지역 성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7개 시군에 전통형 성매매 집결지9 와 산업형 성매매 집결지10)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중 전주와 군산, 익산 등 3개시에 전통형 집결지가 66%, 산업형 집결지가 80.6%가 집중되어 있다. 전주 아중리와 중화산동 지역, 익산 남부지역, 군산 나운동 지역이 대표적인 산업형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이다. 2008년 현장방문상담 등을 통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주 아중리에 182개 업소, 중화산동에 168개 업소, 익산 남부지역에 187개 업소, 군산 나운동에 27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본 내용에서는 전주 서노송동 유리방 집결지인 선미촌과 익산 유흥업소 집결지인 남부지역, 그리고 군산 미군 기지촌인 아메리카타운의 실태를 중심으로 성매매 여 성들의 인권현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전주시 서노송동 유리방 집결지 선미촌의 인권실태 및 정책제언

2-1. 선미촌 업소 현황

<표 1> 선미촌 업소수 및 여성수 현황11)

년/월	04/ 9	05/12	06/12	07/4	08/12	09/12	10/12
업소수	48	41	43	43	46	28	44
여성수	152	94	117	105	101	80	93

전주시 서노송동에 유리방 형태로 집결되어 있는 선미촌은 정화위원회라는 자체 업주 조직 을 형성하고 있다. 업소마다 1~2명, 7~10명의 여성이 있고 업소에서 기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인 2002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영업 업소수가 80여개에 달했고 여성수도 300여명에 달했다. 이후 축소되어 2010년 한해동안 20여회의 현장방문상담을 통해 파악된 업소수는 40여개였으며 여성수는 90여명이었다.

선미촌 인근에는 대형 할인마트인 홈플러스가 있고 전주고등학교와 전주시청이 자리하고 있다. 선미촌은 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2000년, 2002년 발생한 군산 성매매업소 집결지 화재참사로 전주시에 의해 숙박업 등록이 취소되었고 이후 행정상 주택가로 되어 있다.

⁹⁾ 유리방, 맥주양주 방석집, 여인숙, 기지촌 등의 형태로 영업한다.

¹⁰⁾ 단란주점, 유흥주점 , 음악홀, 이용원, 키스방, 스포츠마사지, 안마시술소, 티켓다방, 모텔 등의 형태로 영업한다.

¹¹⁾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는 2002년 6월부터 월 1~2회 선미촌을 현장방문 상담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집결지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는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파악된 수치이다.

2-2. 선미촌 여성의 인권 침해 현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집결지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듯 했다. 대부분 티켓다방, 단란·유흥주점 등을 거쳐 선불금이 높아진 여성들이 집결지로 오게 되지만 업주들의 영업방식이 많이 바뀌어 고액의 선불금을 직접 주지 않기 때문에 선불금 빚이 500만원~1000만원으로 낮아졌고 이 또한 업주의 소개로 업주이외의 제3자로부터 사채형식으로 받기도 한다. 또한 올비12)를 제외한 각종 벌금이 일부 사라졌으며 정기적인 외출과 휴가도 생겨났고, 원룸에 거주하며 출퇴근 하는 여성도 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성매매방지법의 영향력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현장의 여성에게 일종의 협상력이 생긴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실제 현장의 여성들도 법이 생겨서 외출이 자유로우니 좋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집결지가 가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집결지내의 문제는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많다. 현장지원 활동으로 파악한 여전히 남아 있는 집결지의 인권 침해 현실은 다음과 같다.

1) 업주의 성매매 알선 및 강요

선미촌 집결지 업주는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성매매 불법영업을 한다. 그러나 저녁 7시에서 다음날 아침 7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낮이라도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라도 구매자가 돈을 지불하면 성매매를 알선한다. 성매매알선의 방식도 다양해 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구매자를 확보하여 구매자가 원하는 장소로 여성을 보낸다. 성매매집결지에 직접 오지 않아도 성구매가 가능한 상황13)이 발생하는 것이다.

업주 대부분은 영업 시간동안 업소 대기실에 있는 쇼파에 앉아서 성구매 상황을 지켜보면서 혹여나 차량이나 구매자가 옆집으로 들어가면 "왜 붙잡지 않느냐." "옆집 00는 얼마 찍었다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심리적인 부담을 준다고 한다. 또구매자를 호객하며 직접 알선하기도 하는데 진상(술취한 손님 등 여성에게 폭력적인 구매자를 일컬음)이 찾아와도, 여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손님을 받도록 한다.

업주들은 여성이 외출을 해 있을 때면 수시로 전화를 한다. 또한 휴가¹⁴⁾에서 돌아오는 날이면 전화기가 불통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여성이 몸이 아파서 쉬려고하면 '그럼 영업은 누가 하냐! 00이 쉬니까 너밖에 일할 사람이 없는데'라며 일을하도록 강요한다. 이런 때에 여성은 '(업주가)나를 돈 버는 기계로 본다.'는 생각이든다고 한다. 임신 중절 수술을 한 당일 일을 하도록 강요하며, 몸조리를 위해서 일을 쉬려면 50~100만원이 되는 올비를 내고 쉬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¹²⁾ 일을 하지 않고 쉴 때 내는 결근 벌금

¹³⁾ 이러한 경우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시기에도 발생했다. 당시 선미촌 업소는 불을 끄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는 업주의 집이나 여관 등 선미촌 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한다.

¹⁴⁾ 업주와의 합의에 의해 쉬는 날을 말한다. 업소와 여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일주일에 1일을 쉬기도 하고. 한 달 계산을 마치고 3일정도 쉬기도 한다. 휴가 날에는 벌금이 따로 없으나, 정해진 날 이외에 일을 쉬려면 올비를 내고 쉬어야 한다. 현장 여성들은 아프거나 정말 일하기가 싫을 때 올비를 내고 쉰다.

2) 업소의 선불금빚, 일수 등 사채빚, 화장품 값 등 가외빚 으로 인한 이중 삼중의 채무

여성이 성산업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선불금을 포함한 빚 문제이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선불금을 주고받는 형태가 크게 바뀌었는데, 성매매 불법 영업을 알선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불금을 업주가 아닌 제 3자에 의해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업주들이 선불금 채권무효 조항의 법적용에서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방식15)으로 덕분에 여성들은 복잡해진 빛의 올가미에 갇히게된다.

선불금빚은 성산업의 착취적 구조 때문에 쉽게 갚을 수 없는 불법채권이다. 여성들은 선미촌집결지에 오게 되면 성매매영업을 위해 방을 꾸미는데 침구나 가구 등을 구입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홀복·화장품·콘돔 및 음료수 등을 구입하여야 하며, 냉·난방료·전기료·수도세 등을 내야하며¹⁶⁾ 업주의 경조사에 드는 비용, 심지어 휴가를 갈 때에 업주에게 용돈을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영업비용을위해 업주에게 지출¹⁷⁾을 받아야 한다. 지출은 주단위로 30만원 정도 받는데, 요즘에는 10만원을 주기도하고 업주가 지출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러면 여성들은 사채나 일수를 또 써야 한다.

특히 일수업자나 사채업자로부터 받은 선불금이나 지출에 대한 이자는 심하다. 예를 들어 선불금 1,000만원을 일수로 받는다면 이자를 포함한 1,300만원을 100일 동안 갚아야 한다. 100만원에 대한 사채는 선이자 20만원을 떼고 80만원을 받는데, 한 달 후에 갚을 때는 이자 20만원을 포함한 100만원을 갚아야 한다.

3) 심리적 감시와 물리적 감금의 현실

현장방문상담에서 만나는 여성들에게 외출을 자주하는 편이냐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그렇다고 한다. 대명동과 개복동에서의 화재참사로 인해 집결지 업소의 쇠창살은 없어졌고, 성매매방지법에 의해 업주들의 영업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드러나고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집결지 현장의 여성은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 착취의 구조에 있다. 선불금빚 등 각종채무를 떠안고 있는 여성의 심리적 무력감은 크게 존재 한다. 여성에게 영화를함께 보러가자고 권해도, 병원에 함께 가자고 권해도 "잠 잘 시간도 없는데 어딜...'이라며 말꼬리를 흐린다. 외부와 단절된 작은 방에서 짧은 휴식을 취한다. '선불금이 많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넘겨진다.'는 말은 현장여성들로부터 심심치 않게 듣는

¹⁵⁾ 성매매방지법 제10조에 의하면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하고 있으며,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같으므로 성매매를 알선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불금 채무는 무효다.

¹⁶⁾ 성매매방지법 전에는 선불금 액수에 따라 30~100만원의 방값을 냈지만, 요즘에는 방값을 따로 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신 20만원 가량을 공과금 명목으로 낸다. 업주는 영업을 위해서 여성을 고용하기만 하면 월세 말고는 드는 돈이 없다고 보면 된다. 업소마다 3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월세를 낸다고 한다.

¹⁷⁾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450만원을 지출 받았는데 이에 대한 이자를 1억원 가량 갚았다는 내용은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지출이자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다. 이 경우 계산을 볼 때 선불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각종 가외빚을 제하고 나니, 450만원의 원금을 갚을 돈이 남지 않아 돈을 갚을 때 까지 그에 대한 이자를 업주에게 주어야 했다고 한다.

말이다. CCTV를 설치해 놓고, 층간에는 번호키를 설치하고, 방문에는 자물쇠가 잠겨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영업시간 이외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업주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업소에서 벗어나기 위해 긴급구조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몸이 아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데, 선불금빚 때문에 나올 수 없으니 나를데리러 와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다. 또한 업소에 남아 있는 짐을 찾고 싶은데 혼자가기 두렵다며 지원을 요청하기도 한다. 현장에 있는 여성들은 업소가 단속이라도 돼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종종 하기도 한다. 집결지에서의심리적 물리적 감시와 감금은 여전히 잔존되고 있다.

4) 화재 발생 시 안전에 대한 문제

집결지에서의 화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선미촌 집결지는 화재에 안전할까? 전주시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 선화촌에 대해 관할 소방서는 정기적인 소방점검을 하고 있다. 전주 완산소방소의 점검자료에 의하면(2008년) 소화기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화재발생에 대한 안전문제인데, 소방당국은 선미촌에 대해서 화재발생시 인명피해우려가 높은 지역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100여명에 달하는 여성이 머무르고 있고, 수 백명의 성구매자가매일 드나드는 집결지 현장이 화재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생명을 보장할 수없는 위험한 곳'이라는 것이다.

5) 성구매자들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

선미촌의 성구매자는 미성년에서부터 노년까지 하루에도 수백명씩 선미촌을 방문한다. 성구매자들은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고르듯 현장의 여성을 위 아래로 훑어보고 구매한다. 구매자들이 현장의 여성에게 취하는 행동은 성적 대상화만이 아니다. 폭력적인 행동은 물론이고, 여성의 속옷이나 지갑 등 금품을 훔쳐가는 행태도 비일비재하다. 진상인 구매자가 재떨이로 여성의 머리를 쳐 혼절시키고 돈을 훔쳐 도망갔는데, 누구하나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 업주에게 돈을 주고 구매한 시간동안 현장의 여성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한다.

6) 성매매 업소 경험으로 인한 건강 문제

선미촌에서는 20cm이상의 통굽 신발을 신고 12시간 이상을 보낸다. 발이 퉁퉁 붓고 허리에 무리가 간다. 집결지 현장 여성의 건강권 침해는 상상의 범위를 초월한다고 할 수 있다. 밤과 낮이 뒤바뀐 생활, 불규칙한 생활습관, 다이어트 강요, 음주 및 흡연 등으로 인해 내과질환과 성병, 골반염, 질염과 같은 감염성 부인과 질환 등에 시달리고 있다.

7) 경찰 단속과정에서의 문제

선미촌 업주들은 경찰단속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이 단속하면 가장먼저 신속히 번호키를 조작하여 대기실 안쪽 손님을 받는 방으로들어가는 문을 잠근다. 구매자들은 업소 내에 마련된 비밀통로로 유유히 선미촌 업소를 빠져 나가도록 한다. 둘째, 경찰단속 시 영업의 증거가 되는 장부가 발견되지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의 여성들에게 장부를 쓰지 못하도록¹⁸⁾ 한다. 셋째, 여성들에게는 벌금¹⁹⁾ 나오면 내줄테니 걱정 말고 단속 되어 경찰서에 조사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한다. "선불금은 없다. 일 한지 3일 되었다. 오늘이 처음이다. 손님은 받지 않았다. 내가 돈 벌고 싶어서 온 것이다. 이제 집에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업주들의 대응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여성들이다. 집결지 현장에서 행해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여 피해자나 참고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성매매행위자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단속이 된 업소라 하더라도 성매매불법 영업을 재개하는 데는 어떠한 행정규제도 없다. 현 장의 여성이 경찰단속에서 본인의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것은 단속이 되 더라도 영업이 지속되는 선미촌의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단속이라도 돼서 업소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한 언니도 다시금 "단속 되도 다시 영업하던 데..."라고 했다.

2-3. 선미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1) 성매매를 알선 강요하며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업주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집결지는 해체되어야 한다.

집결지는 성매매에 대한 오해와 통념이 재생산되고 확인되는 상징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공간이다. '홍등가' '사창가'라고 일컬어지는 집결지의 풍경은 지나가는 남성들을 향해 호객하는 여성들의 이미지로만 부각된다. 여성들을 선불금 빚으로 묶어두고 성매매를 알선 강요하고 착취하는 업주들과 성구매자들은 비가시적 존재가 되고 마치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들이 성판매를 위해 호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 사회적 낙인을 지속시키는 근거가 된다.

선미촌 집결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이전과 다름없이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건물이 남아있는 것도 60여개가 넘으며 현재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곳도 40~50여 개가 된다. 경찰의 단속은 갈수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선미촌은 숙박업소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2002년 이후 전주시가 숙박업소 등록을 취소하여 현재는 주택 가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행정처분도 이루어질수 없다고 하는 행정적

¹⁸⁾ 장부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경제적 착취를 행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여성들은 장부를 쓰지 않으면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업주가 얼마 남았다 얼마 썼다고 하면 그러게 알도록 만드는것이다. 여성들은 업주를 믿고 있다.

¹⁹⁾ 업주가 성매매 행위자 처벌 벌금을 내준다고 말하지만 이는 지출이 되며 여성이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 된다

사각지대이다. 선미촌 집결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찰과 지자체의 강력한 법 집행력이 필요하다. 성매매 불법 영업을 지속하는 업주와 건물주, 토지주 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해 알선고리를 차단하고 성매매로 인한 부당이 득금을 몰수 추징하여 물적토대를 해체시켜야 한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차에 걸쳐 선미촌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및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선미촌 해체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가 확인되었고²⁰⁾ 전주시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선미촌 전지역에 대한 재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²¹⁾ 선미촌 업소들 중 부분매입을 통한 단계적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2008년 이후 정책²²⁾으로 가지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계획은 추진되고 있지 않다. 선미촌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는 해체되어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대안적인 공간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2) 성매매 문제의 원인을 수요의 문제로 바라보고 성구매 수요 차단을 위한 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

2008년 4월, 선미촌에 성구매자의 출입이 가장 많은 금요일 밤 11시~새벽 2시까지 선미촌을 이용하기 위해 드나드는 차량 진입지역과 현금인출기 부근 그리고 표적업소 4곳을 선정하여 업소에 드나드는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 형태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선미촌 주변지역 3곳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성구매자 추정인원은 118명이었고 구역별 통행 차량수는 151대에 이르렀다. 이렇듯 수많은 성구매자들에 의해 선미촌 집결지의 영업은 지속되고 있는것이다. 집결지에 대한 성구매자들의 접근 차단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고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과 인식전 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3) 선미촌 여성들에 대한 통합적 자활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집결지 현장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선미촌 여성들에 대한 현장방문상담, 생계지원비와 법률지원, 의료지원과 직업훈련비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생계지원비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일몰정책으로 종료되었고 2009년부터는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으로 축소되어 열린터 운영과 현장방문상담, 생계지원비를 제외한 법률지원과 의료, 직업훈련비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집결지현장기능 강화사업은 쉼터와 그룹홈, 자활지원센터로 연계되어 통합적인 지원으로이어지고 있다. 여성들이 업소안에서 탈업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탈업소 이후 생계에 대한 전망과 대책이 필요하다. 즉 개별주거 및 그룹홈 등 주거지원과 보호된일자리 등 구체적인 자활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선미촌 해체를 준비하기 위

^{20) 2007}년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가 진행한 전주시민 411명을 대상으로 한 '선미촌에 관한 시민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3.0%가 선미촌이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안다고 응답하였고 81.3%가 선미촌 폐쇄에 동의 하였다.

²¹⁾ 선미촌 지역은 상업지역으로서의 투자가치가 없어서 민간자본에 의한 재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공영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토지 매입비만 400억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

^{22) 2008}년 11월 12일 선미촌 폐쇄 등 정바방안에 대한 전주시 여성청소년과의 토론문 중

해서는 보다 특별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익산 남부지역 여성인권 실태 및 정책제언

3-1. 현장방문상담23)을 통해 본 익산남부지역 업소 현황

〈표2〉 성매매영업 가능업소의 수. 2008년

업소 유형	단란주점	유흥주점	다방	숙박시설	안마시술소	합계
익산 전체	122	134	313	234	5	808
익산 남부지역	16	70	26	70	5	187

익산남부지역은 대규모의 산업형 성매매집결지로, 1종에서 3종의 다양한 영업방식이 혼재되어 있으며 성매매 알선 및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익산 중앙동에 있던 농협 뒷골목이라 불리던 3종 집결지는 맥주양주·방석집²⁴)의 형태로 성매매 집결지역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더 다양한 욕구의 구매자층을 확보하기 위한 성산업 구조의 대형화·현대화 되는 추세에 편승했다. 2004년 성매매 방지법 시행과 함께 본격적으로 익산 터미널주변인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일반 가요주점이나 비즈니스 클럽의 형태인 산업형 성매매 집결지역으로 흡수·확대되었다. 현재 익산남부지역은다방, 휴게텔, 이발소, 안마시술소,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모텔 등 산업형 성매매 업소의 모든 종류가 혼재된 형태로 산업형 성매매 집결지 형태를 띠고 있다.본 상담소의 내담자들을 통해 익산남부 유흥주점의 영업형태를 알아본 결과 약15~20개 업소가 현재 술 3종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그 영업방식은 이전 3종영업의 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남부지역은 그 내부에 3종 집결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 공간은 버젓이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의 합법적인 간판을 내걸면서 온갖 불법 행위가 자행되는 공간이며, 업소 앞에 무전기를 든 남성들이 업소 앞을 떡 버티고 있어서 외부와는 고립된 공간이면서, 업소 관계자와 손님, 알선 택시와 모텔 업주가 서로 협력하여 여성들이 그 밖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인권의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업소들은 저마다 출입문 앞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업소를 오가는 사람들을 카운터 앞, 혹은 업주의 방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체크하며 손님이 아닌 외부인들을 경계한다. 이 카메라는 외부인 뿐 아니라 여성들의 통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익산남부지역은 터미널 인근으로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며,

²³⁾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 2006년부터 익산남부지역에서 심야캠페인을 진행하였고 2008년 6월부터 매월 1회 현장방문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²⁴⁾ 보통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경우가 많으며 업소 내에서 술접대를 포함하여 2차 성매매가 모두 이루어지는 곳으로 기본 술값에 성매매비용을 포함하는 영업형태를 띤다.

주변에 장애인복지관과 주민센터, 놀이터가 있는 주민들의 생활공간이기도 하였다. 또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다 보니 체육계열의 중·고등부 학생들의 합숙장소로 이용 되기도 하였다.

3-2. 상담사례로 본 익산남부지역 여성들의 인권실태

1) 감금 감시 폭행이 자행되는 공간

여성 대부분은 20대~30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업소마다 차이는 있으나 보통 1업소 당 2명~15명까지 고용되어 있었다. 여성의 대부분이 업소에 선불금빚이 있었으며 그 빚은 몇백만원에서 2000만원 대까지 다양하였다.

1종 룸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우 대부분은 숙소를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3종 룸의 경우는 실장과 함께 일하는 여성들과 같이 숙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병원을 갈 때나 외출, 심지어 슈퍼를 갈 때에도 실장이나 오래 일을 한 여성들이 항상 함께 동행하였다. 상담사례를 통해 보면 업소 내의 카메라 설치는 물론, 숙소에서조차 업주와 마담(실장)이 여성들을 24시간 감시하였다. 숙소의출입문은 항상 위아래 이중 잠금을 하였고 마담은 문 바로 앞방에서 개를 키우며생활을 했었는데 그 개는 조금만 소리에도 짖었기 때문에 실장과 업주가 모르게 외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였다. 바로 앞의 슈퍼를 갈 때에도 말을 하고 가야했고 병원 등 오래 외출을 할 때에는 업소에서 오래 일을 한 언니나 실장과 항상 동행해야했다. 한 여성의 경우 빚을 하루라도 빨리 갚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의 화장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외출이 자류 롭지 못해 업소로 방문판매를 하러 오는 비싼 화장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2)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비인간적인 영업형태

여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는 업소 대부분은 유흥주점으로 등록을 한 경우인데 이 업소들은 보통 4~8개 정도의 룸을 갖추고 있고 룸 안에는 노래방기기를 설치해두고 있었다. 손님은 술값을 제외하고 보통 25만원(1~2명 기준)을 결제하는데, 이 금액은 테이블비와 2차 성매매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25만원 중에서 대부분의 업소가 세금이나 택시기사 알선료명목으로 25,000원~5만원을 미리 떼어간다. 1종 룸(일반 유흥주점)의 경우 나머지 20만원~225,000원이 모두 여성의 몫이나, 3종 룸(업소 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의 경우는 그 중에서 15~30%(여성 1인당 15,000원~3만원)만이 여성의 몫이 되는 것이다.

테이블 안에서 여성들은 실장(혹은 사장)의 지시에 따라 손님이 술을 더 추가하게 하기 위해 각종 쇼를 보여줘야함은 물론 거의 나체의 몸으로 테이블에서 손님들을 접대해야하며 손님이 원하는 경우 테이블 안에서 성관계를 하기도 한다. 그렇게 테이블이 끝나면 손님은 여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실장(또는 사장)과 2차 성매매여부를 논의한 뒤 선결제 하기 때문에 여성이 2차 성매매를 거부할 수 없는 영업형태

인 것이다.

업소 내의 벌금제도는 대부분의 업소에서 사라졌지만 익산남부의 경우 현재까지도 유지하는 업소가 존재하였다. 상담을 통해 파악된 모 술 3종업소의 경우 테이블에서 25~30분, 모텔에서 20~30분 이 손님과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시간이 초과되면 그 벌금을 여성들에게 부과하였고 테이블 시간을 초과할 경우 여성 1인당 10만원, 모텔방에서 시간을 초과할 경우 5분당 5만원이었으며 손님이 여성이 맘에 안든다며 다른 아가씨로 바꿔달라고 했을 경우 교체를 당한 여성의 경우 20~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 벌금들은 모두 여성들의 빚으로 올라갔고 여성들은 이 빚을 갚기 위해 업소에서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구조 속에처해있었다.

3) 구매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택시의 성매매알선

손님들은 주로 익산, 군산, 김제 등 익산뿐만 아니라 주변도시에서 오는 경우였으며, 본인들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처음인 경우 택시 기사의 소개를 통해 오는 경우도 많았다. 그 때문인지 익산남부의 경우 업소 출입구마다 택시들이즐비해있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으며 택시기사의 경우 이렇게 손님을 업소에 데리고 가면 해당 업소로부터 알선료(약 3만원)를 받고 있었다. 작년 본 센터가 성매매알선협의로 신고했던 익산 00택시 0호 기사의 경우 모 업소의 전담 택시알선업자로 손님 1건당 3만원을 업소관계자에게 받았고 자신이 알선한 손님이 다른 해당업소가 아닌 다른 업소로 가버리는 경우에는 여성들에게 "손님이 초이스 할 때 좀웃고 그러지 그 손님들 00업소에 가서 추가 2개 먹었다고 하더라. 너희는 좋은 손님 줘봤자 소용없다니까" 등의 영업에 대한 코치도 서슴치 않았다.

4) 촘촘한 성매매알선 연계망

여느 산업형 성매매 집결지가 그러하듯 익산남부지역 또한 성매매알선업자들의 연결고리는 촘촘했다.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일정정도의 돈을 받으며 구매자들을 데 리고 오는 택시알선업자와 2차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모텔업주, 그리고 주변 상가들까지 여성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영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들 또 한 여성들을 서로 감시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상담 지원한 한 여성은 업소를 탈출할 당시 혹시나 업주를 아는 택시가 와서 자신을 다시 업소로 데려 갈까봐 무서워(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일부러 개인택시를 불러서 멀리서 얼굴 확인한 뒤에 탄 경우였고, 또 한 여성은 일부러 전주 콜택시를 불러 본 센터를 찾아온 경우였다.

3-3. 익산 남부지역 성산업 축소와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제언

1)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탈업소 및 자활지원을 위한 드랍인 센터와 통합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익산시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선정되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남부지역을 비롯하여 익산지역 성산업 현장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여성의 현실을 직시 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입과 제도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업소 안에 있는 동안부터 탈업소 및 자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일상적인 개입이 요구되며, 상시적인 접근이 가능한 드랍인센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2) 익산남부지역 성산업 축소를 위해 엄격한 행정적 관리와 규제를 해야 한다.

익산남부지역의 업소는 단란/유흥주점, 안마시술소, 휴게음식점등 합법적인 영업을 하가받은 업소²⁵⁾이다. 그러나 실제 이들 업소는 불법적인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지자체는 성매매영업이 불법이며,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구체적 개입을 통해 업주들을 관리감독 해야 한다. 이를 통해성매매 알선 행위로 인해 처벌받은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²⁶⁾을 즉각적으로 집행하고 한번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여 업소가 폐쇄되도록강력한 행정적 규제를 하여야 한다.

다각적인 법적 개입을 통하여 업주들에게 긴장감을 주어야 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등 남부지역 업소의 근거법령과 관련한 위반 사안27)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통한 시정을 촉구하여야 한다.

3)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익산 남부지역의 성산업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업주들이 성산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해야 한다. 특히 일시적이고 테마적인 단속계획 수립을 넘어서, 일상적인 감시와 단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²⁵⁾ 단란주점, 유흥주점, 휴게음식점(다방)은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영업이 이루어지며, 영업의 허가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숙박업이나 이용원등은 공중위생법 적용을 받고, 안마시술소는 안마법의 적용을 받는다.

²⁶⁾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행정 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숙박업소가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영업의 금지행위나 처벌내용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였을 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식품위생법제 58조, 공중위생법 제 11조의 4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영업정지나 영업의 허가 취소,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²⁷⁾ 주로 행정처분을 받는 위반사항을 보면 식품위생법에 의해 유흥주점의 경우는 상호혼돈표기(유흥주점이라고 간판에 명시해야 함)나 종업원관리 부적절, 풍기문란 과다노출 등 풍속영업 부적절 등이 있으며, 단란주점의 경우 접객원고용(단란주점은 유흥접객원 고용이 안됨), 유흥주점 영업 등이 있으며, 휴게음식점은 시간제영업 (티켓영업이라고 함)등이 있고, 숙박업소의 경우 건축법위반, 공중위생법위반 사항에 대해 처분을 받고, 안마법에의해 안마시술소의 경우 음란 되폐행위등이 행정처분을 받는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미관풍치, 미풍양속의 유지 등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의 조성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해 광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 내용은 음란 퇴폐적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보호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이 있다.

4) 익산시의 성산업 축소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요구되며, 성매매문제를 바로 인식할 수 있는 다각적인 활동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익산남부지역 업소에 대한 민관감시단을 구성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앞서 제기한 것처럼 익산남부지역 업소는 합법적인 영업을 허가받은 형태이므로, 다양한 법의 규제를 받는다. 실제 익산 남부지역과 형태와 규모가 비슷한성매매업소 산업형 집결지인 전주의 아중리와 중화산동 지역에 대해 업소의 상호혼동 표기를 한 간판과, 풍속을 저해하는 입간판(야한 옷차림의 여성을 형상화한 간판등), 바람풍선에 대해 모니터링 하여 지자체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하였고, 업소의 간판을 변경하게 하였다. 이러한 모니터링 활동은 익산남부지역의 성산업관련자들에게 익산시민들이 성산업을 규제하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남부지역의 반인권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모니터링 활동을 확대하여, 익산남부지역 등 성산업 업소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 처분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해 행정규제의 효과성을 높 일 필요가 있다.

4. 기지촌 군산 아메리카타운 여성인권 실태 및 정책제언

4-1. 군산 아메리카타운의 형성 과정

군산시의 성매매산업은 1900년대 일제시대부터 일본 관리들과 지역유지들에 의해 유곽사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군산 유곽사업은 일제시대 번성을 누리다가해방 후 미군정의 공창폐지(1948년 2월 14일) 에 의거 폐지되었으나, 이후 다시미군병사들을 상대하는 유흥업소로 변신하여 미군인 거리로 조성되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한 후 기지를 접수한 미군은 군산에 미군기지가 주둔을 하기 시작했고이후 아메리카타운도 조성되어 역사를 함께하고 있다.

옥구 아메리카타운이 조성된 시기는 한국 전쟁뒤 군산 비행장이 주둔하면서 군산 영화동에 기지촌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시내에 위치해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면서 1969년 군산시 산북동 505번지로 이전하게 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다른 기지촌과는 다르게 미군 기지와 5km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미군들을 위한 군산아메리카타운을 정비하였다. 1969년 닉슨독트린에 의한 주한미군의 감축이 진행되면서 정권의 위기를 맞게 된 박정희정부는 미군간의 갈등해소, 미군과 한국인간의 인종적 갈등, 미군사이에 만연한 성병, 기지촌의 비위생적인 상태등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1971년에서 76년까지 미군을 주둔하기 위해 '군기지 정화운동'을 벌이고, 이때부터 한국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기지촌여성을 관리하고 단속하게 되었다. 이런 정화운동으로아메리카타운은 19개 외국인 전용클럽과 30여개 일반상가등이 몰려 있는 미군전용

휴식처로 1970년~ 1980년대에는 평일에도 500~600여명의 미군과 군속들이 드나들면서부터 달러를 뿌려낼 정도로 번성했다. 이 시기에 업주들이 조직한 위안부 자치대등이 존재했다.

4-2. 군산 아메리카타운의 업소 현황

〈표3〉 군산아메리카타운의 업소 현황

년/월	08/7	08/10	08/12	09/7	09/8	09/9
방문업소수	15	14	19	7	12	13
만난여성수	75	70	87	38	57	72

본 센터에서 2009년 7월 경 군산시에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군산 아메리카타운에 등록된 업소수는 19개이며 고용된 여성의 국적별 현황은(2009년 6월) 총 72명으로 필리핀여성이 70명 한국인 여성이 2명으로 등록되어 있다.

위 표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월 1회 총 6회에 걸쳐 현장방문상담을 통해 파약된 내용이다. 업소는 외국인 전용클럽(유흥업소)으로 등록 되어 있고, 2010년 현재 71명의 여성이 클럽에 고용되어 있으며, 이들의 국적은 대부분 필리핀이다. 영업시간은 월요일~목요일은 오후 5~6시부터 새벽 12시~2시 가량으로 대략 6~8시간 동안이며, 금요일~토요일은 새벽 6시 정도까지 영업을 하여 12시간가량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최근 주말에는 아침 9시까지도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업소마다 한 달에 2일 정도의 휴일이 있다고 하나, 여성들은 그 휴일을 쉬지 못하고 있다.

4-3. 군산아메리카타운 성산업 실태와 이주여성 인권 현실28)

1) 군산아메리카타운 이주여성 유입형태 및 비자 문제

본 센터에서 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24명 모두가 예술흥행비자 (E-6)를 받고 왔다고 했다. 군산아메리카타운여성들의 대부분이 이 비자를 받고 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지역의 기지촌 외국인여성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국내공연을 위한 예술흥행비자가 외국여성들의 국내 성산업 유입 책이 되고 있다.

인터뷰한 사례 중에서도 한 여성은 엔터테인먼트의 비자로 입국하여 한국에서 가수를 하는 줄 알고 이주했지만 실제 하는 일은 클럽에서 미군을 상대하는 웨이트리스였고 매니저에게 항의를 했지만 계약을 이미 했으니 그 계약기간까지는 일을 해

²⁸⁾ 본 내용은 2009년 현장방문상담 과정에서 24명을 대상으로한 2차례의 설문조사와 숙소에서의 심층상담, 2010년 여성들의 아지트인 레스토랑에서의 집단면접, 1인 심층인터뷰 등과 상담지원 과정의 내용을 통해 정리된 것이다.

야만 된다고 하여 이주 여성은 군산아메리카타운에서 계속 원치 않는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다.

또한 E-6비자는 6개월 기간에 한번 더 연장하여 최장 1년 유지되기 때문에 일부의 여성들은 불법체류자로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클럽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클럽에서 성매매(성적행위)를 강요받아 이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여도 불법체류자로 강제추방 된다. 실제 2008년 군산아메리카타운의 한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은 업주의 작업장 무단이탈로 신고하여 강제추방 된 사례도 있었다.

2)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이주여성들의 주거환경

클럽에서 일할 때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으며 단체로 같은 홀복을 입게 하는 업소도 있었다. 근무시간은 미군부대의 일정에 맞춰져 있다. 미군들이 기지에서 퇴근시간이 오후 5시 이므로 업소는 그 전에 문을 연다. 그래서 여성들은 대부분 5시에나와서 청소를 하고 영업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외국인 여성들은 휴일 없이 매일 일을 하고 있다. 일을 하는 시간은 늘 정시이지만, 마치는 시간은 손님이 남아 있는 한, 새벽 4시, 5시까지 늘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오랜 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휴일 없는 노동 강도에 의해 몸이 소진되어 있다. 업무 시간이 길고 자유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성들은 항상 지쳐있고, 식사시간도 또한 불규칙적이고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과도한 노동과 술, 담배 등으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 몸이 자주 아프지만, 매니저나 업소 주인이 여성들의 건강에 관심은 갖지 않는다. 여성들이 자비로 병원에 가거나 약을 사먹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의료비 부 담이 크다고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았다. 또한 여성들은 몸이 아파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업주는 영업을 해야 한다며 강요하여 여성들은 아픈 몸을 이끌 고 일을 해야만 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다. 계약서상에 한달에 이틀 쉬도록 되어있 지만 이마저도 5만원에 벌금을 내고 쉬도록 되어 있다.

여성들의 숙소는 클럽 주변 원룸이나 아메리카타운 안에 클럽 뒤쪽의 낡은 건물에서 거주하며 단체 숙소 생활을 한다. 업주들이 숙소를 제공하고 공과금, 생필품, 음식 등은 여성들이 돈을 걷어 해결하고 있다.

3) 임금과 송금

군산아메리카타운에 고용된 이주여성들의 임금은 매달 한국 에이전시로부터 지급되는 돈으로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구두로나마 여성과 합의한 수입이다. 먼저 클럽의 업주가 여성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 에이전시에게 한 달 동안 여성이 벌어들인 수입을 전달한다. 그러면 그 입금액에서 한국 에이전시에게 할당되는 금액을 제하고 임금을 여성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설문으로 파악된 급여는 대체적으로 300~400달러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군산 아메리카타운 외국인 여성들의 임금은 업소마다 차이가 있는데, 100달러의 임금을 주

는 업소도 있다. 이 금액은 모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하지만 여성들의 계약서는 최저임금인 94만 5천원을 받는 것으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실제 이 금액이 지급되는지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업주들은 이중 계약을 하고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급여는 클업업주가 매니저에게 입금하고 이중 23만원을 필리핀 현지 기획사로, 20만원은 국내 연예기획사로 지급한다. 여성들은 한달 30~4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 계약서상 급여의 50%이상이 착취되는 구조이다.

임금은 달러가 아닌 원화로 받아 여성들은 주로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한다. 한국의 원화를 필리핀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환전수수료와 송금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해야만 한다. 한 달 송금액의 평균이 324달러이고 대부분 200~300달러를 송금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평균 임금에서 송금액을 제외하면 100달러에도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것으로 보아, 여성들이 한국에서 생활이 매우 곤궁할 것으로예측된다.

4) 군산아메리카타운 여성의 채무와 성매매구조

군산 아메리카타운에 있는 여성들은 매니저에게 빚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주과정에서 지불되는 비용으로 여권, 비자 발급비, 비행기티켓 값, 에이전시 수수료 등 평균 1,3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매니저가 먼저 지불하고 여성들의 빚으로 올리는 방식이다. 여성들은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6개월 임으로 이 기간 안에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서는 주스나 바파인을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성이 클럽에서 미군 등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미군은 여성에게 음료수를 한 잔씩 사주어야 한다. 대체로 물 컵보다 작은 잔에 콜라와 럼주를 섞은 음료수이며 통칭으로 '주스'라고 하며, 주스 한잔의 값은 만 원부터 시작한다. 업소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달에 200잔~300잔 정도의 할당이 있다. 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힘든 미군들을 상대해야만 한다. 만약 주스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한달 계산을 봐주지 않거나 절반만 계산해주기 때문에 할당량을 채워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여성들은 호소한다.

또한 미군기지 근처의 클럽에서 일어나는 성매매는 '바파인'이라고 한다. 여기서 바파인이란 손님이 클럽의 업주나 마마상에게 일정정도의 돈을 내고 몇 시간 동안 여성들을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 여성이 하루 일을 해서 팔수 있는 주스 수입을 손님이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이다. 성매매는 미군의 숙소에서 이루지기도 하고, 모텔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나 심층상담에서는 여성들에게 바파인에 대해 이야기를 듣기는 어려웠다. 심층상담에서도 여성들모두 '바파인'이라는 의미는 알았지만 그것에 대해 대답하는 것을 머뭇거렸다. 또한 숙소나 레스토랑 등 클럽이외의 장소에서 만난 여성들도 자신이 근무하는 클럽은 바파인이 없는데, 다른 업소는 있다고 말하면서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미군들

과 데이트는 나간다고 하였다.

이는 기지촌의 성매매가 비가시화 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메리카타운 이주 여성들은 공식적으로 성매매가 없는 곳에서 비공식적으로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다. 여성들이 성매매에 대한 말은 주저하였지만 계약서와 합의 되지 않은 일 중에 여성들은 '성적 행위'와 '주스 쿼터'라고 체크하고, 이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호소하였으며, 여성들은 원치 않는 성매매가 내재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호소하였다.

여성들은 너무나 간절히 다른 일을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자가 노동비자가 아닌 연예인 비자라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한국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또한 업소에서 임금체불이나부당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노동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로써의 사회적 혜택에서도 배제된다.

여성들이 업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한국인을 포함해서 남자 친구를 만들거나 동거, 결혼을 통해서 라고 한다. 그래서 여성들이 업소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비자 문제와 계약기간으로 인해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4-4. 군산아메리카타운 성산업 이주여성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

군산 아메리카타운 외국인 전용클럽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실태는 심 각하지만 이 여성들을 지원 할 사회제도적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여성 들의 인권보호와 권익을 위한 장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아메리카타운'에 고 용되어 있는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한다.

1) 부당한 고용계약(원래의 고용계약과 다른 부당한 일을 해야 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고용계약이라 할 수 있다)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여 정정하고, 다른 업종으로의 전업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2) 부당한 고용시 제도적 체류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E-6비자의 경우 기본 6개월, 연장하면 1년이 유지되기 때문에 일부의 여성들은 불법체류자로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클럽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클럽에서 성매매(성적행위)를 강요받아 이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여도 불법체류자로 강제추방 된다. 실제 작년 군산아메리카 타운의 한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업주가 작업장 무단이탈로 신고하여 강제 추방된 사례가 있었다. 때문에 부당한 고용이 있을 시,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체류기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3) 군산아메리카타운은 쇠락하는 공간이 아닌 현존하는 곳이다. 군산 아메리카 타운 지역의 실태를 바로보고, 성산업 공간에 있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통합지원정 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무료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여성들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매달 받는 월급으로 의료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드랍인센터가 운영되어야 한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눌 공간과 의료·법률·직업전환에 대한서비스와 의사소통을 위한 한글배우기를 원하고 있다. 지역안에 드랍인센터를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지원과 주거지원, 전업지원을 위한 통합적 연계 시스템을 모색하여야 한다.

4) 군산아메리카타운은 외국인 전용클럽으로 성매매업소집결지이다. 기지촌 공간에 대한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2008년부터 아메리카타운 지역을 방문하면서 국제문화마을이라는 안내표지가 새롭게 건설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군산시는 엄연한 기지촌인 군산아메리카타운이 있는 지역을 국제문화마을이라고 명명한 의도를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산아메리카타운 지역은 부당한 고용계약에 의해원치 않은 일을 해야 하는 많은 여성들이 있으며, 고용되어 있는 동안 쉬지 않고일을 해야 한다. 이들이 실제 하고 있는 일은 성매매를 비롯한 성적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성매매업소 집결지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9월 5일자 군산미래신문 '벼랑끝 아메리카타운 활로 없나?' 제목의 기사에 의하면 아메리카타운이 침체일로에 있다며 활로를 찾기 위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지역 신문에게재될 정도로 아메리카타운을 마치 지역의 관광지역처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상가협회에서는 미군기지의 통·폐합으로 군산의 미군기지가 확장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어 미군수가 늘어남에 따라 손님들이 많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에 간판 교체와 더불어 업소를 리모델링하는가 하면 도로 확장공사, 주변에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을 심어 경관을 꾸미고 있고 이것을 가능하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 군산시이다.

군산 아메리카타운을 국제문화마을이라 명명한 것은 기지촌, 성매매집결지의 실 태를 제대로 보지 않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로 포장한 것으로 밖에 읽혀지지 않 는다. 그러므로 이제는 군산아메리카타운의 실태를 바로보고, 결혼이민자를 중심으 로 한 현재의 이주여성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결혼 밖에서 특히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향후과제

1) 성산업 알선구조 차단을 위한 처벌법 개정 및 실효성 확보

성매매 알선업소를 폐쇄하는 행정처분을 법에 명시하고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추징 하는 처벌강화를 통하여 성매매 알선 장소와 물적토대를 차단하는 법적 장치와 집행력이 필요하다. 또한 성산업 축소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즉 집결지, 산업형, 인터넷 성매매등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성산업에 대한 유형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행정력의 강화가 관건이 된다. 이는 처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으로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판례분석 등을 통하여 법 정책 평가와 대안을 마련하고 법무부, 경찰청과의 유기적 네트웍을 형성하여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 및 비판 견제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

2) 성구매 수요를 축소해 나가기 위한 법적처벌 강화와 인식전환교육, 반성매매 남성운동 필요

성구매 범죄 행위자에 대한 법집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초범 에게 집행되고 있는 재범방지교육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존스쿨 수강명령 프로그램 내용과 효과를 평가해야 하고 현행 기소유예 조건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 져야한다. 벌금형을 병과하는 등 형사처벌이 함께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재범 발 생율을 줄여나가야 할것이다. 현재 법무부가 관할하고 보호관찰소를 통해 집행되 고 있는데 각 지역의 보호관찰소와 법무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제안 활동이 필요 하다. 특히 성구매 수요는 남성의 일상적인 성문화가 관건이 된다. 현재 각 현장에 서 진행되고 있는 남성 자원활동가의 실천활동, 남성모임 등의 활동이 더욱 확대 강화되어 반성매매 남성운동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성매매문제를 남성의 문제로 인식하고 성구매 Stop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일상 적인 남성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는 인식전환교육이 강화되 어야 한다. 이 교육은 적극적으로 청년캠프등의 프로그램을 조직하거나 남성 조직 을 타켓팅하여 교육을 진행하는것도 필요한데 필리핀의 반성매매운동을 하는 남성 운동 조직은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직접 관련이 있는 운수노조를 집중 교육하여 효 과를 높이고 있다. 한국사회의 만연화된 성매매현실에서 이러한 남성운동 전략이 필요하다.

3)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를 위한 법개정 및 담론 투쟁

반성매매에 대한 여성주의 입장은 도덕적 금지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불평등한 조건에 처한 여성의 성을 매매하는 알선구조와 성구매 행위'에 대해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폭력으로 규정'하고 반대하는 것이다. 성매 매 여성은 피해자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 처벌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웨덴의 입법 사례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스웨덴 정부는 성매매와 관련된 문제들을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로 접근한다. 여기서 성매매방지관련사업 의 목적은 착취와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에 있다. '성적서비스구 매금지에관한법'은 '성매매=성폭력'이라는 인식하에서 성매매를 여성과 아동에 대한 남성폭력의 한 형태로 규정하였다. 이법은 성을 파는 사람은 무죄, 성을 사는 사람은 유죄로 정의하고 모든 형태의 성적 서비스의 구매를 금지하여 여성의 인권침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²⁹⁾. 즉 스웨덴은 성매매의 수요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 법을 통해 성매매 대상자의 이용을 공식적으로 금하고 상업적 성산업의 성별화된 성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³⁰⁾. 현재 한국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지배적인 현실에서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운동은 당장에 법개정의 성과를 가져오진 못한다 해도 담론투쟁의 영역으로 법 집행과정에서 여성들이 현행법 상 피해자로 규정받을 수 있는 조건과 토대를 강화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성인권의 맥락에서 성매매방지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인권보호 ·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

우리사회 성매매 문제의 복잡성 만큼이나 여성 개개인이 안고 있고 해결해야 만 하는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고 장시간을 요하는 일이다. 따라서 자활지원 정책은 여성 개개인의 위기지원 및 문제해결을 통한 대안적 삶의 토대와 가능성을 만들고 다양한 준비와 시도를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심리적/내적, 물리적/외적 자원 확보를 통한 empower의 과정이 될수있어야 한다. 한 여성들의 탈성매매자활을 개별적이고 단계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통합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현장단체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과 함께 지역사회내의 자원연계와 연대활동을통해 지역사회 통합지원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여성들의 성매매시장으로의 유입 문제와 자활의 문제는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현실에서 여성빈곤과 불평등한 여성노동시장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가 구축된다고 해도 이 체계와 서비스가 성매매 여성이 처한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적 사회적 권리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당해 온 여성들이 성매매가 아닌 현재와 내일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여성들에게 지금 보다 더 많은 선택의 기회가 보장되는 지원체계와 서비스가 되도록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최선을 다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성적 이중규범³¹⁾에 갇혀 성매매문제의 책임을 성구매 수요를 재생산하는 알선구조와 성구매자에게 묻지 않고 성매매 여성에게 전가하는 도덕적 낙인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변화를 가져야 한다.

²⁹⁾ 이영자(2006), "한국의 사회·문화·경제적 토양과 성매매의 폭력/착취 구조",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 국제회 의 자료집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활동사례.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여성가족부.

³⁰⁾ 시그마 후다(2006), "인신매매의 수요적 측면에 대한 고찰",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 국제회의 자료집 성 매매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활동사례,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여성가족부.

³¹⁾ 우리사회에는 '성매매는 필요악'이라는 성본능론에 입각한 사회적 통념이 지배하는데 남성의 성적욕구를 위해 필요한 성매매가 여성에게는 악한것이 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남성에게는 경계없는 섹슈얼리티가 '남성성'으로 여성에게는 억압하는 섹슈얼리티가 '여성성'으로 구성된다.



전북지역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와 과제

조미영(전라북도 하나센터 사무국장)

1. 들어가는 글

딸 하나를 데리고 입국하여 전주에 살고 있는 김00(38세, 여성)씨는 내국인과 결혼하여 정착 중에 있다. 김씨의 경우는 비교적 순조로운 정착과정을 보이는 사례라고 할 수 있지만 초기단계에서 자녀와의 갈등과 심리문제 등 쉽지 않은 정착과정은 겪고 있다.

김씨의 사례는 아직까지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부분 여성입국자이며 북한이나 중국의 가족을 데리고 와야하는 입장이 많다. 또한 환경과 문화의 차이로 내국인과 사귀는 것도 쉽지 않다.

지역별로 직업훈련과 취업, 교육 등의 여건에 따라 정착의 정도에서 차이가 난다. 전주와 군산 등 도시지역의 경우는 비교적 근접하게 접근성이 확보되나 군 단위 지역의 경우는 교통의 불편함과 교육기관 및 구인업체의 부족 등으로 도시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경우도 있다.

지역단위로 볼 때 아직은 본격적으로 정착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형별로 일반화된 사례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지만 직장인, 사업자, 학생, 근로자 등다양한 직군에서 정착을 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본격적인 정착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정착 대상자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적인 공감대와 제도적인 지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스스로의 정착에 대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전북지역 전입 추세와 특징

1) 전북지역 전입 추세

전북지역도 2010년 7월 기준 353명에 이후 2011년 4월까지 70명이 추가로 전입을 왔으므로 기록상 4백명 이상의 전입자가되고 일부 전출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내에서 정착을 하고 있다.

2010년에 월평균 9명이 전입을 왔으며 당부간 이 수준에서 전입자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1> 전북지역 2010년 전입자

구분	134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계
남(명)	0	1	2	3	1	2	9	1	2	0	21
여(명)	2	12	7	7	5	6	9	7	6	4	65
합계	2	13	9	10	6	8	18	8	8	4	86
여성비 율(%)	100	92	78	70	83	75	50	88	75	100	76

2)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특징

2010년 전입자<표 1>를 보면 여성의 비율이 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인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월경을 하는 여건이 남성이 더 어렵기 때문으로 보이며, 북한 내부에서의 가치관과 관습적인 생활의 여건도 작용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부분 단독세대지만 점차 가족단위세대의 증가가 예상된다.

<표 2> 2010년 전북지역 전입자의 연령별 분포

구분	134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계	%
남(명)	0	1	2	3	1	2	9	1	2	0	21	24
여(명)	2	12	7	7	5	6	9	7	6	4	65	76
합계	2	13	9	10	6	8	18	8	8	4	86	100
역성비 율(%)	100	92	78	70	83	75	50	88	75	100	76	_
20미만	_	2	1	1	_	_	4	1	_	1	10	12
20	_	4	3	2	1	3	6	_	1	1	20	23
30	_	1	3	4		1	1	3	4	-	17	20
40	_	2	2	3	3	4	4	1	3	2	24	28
50	2	3	_	-	1	_	1	2	_	1	10	12
60이상	_	1	_	1	1	_	2	1	_	_	5	6

〈표 2〉에서 보면 20대에서 40대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내에서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이어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 주민 구성의 하나의 역할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정착민들은 일부가 내국인과 혼인을 통하여 정 착을 하고 일부는 재북 또는 재중 가족을 데려와서 가족을 구성하며, 일부는 북한 이탈주민끼리 살기도 한다.

또한 20대 이하 구성원은 대부분 학업을 위하여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앞으로 젊은 세대간의 지역사회에서 통합의 역할을 할 것이다.

입국 동기면에서 과거의 이념적인 가치보다는 경제적인 동기를 가지고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진다. 정착과정에서 상담을 진행해보면 우선 개인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념적이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시도하는 경우는 아직 드물다.

3. 지역 정착제도와 지원

1) 보호담당관 제도

- 거주지보호담당관 : 지자체에서 담당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최초 전입시 임대주택 계약과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발급 등 거주지 정착업무와 각종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주요 업무(201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통일부)

- 0 거주지 보호업무의 총괄・조정
- 0 주거 알선 / 거주지보호지침 제8조에 따른 특약해지·통지 및 제5호· 10호의 통보에 관한 사항
- 0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긴급의료 지원
 - * 읍 면 동 사회복지공무원과 협조
- 0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학력확인서 및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0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및 거주지 보호대장 관리(3S-Net)
- 0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 0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 0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 0 종교,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들과 결연 및 후원 추진 등

- 신변보호담당관 : 지역 경찰서에서 담당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최초 전입시부터 신변보호 뿐 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보교육과 자매결연, 취업 연 계 등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다.
 - * 주요업무(201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통일부)
 - 0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위해요소 제거 및 신변보호
 - 0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에 필요한 사항 파악
 - 0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 파악 및 관련기관 통보
- 취업보호담당관 :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담당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로지도와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 등을 담당하고 있다.
 - * 주요업무(201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통일부)
 - 0 직업훈련 신청서 접수 및 내담자 면담
 - 0 훈련상황 확인 및 기록유지
 - 0 취업신청서 및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및 통일부(하나원)에 송부
 - 0 북한이탈주민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 0 북한이탈주민 고용실태 조사 및 취업보호대장 관리
 - 0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참여
 - 0 구인 · 구직자 발굴 및 취업 연계
 - 0 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과 협력관계 유지

2)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정착지원법 시행령 제42조의 2(지역협의회 설치·운영), 거주지보호지침 제14조(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다.

* 전북지역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현황('11. 1기준)

구분	구성 연도	구 성 원	조례/ 실무	자체예산 (천원)	거주 인원
전주	2007	- 12명 : 지자체(2), 신변보호(2), 취업보호(1), 하나센터(1), 적십자사(1), 전문상담사(2), 전북토지주택공사(1)	×/0	8,000	77

익산	2008	- 11명 : 지자체(3), 신변보호(3), 취업보호(1), 민간단체(2)	×/0	20,200	51
남원	2008	- 7명 : 지자체(3), 신변보호(1), 취업보호(1), 민간단체(2)	×/0	3,000	20
김제	2008	- 10명 : 지자체(1), 신변보호(1), 취업보호(1), 적십자사(1), 길보종합복지관(1), 민주평통(1), 시목회(1), 기업인협회(1)	×/×	3,000	6

2011년 4월 현재 전주, 익산, 남원, 김제 등지에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최근 군산시 협의회도 구성중에 있다. 앞으로 지역내 전입 및 정착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협의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하며 특히, 민간단체의 참여가 협의회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전북하나센터는 전주YWCA에서 2010년 5월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하나원을 수료하고 최초로 거주지에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주 60시간의 초기집중교육과 1년간의 사후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전입 1년이내가 대상이나 모임 및 자원봉사나 명절행사 등 지역주민교류사업은 전입시기를 불문하고 지역내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내 정착과정에서 초기단계 전입자의 성공적인 정착이 선례가 되므로 특히, 지자체·유관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지원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4) 정착도우미제도

대한적십자사에서 활동하는 정착도우미는 북한이탈주민의 하나원 신병인수에서부터 입주준비, 가정방문, 경조사 지원, 지역안내, 명절함께 보내기 등 가까운 이웃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랜 지원 경험과 같은 지역거주자로서 장점을 살려북한이탈주민 정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5) 전문상담사 운영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정서적 안정 도모 및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되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소속으로 현재 전북지역 은 3명의 전문상담사가 하나센터에 파견되어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의 모델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상 방문상담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아직 전문상담사의 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므 로 지자체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하나센터의 지역적응교육에 대한 지원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리 및 진로상담과 생활상담에 이르기까지 상담의 대상과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과정에 있으며, 지역내 전입자의 증가에 따라 전문상담사의 추가 배치가 요망된다.

6) 시민단체 및 봉사단체

지역내에서 다양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주YWCA에서는 10년 이상을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금도 멘토링사업과 한마당화합의 모임 등 지역정착을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특성상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지역에 편중되는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여 전 지역에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도록하는 시스템적인 지원이 강화되어 야 한다. 이 때는 북한이탈주민 뿐 만 아니라 다문화분야의 사업과 연계하는 등 지 역적 특징과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

4. 정착과정의 문제

1) 일반적 문제

- 건강상의 문제

초기 전입자에 대한 지역적응교육을 하는 과정에 건강관리 및 진료프로그램을 진행해보면 매번 진단이 나오지 않음에도 증세를 호소하며 진료를 요구하는 사례가발생한다. 이는 탈북과 입국과정에서 받은 긴장과 고통이 하나원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고 대부분 가지고 나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체적인 증세와 더불어 심리적인 증세를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담을 진행해보면 신체적인 증세만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심리적인 경우는 치료의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

현재 전북하나센터에서는 지역내 보건소 및 각 병원과 협약을 맺고 북한이탈주민

의 진료와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 취업의 문제

취업은 생계의 문제이므로 북한이탈주민도 최우선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이고 상담자의 입장에서도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직장선택과 직무환경에 대한 이해부족, 고용주 측의 북한이탈주민에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이직율이 높은 편이다.

A상담사의 경우 2010년 6월 이후 최초 취업한 직장에서 계속 근속 중인 대상자는 불과 몇 명이다. 대부분 상담을 통하여 일부는 개인적으로 취업을 하지만 1개월이내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고 그 이유는 대부분 적은 보수와 높은 노동강도, 인간관계의 미형성 등 다양하다.

진로와 적성에 대한 본인의 정확한 판단과 정착과정에서 배려를 해주는 직장의 지원이 절실하다.

- 생활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부분에서 높은 물가와 계획적인 소비에 익숙하지 않은 점, 일상 생활에서의 문화의 차이 등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체로 시 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되는 부분이지만 초기 정착과정에서 주변의 도움이 매우 중 요하다.

또한 이성교제나 보험제도 등과 같은 처음 접해보는 문화와 제도를 이해하지 못 하여 생기는 갈등요소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2) 유형별 문제

- 학업대상 청소년

적령기부터 20대 후반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며 대체로 적령기 보다는 적정학년을 초과하여 학교에 편입하는 경우가 많다. 공통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사례별로 다양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 · 27세 / 여 : 취업하여 학자금 마련 후 대학진학을 희망하였으나 결혼 후 검토하는 것으로 진로 변경
- 17세 / 여 : 고1 대상이나 중3에 편입하여 학업 중
- 11세 / 여 : 초등학교 편입하여 학업 중
- · 19세 / 남 : 대안학교와 검정고시를 겪다가 대안학교를 옮겨서 학업중

- · 24세 / 여 : 학력인정학교에서 고졸 후 대학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나 포기하고 직업훈련으로 전환
- 16세 / 남 : 중3의 나이이나 중1로 편입하여 학업 중
- · 21세 / 여 : 고1로 편입하였으나 검정고시로 전환 고민 중

- 가정문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독신으로 입국하여 재북 또는 재중가족을 데려오는 형 식으로 가정을 구성하며, 일부는 내국인과 혼인하기도 한다. 일부는 북한이탈주민끼 리 가정을 꾸리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재북 배우자와의 이혼문제와 재중 배우자와의 이혼 및 자녀 양육 등이 있으며, 이름과 성을 바꾸는 사례도 많다. 아직 입국하지 않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여기에서 만난 이성과 동거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국제결혼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 오래전에 월남하거나 남한이 고향이면서 월북한 가족의 경우는 몇 십년된 이름과 주소를 가지고 친인척을 찾기도 한다.

사고방식의 변화가 요구되는 사례가 많은데 대부분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될 것으로 보이나 초기 단계에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과 과도한 음주문화 등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관련 기관과 단체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현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동등하게 또는 더욱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대할 필요가 있다.

5. 향후 정착지원 과제

앞으로의 과제는 이들이 초기단계의 정착형태이므로 지금 시행하는 각종 제도와 인식이 향후 대규모 정착단계의 모델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진지하고 신중하게 시행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제도적인 면에서 담당 공무원과 각종 단체의 관계자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여러 지원제도와 절차를 충분히 알고 근무해야 하며, 추가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주민서비스 등의 현장에서 원활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일반 주민들의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의식이 경직되거나 편향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인식이 형성되도록 지자체와 관련단체에서는 노력 을 해야하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같이 사는 주민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하는 개 념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향후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에 정착하고자 할 때 지금의 초기단계 정착민의 선례가 매우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노력은 지금부터 해야 함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간단하게나마 여러 가지 정착과정에서의 과제를 둘러보았다. 가장 기본적인 이해 는 이들이 현재 우리와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결국 가까운 이웃으로 함께 살 아야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우리사회에서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2만명을 포용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의 문제는 앞으로 펼쳐질 통일한국시대에 2천 5백만 명의 북한주민을 통합하여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더 이상 우리사회의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필요한 우리와함께 살아가야할 이웃이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은 일차적으로는 국가가기본적인 삶의 토대를 마련 해 주어야하고 실질적인 사회공동체를 이루는 곳이지역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차이를 인정 해 주는 데에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 사람들의 생활양식, 사고 방식, 태도, 행동은 그가 태어나고 성장한 사회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마련이다. 더 구나 신체적, 심리적 성장이 완성된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속해 있던 사회에서 학습 한대로 현상을 지각하고, 해석하고 그에 따라 태도와 행동을 결정할 것이다. 남북한 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이 위와 같은 점 에서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험적 지식이 곧 실제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 게 이미 삶의 일부로서 내재되어 있는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수정하거나 변경하 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 뿐 아니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국내 북한이탈주민이 2만여 명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사회의 이해와 인식수준은 초보

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남한사회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시선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북한에서 넘어온 가나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에서 우리의 동포이고 우리와 함께해야 하는 공동체 일원으로 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이탈주민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사회 사람들이함께하는 것은 사람들과 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스스로가 가지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하다. 성실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할 때 남한사람들의 선입견은 불식될 수 있다.

셋째, 대상자 능력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각양각색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문화적, 경제적인 차이로 인해 사회전반적인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이기에 개별적인 눈높이에서 각각의 맞춤형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개인별 특성과 적성, 의향 등이 적극 반영되는 대상자 중심의 취업경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욕구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특성(학력, 경력, 기술, 희망직종 등)을 고려한 취업경로를 설계할필요가 있다. 직업전문학교와 폴리텍 대학, 기타 대학 수준의 전문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진행하여 직업기능과 함께 한국사회와 직장문화를 동시에 경험 할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관련 기관, 단체 및 현장 활동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초기 입국 단계, 시설 보호 단계, 그리고 거주지 및 사후지원 단계로 구분된다. 지역사회에 전입 한 후 거주지 및 사후지원 정착지원 사업에서 정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방자치단체,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민간단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는 업무 담당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각각의 인력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무엇이고, 역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업무 추진의 혼선을 줄이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해 세밀하고 정확하게 정의해야 할 것이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서비스 전달 체계와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도 정착지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북한 바로알기교육, 초 중고 찾아가는 통일교육, 북한의 용어 맞추기, 멘토링, 화합한마당 등을 통해 서로 문화를 알아가고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가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사회통합을 이루어 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의 꼭 필요한 인적자원이다. 전북지역 북한

이탈주민들의 경우 주로 여성으로 가임기에 있다는 것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일정한 희망을 주며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자립능력도 탈북에 성공하고 국내에 입국한 자체만으로 검증되었다고 본다. 다문화 시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도우며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공존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사회정착은 장차 도래 할'통일한국'시대를 대비하는 국가적 민주적 과제로 통일이후 남북한의 주민통합 가능성의 수준과 한계를 예측하는 징표가될 수 있다. 우리가 아니면 지구상의 어느 나라와 민족도 끌어 안아줄 수 없기에우리는 같이 가야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몇 십 년 동안 불러 왔던기대와 희망으로 이제는 통일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여성인권으로 본 여성노동권과 여성노동의 현실

박신규(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여성인권의 문제는 1995년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라고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여성과 소녀의 평등한 지위와 인권 문제를 유엔 활동 전반에 주류로 통합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세계 인권의 중심과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여성운동의 성장 속에서 확장된 여성인권은 20세기에는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어느 정도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노동의 여성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는 매우불만족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여성주의적 인권 관점에서 여성노동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고 현재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여성노동의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요구되는 여성노동정책의 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1. 여성인권으로 본 여성 노동권

근대 이후 발전한 인권의 개념에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영역과 경제, 사회적 영역이 포함되며 전자는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범주화되는 영역이다. 특히 인권으로서 노동권은 사회권의 영역으로써 1919년 ILO 창설과 더불어 명시되면서 현실에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한국의 경우에는 헌법을 통해 남성이든 여성이든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인권 개념에서 여성노동권은 무엇으로 정리될 수 있겠는가? 우선 여성인권 개념으로서 노동권을 논하기 전에 여성인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인권은 여성주의자들에 의해 국제적으로 소극적 개념과 적극적 개념으로 구분되고 있다. 소극적 개념은 기존의 인권 논의가 여성이 경험하는 인권침해나 인권유린을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이러한 것들도 인권 문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여성의 권리가 모든 면에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받아야 한다는 평등권에 입각하여 사적 영역의 여성 인권 침해도 인권 문제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맥락에서 논의되어진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여성인권 개념은 여성의 권리는 곧 인권으로 여성은 동동한 대우를 전제하되 여성으로서 누려야할 '차이'로서의 권리를 발전시키며 이것은 여성의 입장에서 인권을 보고 규정하는 것, 실질적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개념에 근거하여 여성인권은 이전은 고려하지 않았던 여성 경험을 포함함으로써, 자유권이나 단순한 경제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의미로서의 개 념을 포함할 수 있는 확장된 틀 안에서 정립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여성인권 개념 에 근하여 여성노동권도 정리되어 질 수 있다.

즉 구체적으로 여성노동권은 소극적인 개념으로 동등하게 일할 기회와 직장내에서 성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고 적극적 개념으로는 실질적으로 평등한조건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부장제적인 억압과 성별 분업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의 여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기에 여성인권의 문제는 여성 노동권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실제 그 이전의 여성인권의 발전 역시 여성노동권의 발전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현재 여성인권의 한 축인 여성노동권과 연동하여 여성들의 노동 현실을 살펴보면 노동권의 현 지점과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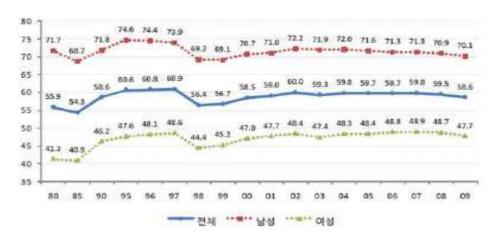
2. 여성 노동의 현실

한국의 여성노동권은 여성운동에 의해 소극적 개념에서 적극적 개념으로, 공적영역에서 사적영역으로 확대 발전하였다. 그 결과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1998년 남녀고용평등법 제3차 개정, 1999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등을 제정함으로써 여성노동권에 관한 법적 보장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여 놓았다. 이와 같은 법적 보장으로 인한 여성노동권은 여성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지고 와서 여성노동권을 강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어진다. 따라서 현재 여성노동권의 현지점을 보여줄 수 있는 여성고용 구조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전북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취업구조를 고찰하면서 전반적인 여성노동시장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여성 고용구조의 변화와 추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특히 1998년 이후 여성이 고용증가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여성 일자리의 증가 속도가 완화되며 여성고용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즉 외환위기 이후 2006년까지는 여성 취업자의 증가율이 2002~2003년을 제외하고 모두 남성을 앞섰으나 2007년 이후 취업자 증가율의 성별 격차가 거의 사라졌고, 전체 비농가 취업자 중 여성의 비중도 2006~2008년 동안 41.5%에서 정체된 모습을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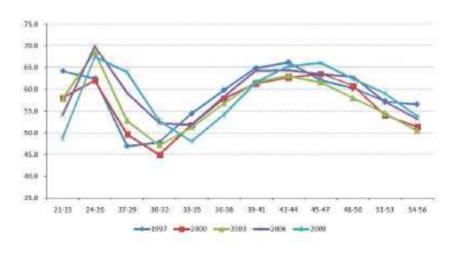
<그림 1> 성별 고용률 추이 : 모든 가구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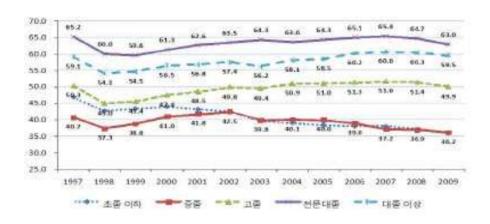
한편 한국은 결혼 또는 가사, 보육 등의 사유로 인해 20대 후반 및 30대 여성의 상당수가 노동시장을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됨에 따라 여성의 경력단절, 인적자원의 유휴화 등과 같은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M자형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로 나타나며 한국 여성노동시장의 대표적 특징의 하나로 여겨진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점차 고원형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완전히 M자형을 탈피하지 못한 채 여성고용률의 저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보여주고 있다. 이는 만혼의 조류에 따라 초혼연령과 출산 시기가 늦추어지는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 여성의 연령대별 고용률의 추이 : 1997, 2000, 2003, 2006, 2009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그림 3> 여성의 학력별 고용률 추이 : 15세이상 취업자. 모든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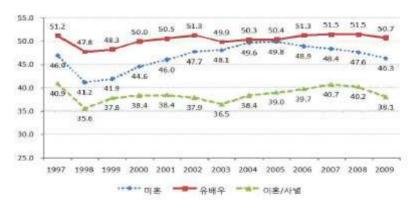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다음으로 여성들의 학력별로 여성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전문대졸의 고용률이 가장 높은 반면, 중졸 및 초졸 이하의 고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5세이상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고학력자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연령에 있어서 핵심 노동계층인 25~54세로 제한하면 고졸 여성의 고용률이 가장 낮은 반면, 초졸 이하 저학력자의 고용률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혼인상태별 고용율을 살펴보면 미혼여성의 고용률이 1998년 41.2%에서 2005년 49.8%까지 급상승하였다가 이후 꺾어지는 모양을 보이며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미혼여성의 고용률보다 높고,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수습된 2000년 이후 49.9%~51.5%의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변동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혼, 사별 여성의 고용률은 2003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특히 2003년 36.5%이었던 이혼, 사별의 여성 고용률은 2007년 40.7%까지 높아졌다.

<그림 4> 혼인상태별 여성의 고용률 추이 : 15세 이상 인구, 모든 가구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한편 여성이 취업하고 있는 사업체 규모는 남성에 비해 영세하며, 2000~2009년 사이 전체 여성임금근로자의 65.8%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100 ~299인 또는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 비중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특징지워지고 있다. 또한 산업별 취업자의 성비는 음식숙박, 금융보험,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가사서비스 등에서 여성취업자수가 남성보다 많다. 한편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관리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반면 저학력자는 서비스직, 판매직, 단순 노무직 등 일자리 질이 낮은 직업에서 일하고 있다. 한편 여성 취업자의 직업별 종사상 지위 분포를 보면 전문직과 사무직에서 상용직의 비중이 높고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원 및 단순노무직은 상용직보다는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표 1〉 여성 취업자의 직업별 종사상 지위의 분포 : 2009년

(단위:%, 천 명)

		고용형	병태의 구성	引(%)		여성
	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취업자 규모(천명)
관리자	45.9	2.0	0.0	51.6	0.6	46
전문직	543	26.2	0.5	17.4	1.6	1,969
사무직	66.6	23.9	1.8	1.1	6.7	1,679
서비스직	11.9	35.2	14.2	26.3	12.3	1,670
판매직	9.7	40.8	6.9	24.6	18.0	1,519
농림어업직	0.2	0.4	1.4	35.1	62.9	638
기능원	16.0	30.3	17.0	22.0	14.7	319
기계조작/조립	528	26.3	4.9	7.4	8.6	301
단순노무직	173	42.2	27.9	8.5	4.1	1,628
전 체	31.2	30.6	9.3	16.9	11.9	

주: 자영업주는 고용주+자영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 전북여성경제활동 및 취업현황

전라북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996년 51.1%에서 1998년 46.6%까지 감소한 이후 증감추세를 반복하다가 2007년 50.2%를 기록한 후 2010년 현재 47.5%로 다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전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49.4%보다 다소 낮다. 한편 전라북도 여성 실업률은 1.8%로 전국 여성 실업률 3.3%보다는 낮으며, 고용률은 46.7%로 전국 여성(47.8%)에 비해 1.1%p 정도 낮다.

〈표 2-1〉 전라북도 성별 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

									1. 0, 707
성 별	항목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15세이상인구	1,458	1,481	1,493	1,472	1,445	1,405	1,412	1,427
	경제활동인구	882	867	869	862	843	849	847	835
계	비경제활동인구	576	614	624	611	601	578	565	592
	경제활동참가율	60.5	58.5	58.2	58.6	58.4	59.5	60	58.5
	실업률	_	_	_	_	_	205	2.2	2.2
	고용률	_	_	_	_	_	58	58.7	57.3
	15세이상인구	693	707	713	703	689	684	680	690
남	경제활동인구	490	507	497	492	489	479	484	485
자	비경제활동인구	203	200	216	210	200	205	196	205
^r	경제활동참가율	70.7	71.7	69.7	70	70.9	70	71.1	70.3
	실업률	_	_	_	_	_	3.3	2.5	2.5
	고용률	_	_	_	_	_	67.8	69.4	68.5
	15세이상인구	765	774	779	770	756	744	732	737
여	경제활동인구	391	361	371	369	355	371	363	351
자	비경제활동인구	373	414	408	400	401	373	368	387
^r	경제활동참가율	51.1	46.6	47.6	47.9	46.9	49.8	49.7	47.5
	실업률	_	_	_	_	_	1.5	1.8	1.8
	고용률	_	_	_	_	_	49.1	48.8	46.7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한편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의 일반적 특성과 마찬가지로 전북여성의 경제활동도 20대 동안 노동시장에 참여했다가 결혼 및 출산연령에 해당하는 20대 후반~30대 초반에 노동시장을 떠난 후 육아가 끝나는 30대 후반부터 서서히 노동시장으로 다시 복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향후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연령계층별 비중에 있어서 전북의 고령화 지수가 높은 것과 연관하여 고령화 현상이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20대 여성경제활동인구 비중은 감소하는 대신 50대 이상 연령계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적으로 여성경제활동인구에서 저연령층 비중은 감소하고 고연령층 비중이 증가하여 전북 지역은 고령화 추세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2> 연령별 취업자 분포

(단위: 천명, %)

구분		15~19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2006	2	43	118	126	96	79
	2007	3	43	113	129	98	82
남	2008	1	44	112	131	100	85
	2009	1	41	108	131	103	86
	2010	2	44	103	127	106	92
	2006	3	52	74	96	69	71
	2007	2	52	67	94	71	75
여	2008	3	49	66	93	71	75
	2009	3	44	67	99	72	73
	2010	2	42	63	97	71	67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에서 재구성, 고용동향 보도자료

전라북도 여성의 학력별 취업자는 중졸이하가 133천명, 고졸 116천명, 대졸이상 이 96천명으로 중졸이하 학력 취업자가 가장 많아 가정형편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교육만을 이수한 여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여성취업자 비율은 낮다.

〈표 2-3〉 전라북도 남녀 학력별 취업자 변화

(단위: 천명)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2007	144	190	144
1.1	2008	143	180	149
남	2009	139	181	150
	2010	131	185	157
	2007	166	117	79
여	2008	156	112	89
,	2009	147	117	92
	2010	133	116	96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에서 재구성, 고용동향 보도자료

2010년 현재 전라북도 여성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업종에 종사자가 136 천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가 86천명, 그리고 농림어 업 종사자가 67천명이다. 한편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임금 근로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6년에서 2010년 사이 여성 상용직과 임시직은 증가 추세이고 일용직은 다소 줄어들었다.

〈표 2-4〉 전라북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변화

(단위: 천명)

			н]임금근로	자		임금급	근로자	
		전체	합계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합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2007	361	156	83	73	204	83	85	36
여	2008	357	158	84	74	200	82	88	30
	2009	356	150	81	69	206	77	98	30
	2010	344	138	71	67	206	89	88	29
	2007	467	204	196	8	264	165	52	46
남	2008	472	208	199	9	264	164	54	47
Ü	2009	470	203	191	12	267	161	64	42
	2010	473	200	188	12	273	172	67	34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에서 재구성, 고용동향 보도자료

3) 여성노동시장의 특징

90년대 후반부터 노동패널과 경제활동인구연보를 분석한 자료들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여성고용 구조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여성노동시장은 경력단절 및 경력단절을 전후한 고용형태의 악화, 즉 정규직 혹은 상용직에서 비정규직 혹은 임시, 일용직 또는 자영업으로의 전환 등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임금 및 근로 조건의 상대적 취약성이 주요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1) 경력단절과 일자리의 저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특히 1998년 이후 여성이 고용증가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여성 일자리의 증가 속도가 완화되며 여성고용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연령별에 따라 M자형을 그리는 경력단절 현상이 수십년째 개선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이후 재진입시 일자리의 질이 더 나빠진다는 사실이다. 결혼 전 정규직으로 종사하던 여성이 경력단절 현상 이후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은 흔한 사례이다. 또한 일자리 질의 저하는 임금근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자영업이나 무급가족 종사자, 노동시장에서의일시적 퇴출, 실업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다.

(2) 임금 및 근로조건의 상대적 취약성의 원인인 성별직종 분리 현상의 강화 성별직종분리 현상으로 서비스 판매직과 단순노무직에서의 여성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서비스 판매직의 경우 2002년 68.7%에서 2007년 69.4%로 0.7% 늘었으며 단순노무직의 경우도 2002년 47.2%에서 2007년 48.5%로 증가하였다. 문제는 이들 직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으며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들 직종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나쁜 일자리를 중심으로 이들 직종의 재편을 의미한다면 저부가가치, 장시간 노동, 불안전 고용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성별직종분리가 더욱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 직종을 고연령층 여성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 여성의 비정규직 증가

2010년 3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828만명(임금노동자의 49.8%)이고 정규직은 833만명(임금노동자의 50.2%)을 차지하고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남성 임금노동자 중 39.7%가 비정규직인 반면,여성은 여성임금노동자 중 63.5%가 비정규직이다. 특히 남성 노동자 집단의 경우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여성노동자 집단의 경우 2009년 8월과 2010년 3월에 비정규직의 증가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저연령층과 고령층에서만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 비율보다 크지만 여성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비율이 정규직 비율보다 높다. 혼인여부과 관련해서는 기혼여성에게서 비정규직의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금의 경우 임금 총액이 아닌 시간당 정액급여로 비교해 보아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급여가 가장 낮았다. 남성은 12,216원이고 여성은 7,891원으로 여성은 남성의 64.6%에 해당했으며 여성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정규직 남성의 66.7%에 해당하고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남성의 70.8%에 해당하였다.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더 적은 시간에 일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도 성별 차이는 유호하게 나타나는데, 여성비정구직은 남성 비정규직에 비해서도 더 적은 시간 일하고 있다. 그러나 주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 비중과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비중에서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여성노동정책의 방향

여성인권의 적극적 개념에 포함되는 여성노동권은 여성운동의 맥락에서 확대 발전하였고 여성노동권에 관한 법적 보장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여 놓았다. 그러나 90년 후반과 2008년의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여성노동시장은 경력단절 및 경력단절을 전후한 고용형태의 악화, 즉 정규직 혹은 상용직에서 비정규직 혹은 임시, 일용직 또는 자영업으로의 전환 등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임금 및 근로 조건의 상대적취약성이 주요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들은 노동권의 획득하고 강화시키는데 많은 애로점을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삶을 위해, 그리고 남녀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여성노동정책의 방향은 여성노동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담겨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여성노동정책의 기본방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보해야 할 것인가?

우선 여성고용,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정확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성공한 여성들의 뒷면에 존재하는 저임금, 고용불안,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여성들의 상황이 조명하여야 한다. 더불어 여성고용정책의 독립성의 강화이다.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여성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확충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학력, 소득 계층, 지역별 차이 등 여성의 특성에 따라 노동 공급 및 고용형태가 다름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현재 전북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과 취업 구조의 분석을 통하여 보면 전북은 여성들의 고용율이 다른 지역보다 더 떨어지고 (2011.2월 현재 41.2%, 전국 평균 45.8%) 고령화 지수가 높아 상대적으로 20대 여성경제활동인구 비중은 감소하는 대신 50대 이상 연령계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처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여성노동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인적자원 개발의 방향도 모색되어야 것으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실태조사에서 여성의 업무 능력을 뒤지지 않지만 리더십, 팀워크, 충성도, 몰입도 등에서 남성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기에 향후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은 여성의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담보하는 여성노동정책의 수립은 여성인권의 한 축인 여성노 동권을 강화하고 확대시키는 수단이 될 것이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여성인권운동의 목표인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